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9

현안분석

- 조세·이전소득의 분포
-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특집 · 2006년 세제개편안

- 주요내용 :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중점
- 평가 :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
- 평가 : 세원투명성 제고의 계기로 삼아야

정책흐름

- 2006년 세제개편(안)
-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글로벌 임밸런스하의 재정운영 · 김준영
현안분석	06 조세 · 이전소득의 분포 · 성명재 24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김우철 4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 이기영
특집 · 2006년 세제개편안	66 주요내용 :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중점 · 김낙희 70 평가 :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 · 박정수 74 평가 : 세원투명성 제고의 계기로 삼아야 · 전병목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79 세계 6대 조세피난처의 엇갈리는 명암 외
정책흐름	88 2006년 세제개편(안) 125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
재정통계	134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이런의견 저런생각	139 세제개편안 배경과 국세행정의 합리화 외

글로벌 임밸런스하의 재정운영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글로벌 시대의 경제 개방화와 자유화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란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의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상수지, 대외자산 포지션 등 대외수지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제기되었으므로 최근에는 미국과 다른 주요 교역국들 간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현상으로 글로벌 임밸런스를 해석하고 있다. 단순화하면 글로벌 임밸런스의 요체는 미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주요 교역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자산 매입으로 압축될 수 있다. 즉,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으로 발생하는 GDP 6% 이상에 해당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자산 매입에 의한 자본유입을 통한 자본수지 흑자로써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교역이 글로벌화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임밸런스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국제교역이 자유화됨에 따라 리카도적인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이동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

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임밸런스의 심화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시키고 만성화함에 따라 달러화의 위기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경제 균형의 관점에서든 경상수지 = (민간저축 - 민간투자) + 재정수지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글로벌 임밸런스의 핵심인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민간저축의 감소와 재정적자의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로벌 임밸런스의 실상을 살펴보면, 2005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6.4%에 이른 반면, 아시아 8개국(일본, 중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이 이들 적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 결과 미국의 대외자산 불균형 또한 심화되어 2005년 전 세계 대외부채의 약 45%를 미국이 짊어지게 되었다.

글로벌 임밸런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과소비억제와 저축증대, 재정긴축 및 중국위안화 절상과 주요 교역국들의 내수 기반확대 등 다면적인 국제적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임밸런스를 조정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공조체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작동되기에는 여러 제

.....

글로벌 임밸런스의 핵심인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민간저축의 감소와 재정적자의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로벌 임밸런스로 인한 수출 증가 둔화로 해외수요에 의존해온 성장기반 약화의 문제를 재정 운영 차원에서 흡수해 주어야 하며, 고유가와 환율하락의 리스크를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지역 간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의 국내 경제 사정 등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극복해야 할 복잡한 난관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글로벌 임밸런스의 조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각국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원활한 조정이 될 경우, 글로벌 임밸런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조정이 될 경우, 또는 충격적인 대내외 정책을 통하여 글로벌 임밸런스가 급격하게 조정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글로벌 임밸런스 조정으로 이어지든 2005년 대미교역비중이 13.2%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4%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과 성장기반의 약화로 인하여 1년 내외의 주기로 경기상승과 하강이 되풀이됨으로써 경기 사이클이 단기화되고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기상승(확장국면) 기간이 1년 내외로 단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고유가, 원화강세 움직임, 수출채산성 악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임밸런스하에서 대내외적으로 밀려올 경제 불안정 파고에 대한 지렛대로서의 재정운영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글로벌 임밸런스로 인한 수출 증가 둔화로 해외수요에 의존해온 성장기반 약화의 문제를 재정 운영 차원에서 흡수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기반이 약화되면서 수출을 통한 해외수요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임밸런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수입은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내수기반 확대에 대한 통상압력과 원화절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동시에 민간소비와 투자증대를 통한 내수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투자관련 정부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소비를 유인할 조세정책과 가계부채 해소방안 등을 국가 재정운영의 큰 틀 속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장기 세계개편의 방향과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고유가와 환율하락의 리스크를 재정운영 측면에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고유가 문제의 진원은 중동 산유국의 원유공급계약과 미국 및 중

.....

글로벌 임밸런스하의 재정운영은 거시경제적인 경제운영들과 금융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

국의 원유수요 증가에 있다. 국제적인 고유가의 국내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여과하기 위해서 원유비축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계 차원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율하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수출채산성이다. 이미 금년도 환율하락에 의하여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전기전자, 운수장비, 기계, 섬유·의복), 그 중에서도 중소수출기업이 수출포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세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글로벌 임밸런스가 지속되면서 금년도 우리 경제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대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들어 무역수지 흑자폭이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 경상수지는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수지 악화가 국내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반기 재정운영에 있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외수지 악화가 재정수지 적자확대로 연결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환율인하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일련의 도미노 현상은 우리 경제의 회복지연과 내년도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요컨대, 글로벌 임밸런스하의 재정운영은 거시경제적인 경제운영들과 금융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KIP

현안분석

■ 조세·이전소득의 분포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우철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이기영 ·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조세 · 이전소득의 분포



성명재
선임연구위원(sung@kipf.re.kr)

정부는 조세부과 및 소득이전을 통해 가계의 소득분포와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소득에서 총소득 · 가처분소득을 거쳐 세후소득에 이르기까지 이전소득과 조세가 소득분배 구조에 미친 영향과 분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조세 · 이전지출의 분배효과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국제비교도 함께 수행한다.

정부는 조세부과 및 소득이전을 통해 가계의 소득분포와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 일컫는 정부의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혜금 등의 각종 생계비 보조 등을 포함한다. 조세는 직접세(소득세, 재산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주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 교육세)를 포함한다¹⁾.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기여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기능상 직접세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논의의 편의상 이들을 직접세에 포함시켜 분석한다.

그 동안 조세 · 이전지출의 소득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는 1~2개 정도의 요약된 지표(예: 지니계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조세 · 이전지출의 개별항목 각각에 대해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분포구조와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별로 많지 않다. 다행히 Jones(2006)의 연구에서는 본고와 비슷하게 영국 사례를 들어 항목별 분포 특성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영국 사례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조세 · 이전지출의 위치를 점검해 본다.

1) 좀더 넓게 보면 법인세 등도 중국적으로는 세무당국이 자연인에게 귀착되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세 귀착은 이론상 여러 가지 난제들이 복합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개인(자연인)이 직접 부담하는 세목에 국한하여 고찰하였다.

II. 소득의 구분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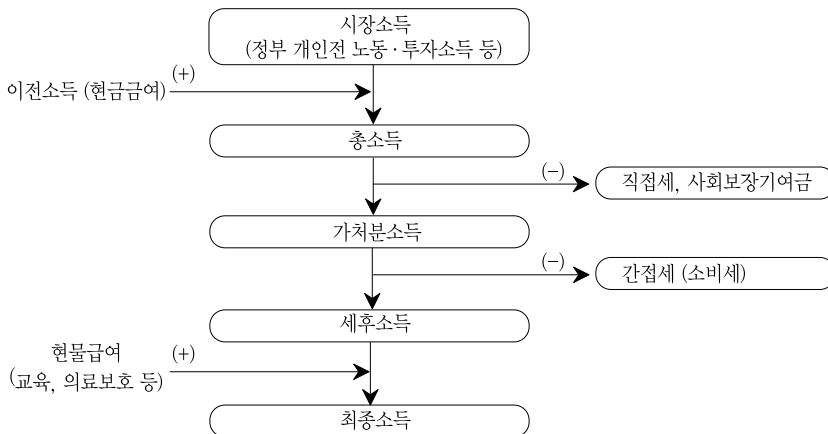
1. 소득의 구분

소득은 원천이나 처분 가능성, 직·간접의 소득보조적 혜택(benefits)을 포함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Jones(2006)는 소득을 본원소득(original income), 총소득(gross income),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세후소득(post-tax income), 최종소득(final income)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본원소득은 흔히 시장소득(market income)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시장소득은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수입(earnings)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자본소득 등을 포괄하여 정의된다. 총소득은 시장소득에 민간 및 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를 차감한 소득으로 정의되며, 세후소득은 가처분소득에서 간접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여기서 간접세라 함은 흔히 소비세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최종소득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현물 형태로 가계부문에 지원한 직·간접적인 현물급여(benefits in kind)를 합산한 가공의 금액을 일컫는다.

이상의 다섯 가지 소득개념 가운데 본고에서는 현물급여의 귀착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여 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에 이르는 네 가지 소득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은 원천이나 처분 가능성, 직·간접의 소득보조적 혜택(benefits)을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Jones(2006)는 소득을 본원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최종소득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소득단계별 소득 구성





2002년까지의 분석결과 중
이전소득 관련 부분은
근로자가구만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2.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가. 분석자료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2002년까지 가계조사자료는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만 소득·소비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나머지 유형의 가구(무직가구, 자영업자가구)에 대해서는 소비지출 관련 항목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는 근로자외가구의 총소득을 추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만 소득 추정시 이전소득 등의 세부항목은 동시추정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외가구의 세부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0원으로 처리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2002년까지의 분석결과 중 이전소득 관련 부분은 근로자가구만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기 바란다²⁾.

2003년부터는 근로자외가구에 대해서도 소득·소비지출 관련 정보가 모두 제공되고 있으며, 자료의 지리적 포괄범위도 도시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나. 분석방법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타 사회보장수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세는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공적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주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소득과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은 가계조사자료에 보고된 조사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분포를 구성하였다. 소득세는 가계조사자료에 보고된 소득종류별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와 관련한 비용공제적 성격을 지니는 각종 소비지출 항목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추정(impute)하여 사용하였다. 소비세도 소비항목별 과세대상 여부 및 적용세율 등을 고려하여 역산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액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³⁾.

2) 연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근로자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3 정도를 차지한다.

3) 소득세 및 소비세의 추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명재(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Ⅲ. 소득 및 조세 · 이전소득의 분포

1. 소득종류별 소득분포

가. 소득단계별 소득분포

2003년 현재 2인 이상 가구⁴⁾의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은 3,361만 1천원으로 추정되었다. 총소득과 가처분소득, 세후소득은 각각 3,356만 6천원, 3,298만 4천원, 3,094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전소득은 시장소득의 5.8%에 해당하는 195만 4천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사적이전소득은 126만 2천원으로 전체 이전소득의 2/3에 육박한다. 공적이전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로 구성되는데 이들 항목 각각의 금액은 46만 5천원과 22만 8천원으로 추정되었다. 시장소득에 이전소득을 합산하면 총소득(3,556만 6천원)을 얻을 수 있다.

각 가구는 직접세로 평균 269만 9천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은 3,286만 6천원에 이른다. 총소득 중 가처분소득과 직접세의 비중은 각각 92.3%와 7.7%이다. 직접세는 소득세(119만 원), 재산세(11만 8천 원), 사회보장기여금(139만 1천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사회보장기여금은 다시 공적연금(77만 9천원), 건강보험료(56만 7천원), 기타사회보장기여금(4만 5천원)으로 구성된다.

가구당 소비세 부담은 204만 5천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에서 직접세를 차감한 세후소득은 평균 3,082만 2천원 수준에 이른다. 세목별 부담액은 부가가치세 123만 2천원, 특별소비세 8만 4천원, 교통세 47만 1천원, 주행세 6만 4천원, 주세 2만 2천원, 담배소비세 5만 5천원, 소비세분 교육세 11만 8천원 등이다.

직접세 부담(269만 3천원)은 이전소득(195만 4천원)보다 74만 5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보다 평균적으로 작은 값을 가진다. 직접세와 소비세를 합산한 조세부담은 가구당 473만 8천원이다. 이전소득이 195만 4천원이므로 세후소득은 시장소득보다 가구당 279만원 정도 작다.

소득계층별로 네 가지 소득(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1~9분위까지는 완만하게 소득이 증가하다가 10분위에서 급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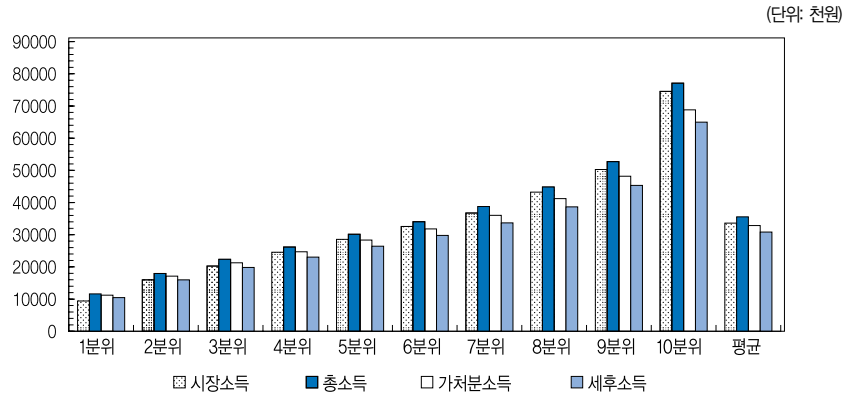
2003년 현재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은 3,361만 1천원이고 이전소득은 시장소득의 5.8%로 추정되었다. 사적이전소득은 126만 2천원으로 전체 이전소득의 2/3에 육박한다.

4) 농어가 등 일부는 제외한다.



이전소득은 소득계층별로
완만한 U자형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전소득의 총소득 대비
비중은 고소득층일수록
작아져 분포가 역진적이다.

[그림 2] 소득계층별 · 단계별 소득 분포(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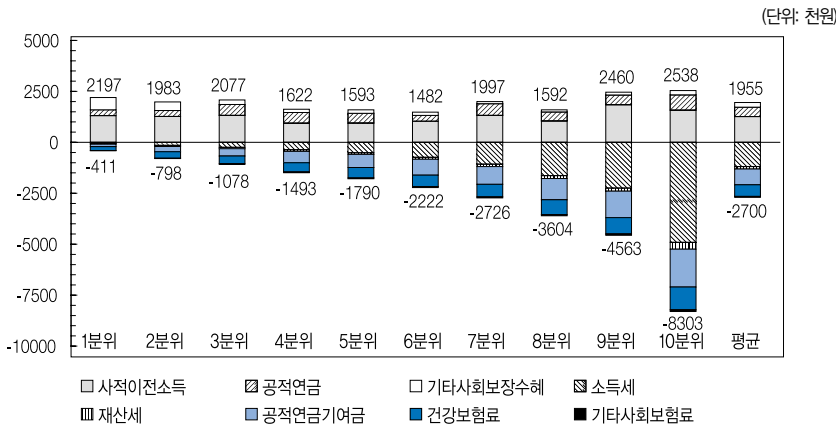


이전소득은 소득계층별로 완만한 U자형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전소득의 총소득 대비 비중은 고소득층일수록 작아져 분포가 역진적이다. 이전소득 중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다. 사적이전소득은 중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절대금액이 큰 편이다. 고소득층에서는 증여, 저소득층에서는 생계비 보조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공적연금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치가 완만하게 커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생계비 보조 성격이 짙은 기타사회보장수혜는 1~2분위의 최저소득층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다.

직접세는 저소득층의 부담수준이 상당히 미미하고 고소득층일수록 부담이 누적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누진구조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은 소득에 비례하거나 누진과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전소득은 합산항목이므로 [그림 3]에서 양(+)의 값을 가져 Y축 윗부분에 표시되었고, 직접세는 공제항목이므로 음(-)의 값을 가져 Y축 아랫부분으로 표시되었다. 2003년 현재 1~4분위에서는 이전소득이 직접세보다 크기 때문에 시장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크고, 5~10분위에서는 반대로 추정되었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이전소득의 증가 추세는 무너지지만 직접세 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8~10분위의 고소득층에서는 가처분소득과 시장소득간의 격차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림 3]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 직접세 분포 분포(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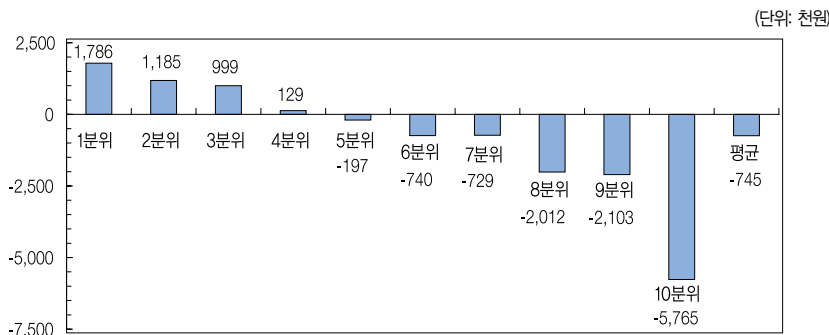
이전소득에서 직접세를 차감한 것을 순이전소득이라고 정의하면 순이전소득은 가처분소득에서 시장소득을 차감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

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비교

이전소득에서 직접세를 차감한 것을 순이전소득(net transfer income)이라고 정의하자. 이와 같이 정의하면 순이전소득은 가처분소득에서 시장소득을 차감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03년 현재 1~4분위에서는 이전소득이 직접세 부담보다 크다⁵⁾. 1분위의 경우 이전소득은 219만 7천원이지만 직접세 부담은 41만 1천원에 불과하여 순이전소득은 178만 6천원에 이른다. 2~3분위도 순이전소득이 99~119만원 수준이다. 4분위의 순이전소득은 12만 9천원 정도로 이전소득과 직접세 부담이 엇비슷하다. 반면에 상위 60% 계층은 직접세 부담이 이전소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순이전소득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소득계층별 순이전소득 분포(2003년)



5) 다시 말해 하위 약 40% 계층은 위 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금액이 직접세 형태로 지불한 금액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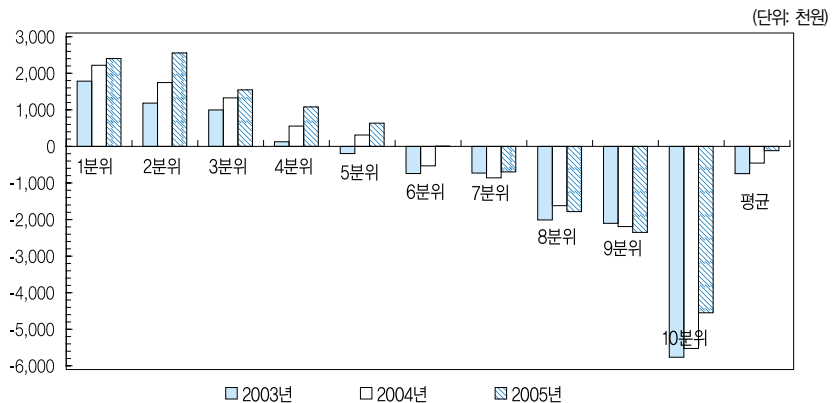


시간이 경과하면서
순이전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는 계층의 비율과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5]에서는 소득계층별로 2003~2005년 동안의 순이전소득 추이를 비교하였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순이전소득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가구의 순이전소득 평균은 2003년 -74만 5천원에서 2004~2005년에는 -45만 7천원과 -11만 5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순이전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는 소득계층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2004년에는 5분위도 순이전소득이 양(+)으로 전환되었다. 2005년에는 6분위의 순이전소득이 8천원에 이르러 이전소득과 직접세 부담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순이전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는 계층의 비율과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소득 중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절대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 그렇지만 증가율 측면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소득계층별 순이전소득의 비교 (2003~2005년)



다. 시장소득과 세후소득의 비교

앞 항에서 이전소득에서 직접세를 차감한 것을 순이전소득으로 정의하였다. 본항에서는 순이전소득에 소비세를 차감한 것을 세후순이전소득이라고 정의하자. 이와 같이 정의하면 세후순이전소득은 세후소득에서 시장소득을 차감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

세후소득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세를 차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세부담은 커지지만 실효세율은 낮아지는 역진적인 부담 구조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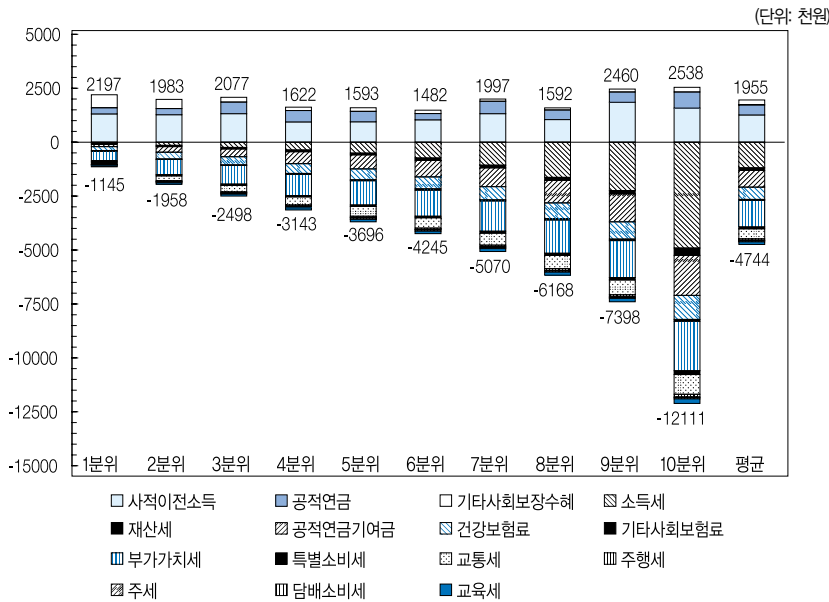
지고 있다. 따라서 세후소득은 가처분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점유비가 더 낮은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더 높은 구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후순이전소득은 순이전소득에 소비세를 차감한 것이므로 세후순이전소득은 순이전소득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는 소득계층의 범위는 2003년 현재 1~2분위였다. 순이전소득이 양(+)인 계층은 1~4분위였다. 따라서 전자의 범위가 후자보다 작다.

2003년 현재 1분위의 세후순이전소득은 105만 2천원으로 이전소득이 직접세와 소비세 부담보다 100만원 이상 크다. 2분위의 경우에는 세후순이전소득이 2만 5천원으로 나타나 2분위 가구중 일부가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수인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 참조).

세후소득은 가처분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점유비가 더 낮은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더 높은 구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6] 소득계층별 조세 · 이전소득 분포(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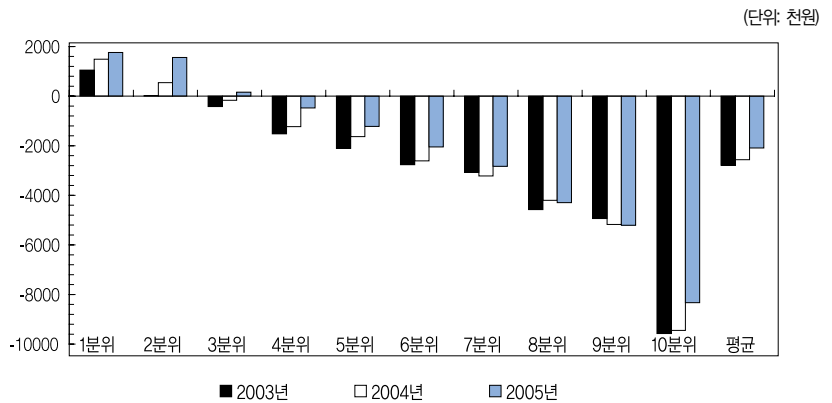
[그림 7]에서 보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후순이전소득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2005년 동안 전가구의 세후순이전소득 평균은 각각 -278만 9천원, -256만 5천원, -209만 2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소득계층별로도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는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2003년에는 1분위만이 양의 값을 가졌는데, 2004년에는 1~2분위에서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며, 절대수준도 2003년보다 커졌다. 2005년에는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는 소득계층이 3분위까지 확대되었다.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3분위에서 이전소득이 조세부담(사



1~3분위에서 이전소득이
조세부담(사회보장기여금
포함) 보다 더 큰 데에는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가 크다.

회보장기여금 포함)보다 더 큰 데에는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가 크다.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율도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혜 가구의 비중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소득계층별 세후순이전소득(=세후소득-시장소득)의 비교 (2003~2005년)



2. 영국의 소득단계별 소득분포

본절에서는 영국을 기준으로 소득단계별 소득분포와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본다. 영국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위에서와 같이 조세·이전소득의 항목별·소득계층별 분포를 잘 정리해 놓은 연구결과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⁶⁾.

가. 소득종류별 소득분포

Jones(2006)의 연구에 따르면 2004/05년 현재 영국의 가구당 시장소득은 평균 27,569파운드, 총소득은 31,884파운드에 이른다. 총소득과 시장소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전소득은 4,315파운드로 총소득의 13.5%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이전소득은 2005년 현재 278만 1천원으로 총소득(3,980만 4천원)의 7.2%이다.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이전소득 비중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전소득이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으로부터 이전된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적이전소득이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영국의 가구당 직접세 부담은 6,523파운드로,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차감한 가처분

6) 영국은 우리가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를 할 때 많이 선택되는 국가이다. 선진국 중 하나로 영국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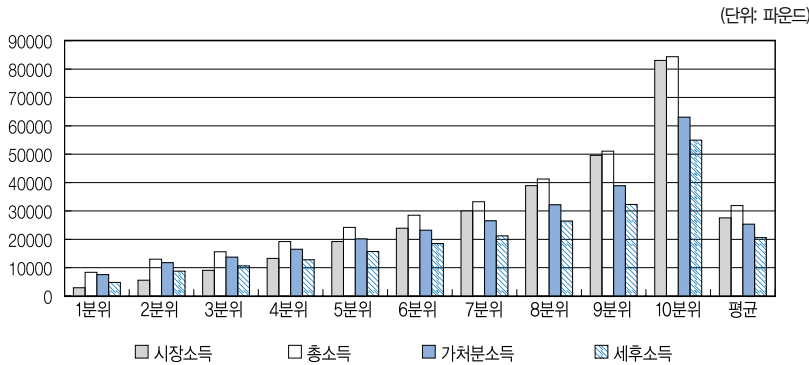
소득은 25,360파운드이다. 직접세의 실효세율, 즉 총소득 대비 직접세의 비율은 20.5%로 우리나라의 7.5%(=100×2,986천원/39,804천원)와 비교해 볼 때 약 세 배 가까운 수준이다.

영국의 가구당 간접세 부담은 4,734파운드(총소득 대비 14.8%)로 역시 우리나라의 5.0%(=100×1,977천원/39,804천원)보다 훨씬 높다.

영국에서의 이전소득, 직접세, 간접세 모두 우리나라보다 절대수준이 현저히 높으며 상대분포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의 이전소득, 직접세, 간접세 모두 우리나라보다 절대수준이 현저히 높으며 상대분포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소득계층별 · 소득단계별 소득분포(영국 2004/05년 기준)



주: Jones(2006)의 Table 14를 재구성

나. 영국의 순이전소득 및 세후순이전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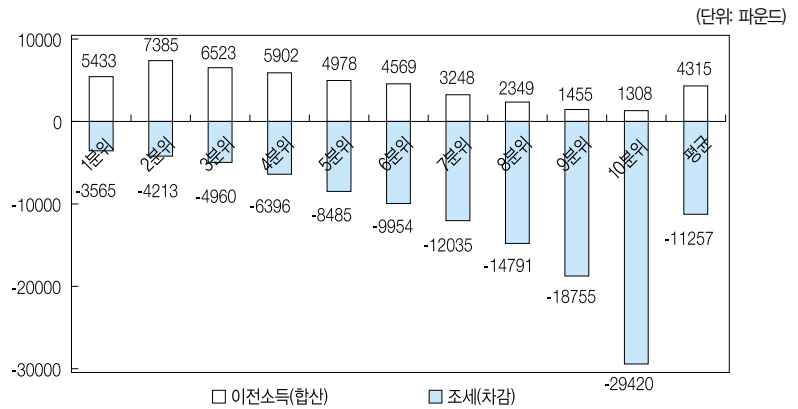
2004/05년 현재 영국의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분포의 특징을 보면, 2분위가 가장 높고 3분위부터는 점진적으로 이전소득 금액이 작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중소득층으로 이행함에 따라 이전소득 금액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고소득층에 이르러서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영국은 이전소득 분포가 매우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층의 이전소득이 높은 것은 주로 개인간의 증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개인간 증여의 정도가 작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차이가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분포가 두 나라 사이에 크게 대조를 이루는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직접세+간접세)의 경우에는 영국에서도 고소득층일수록 부담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조세(직접세+간접세)의 경우에는 영국에서도 고소득층일수록 부담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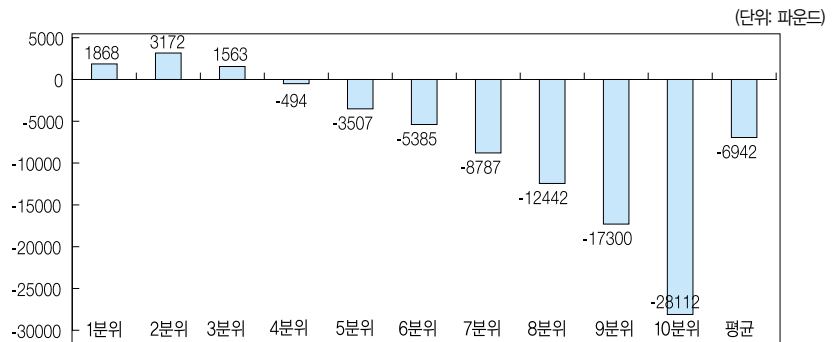
[그림 9] 소득계층별 이전소득과 조세(직접세+간접세) 분포(영국 2004/05년 기준)



주: Jones(2006)의 Table 14를 재구성

이전소득에서 조세부담액을 차감한 세후순이전소득(=이전소득-조세=세후소득-시장소득)은 가구당 평균 -6,942파운드로 음(-)의 값을 가져 평균적으로는 조세 부담이 이전소득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계층별로는 1~3분위에서 각각 1,868파운드, 3,172파운드, 1,563파운드로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며 4~10분위에서는 음(-)의 값을 가진다.

[그림 10] 소득계층별 세후순이전소득(=세후소득-시장소득) 분포(영국 2004/05년 기준)



주: Jones(2006)의 Table 14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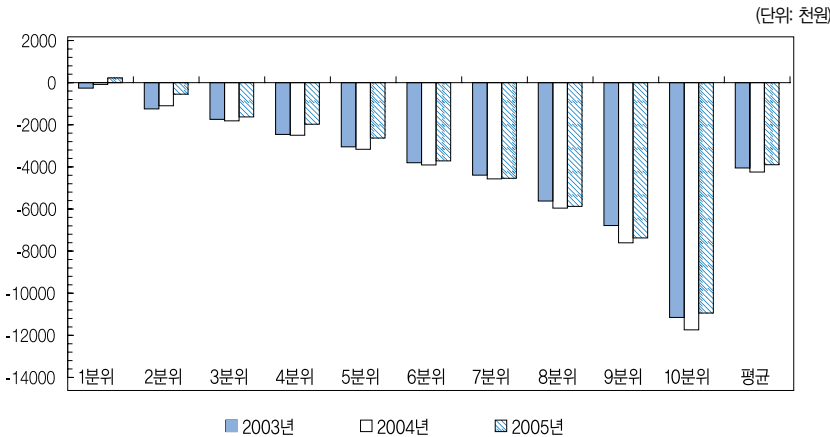
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비교

영국에서는 2004/05년 현재 세후순이전소득이 하위 30%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현재 하위 30%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7 참조). 일견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수인 소득계층의 범위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와 영국의 분포가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양국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이전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이전소득(180만 8천원, 2005년 기준)이 이전소득(287만 1천원)의 약 2/3(63.0%)를 점유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영국과의 비교에 있어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자.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했을 경우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는 소득계층의 범위는 1분위(2005년 기준)로 크게 축소된다. 절대금액도 22만 7천원으로 매우 작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아직 영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11 참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아직 영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1]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세후순이전소득의 변화추이(사적이전소득 제외)
(2003~2005년)



라. 시사점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는 소득계층의 범위와 금액의 절대수준은 영국과



노인인구비중이 높은 영국과 우리나라를 객관적 토대 위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비중 차이에 의한 복지지출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감안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런 차이의 절대수준이 반드시 양국간 복지제도의 절대수준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국은 이미 오래전에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까지만해도 노인인구 비중이 낮았으나 최근 들어 인구의 노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노인인구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연금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한 정부지출 규모와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영국과 우리나라를 객관적 토대 위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비중 차이에 의한 복지지출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양국간 노인인구 비중의 차이가 세후순이전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없는 만큼 정량적 측면에서의 답을 구할 수는 없다⁷⁾. 그렇지만 정성적인 측면에서 논하자면, 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는 계층의 범위로 표현되는 복지혜택 수준의 차이는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현상적으로 관찰되는 차이보다는 작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세후순이전소득이 확대되면서 재분배 효과도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노령화로 인해 은퇴가구가 증가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시장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이 확대되는 한편, 국민연금이나 저소득층 지원제도 등의 수혜자 비율 또한 확대되면서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으로 나타나는 계층의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니계수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소득지니는 상승하는 한편 이전소득 증가로 인해 재분배 정책에 따른 가처분소득 또는 세후소득지니의 변화효과도 커지게 된다.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동의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와 사회·경제적 환경 및 인구구조의 차이,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현재 관찰되고 있는 격차만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영국 또는 여타의 선진국과의 차이를 배우기 위해 복지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면 자칫 적정 수준보다 과잉의 복지제도를 낳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소득은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하면 총소득이 도출되고, 총소득에 직접세와 간접세를 순차적으로

7) 노인인구 비중의 차이로 인한 효과를 계량화하여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연령별 인구구성 차이로 인한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연령별 가중치를 조정한 상태에서 모의 실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기간이 매우 짧아 현재 노인인면서도 국민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비중이 영국과 달리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단순히 연령별 인구비중 차이에 의한 가중치 조정을 통한 모의실험만으로는 양국간의 차이를 온전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차감하면 가처분소득과 세후소득이 도출된다.

소득을 이전하고 조세를 부과함에 따라 가계소득의 상대분포가 영향을 받는다. 소득 합산 항목인 이전소득은 역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차감 항목인 직접세는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세 역시 소득차감 항목인데 분포가 역진적이기 때문에 소비세를 차감하면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에 이르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니계수 기준으로 2005년 현재 9.9%(소비세 제외시 10.4%) 정도이다. 사적소득이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3.8%이므로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6.6%(소비세 제외시 6.1%)로 추정된다.

소득계층별로는 임의처분이 가능한 가처분소득이 시장소득보다 많은 계층은 최근 확대일로에 있다. 2005년에는 하위 50%가 조금 넘는 계층에 이르기까지 이전소득금액이 직접세 부담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비세를 함께 차감하는 경우에도 세후소득이 시장소득을 초과하는 계층은 2003~2004년에는 1~2분위, 2005년에는 1~3분위에 이르러 이들 계층에서는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공적이전소득의 수혜계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후순이전소득이 양(+)인 계층의 범위가 양국 간에 비슷하다는 피상적인 관측만 보면 일견 우리나라가 선진국(영국 등)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간의 소득 이전, 즉 사적이전소득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이전소득 전체의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적정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 하에서 공공부문의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현재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공공부문에 의한 재분배 효과의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그런 차이가 모두 복지제도의 절대수준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제도가 동일하더라도 양국간에 연령별 인구구성이 서로 다르다면 국민연금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와 영국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은 노인인구비중이 20%를 상회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10% 수준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이런 차이는 결국 양국간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서로 다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차이 중 일부는 복지

현재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공공부문에 의한 재분배 효과의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그런 차이가 모두 복지제도의 절대수준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간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에 의해서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수준 차이에 기인하지만 그것 말고도 노인인구 비중의 차이 등과 같이 양국간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에 의해서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관측되고 있는 양국간 재분배 효과의 차이가 모두 양국간 복지제도의 절대 수준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KIP**

참고문헌

- 강석훈 · 박찬용, 「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재정논집』, 제18집 제1호, 한국재정 · 공공경제학회 · 한국조세연구원, 2003.
- 박기백 · 김 진 · 전병목,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보고서 04-01,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성명재,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 · 소비패턴 및 개인세부담의 변화 분석』, 연구보고서 00-02, 한국조세연구원, 2000.
- _____,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2-01,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성명재 · 박기백, 「조세 및 정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내부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성명재 · 박형수 · 전병목, 『조세제도가 소득분배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4.
- 현진권,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1999.
- _____,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7호, 한국세무학회, 2001.
- Burniaux, Jean-Marc, Thai-Thanh Dang, Douglas Fore, and Michael Förster,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ies,”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89, ECO/WKP(98)2, 1998.
- Jones, Franci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4/05, *Economic Trends 63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6, pp. 53~98.

<부록> 소득종류별 소득분포

<부표 1> 소득종류별 소득분포(2003년, 전가구, 액수)

소득종류	연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시장소득	9,417	15,957	20,268	24,555	28,540	32,557	36,758	43,241	50,263	74,546	33,611
- 사적이전소득	1,311	1,271	1,321	939	943	1,038	1,320	1,046	1,846	1,579	1,262
- 공적연금	286	287	537	527	483	286	576	445	478	748	465
- 기타사회보장수혜	599	425	219	157	167	158	101	101	136	212	228
- 공적이전소득 계	885	712	756	684	650	444	677	546	614	960	693
- 이전소득 계	2,197	1,983	2,077	1,623	1,593	1,482	1,997	1,593	2,461	2,538	1,954
총소득	11,614	17,940	22,345	26,177	30,133	34,039	38,755	44,833	52,723	77,084	35,566
- 소득세	41	148	243	364	511	733	1,070	1,635	2,246	4,909	1,190
- 재산세	50	57	72	79	80	96	123	139	149	336	118
- 직접세 계	92	206	315	443	591	829	1,193	1,774	2,395	5,245	1,308
- 공적연금기여금	117	259	359	557	647	781	871	1,043	1,299	1,857	779
- 건강보험료	198	317	381	451	508	557	610	729	801	1,116	567
- 기타사회보험료	4	16	23	42	43	55	53	59	68	86	45
- 사회보장기여금 계	319	592	763	1,050	1,199	1,393	1,534	1,831	2,168	3,059	1,391
- 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 계	411	797	1,078	1,493	1,790	2,223	2,727	3,605	4,563	8,303	2,699
기초분소득	11,203	17,142	21,267	24,684	28,343	31,817	36,029	41,229	48,160	68,781	32,866
- 부가가치세	461	708	865	988	1,126	1,214	1,401	1,548	1,714	2,292	1,232
- 특별소비세	52	55	59	57	68	68	90	92	111	176	83
- 교통세	99	230	302	377	449	478	557	615	688	916	471
- 주행세	13	31	41	51	61	64	75	83	93	124	64
- 주세	16	19	19	20	25	22	22	27	24	30	22
- 담배소비세	45	48	51	60	63	60	63	55	49	57	55
- 교육세	48	70	82	97	114	116	136	143	156	214	118
- 소비세 계	734	1,161	1,419	1,650	1,907	2,023	2,344	2,564	2,835	3,808	2,045
세후소득	10,469	15,982	19,847	23,034	26,437	29,794	33,685	38,665	45,325	64,973	30,822

(단위 : 천원)



〈부표 2〉 소득종류별 소득분포(2004년, 전가구, 액수)

(단위 : 천원)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시장소득	9,573	16,499	21,133	25,763	29,787	34,673	39,464	45,728	54,486	80,561	35,768
사적이전소득	1,575	1,643	1,646	1,266	1,534	1,302	1,352	1,759	2,433	2,293	1,680
공적연금	320	397	458	564	514	519	536	387	463	1,021	518
기타사회보장수혜	720	484	351	269	212	155	277	251	156	281	316
공적이전소득 계	1,040	881	809	833	726	673	814	638	619	1,302	833
이전소득 계	2,615	2,524	2,455	2,099	2,260	1,975	2,166	2,397	3,052	3,595	2,514
총소득	12,187	19,023	23,588	27,862	32,046	36,648	41,630	48,125	57,539	84,156	38,282
소득세	42	126	227	431	551	919	1,226	1,794	2,598	5,447	1,336
재산세	51	62	77	86	98	131	131	144	231	402	141
직접세 계	92	188	304	517	649	1,050	1,357	1,938	2,829	5,849	1,477
공적연금기여금	105	255	406	517	701	815	951	1,244	1,421	1,904	832
건강보험료	192	318	391	473	554	598	662	770	912	1,278	615
기타사회보험료	6	17	27	34	43	44	56	68	83	88	47
사회보장기여금 계	303	591	824	1,025	1,298	1,456	1,668	2,081	2,415	3,270	1,493
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 계	395	779	1,129	1,542	1,947	2,507	3,025	4,019	5,244	9,118	2,971
가처분소득	11,793	18,244	22,459	26,320	30,099	34,141	38,605	44,106	52,294	75,038	35,311
부가가치세	479	746	923	1,065	1,179	1,280	1,451	1,559	1,844	2,453	1,298
특별소비세	49	60	62	76	61	67	79	86	102	133	78
교통세	78	208	281	374	423	440	504	575	662	870	442
주행세	15	40	54	72	81	85	97	111	127	167	85
주세	18	20	22	24	22	25	26	27	32	32	25
담배소비세	43	56	65	69	69	66	72	77	61	67	65
교육세	44	72	88	107	110	114	130	145	155	200	117
소비세 계	727	1,202	1,495	1,786	1,946	2,076	2,361	2,580	2,982	3,924	2,108
세후소득	11,065	17,042	20,965	24,534	28,154	32,065	36,244	41,526	49,312	71,114	33,203

〈부표 2〉 소득종류별 소득분포(2005년, 전기구, 액수)

(단위 : 천원)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시장소득	9,499	16,158	21,823	26,287	30,595	35,396	40,614	47,399	57,242	84,293	36,933
사적이전소득	1,533	2,103	1,791	1,497	1,409	1,668	1,712	1,585	2,169	2,614	1,808
공적연금	363	572	457	801	849	394	494	487	519	1,515	645
기타사회보장수혜	913	652	509	330	289	370	290	231	165	428	418
공적이전소득 계	1,276	1,224	967	1,131	1,139	764	784	718	684	1,943	1,063
이전소득 계	2,808	3,328	2,758	2,628	2,548	2,432	2,496	2,303	2,852	4,557	2,871
총소득	12,307	19,486	24,580	28,915	33,143	37,828	43,110	49,702	60,094	88,849	39,804
소득세	32	112	258	406	536	790	1,218	1,760	2,523	5,501	1,314
재산세	45	63	72	70	80	114	141	139	166	313	120
직접세 계	76	175	331	476	616	905	1,359	1,899	2,689	5,814	1,434
공적연금기여금	110	262	434	548	692	845	1,057	1,282	1,474	1,914	862
건강보험료	210	322	424	484	556	622	718	826	962	1,276	639
기타사회보험료	8	14	23	39	47	53	57	79	89	103	51
사회보장기여금 계	328	598	881	1,071	1,295	1,519	1,832	2,187	2,515	3,293	1,552
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 계	404	773	1,212	1,547	1,911	2,424	3,191	4,086	5,204	9,107	2,986
기초분소득	11,903	18,713	23,368	27,368	31,231	35,404	39,918	45,617	54,890	79,743	36,818
부가가치세	407	637	813	921	1,096	1,220	1,313	1,521	1,773	2,386	1,209
특별소비세	48	62	73	69	92	86	95	105	144	168	94
교통세	65	139	253	313	371	438	416	526	563	760	384
주행세	15	32	58	71	84	100	95	120	128	173	87
주세	17	17	23	21	23	26	25	25	27	34	24
담배소비세	48	52	71	67	74	69	70	73	67	66	66
교육세	44	59	90	95	114	120	119	140	153	192	112
소비세 계	644	998	1,382	1,557	1,855	2,057	2,133	2,510	2,854	3,778	1,977
세후소득	11,259	17,716	21,986	25,812	29,377	33,347	37,785	43,106	52,035	75,964	34,841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wkim@kipf.re.kr)

I. 서론

1. 연구 배경

적정 수준의 국가채무 관리와 이를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정책의 중장기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오랫동안 유지하던 한국의 재정은,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투입 및 실업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수지 적자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한국의 재정수지는 1996년까지 소폭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환란시점인 1997년에 적자상태로 반전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98년에는 적자 폭이 명목 GDP 대비 3.9%에 육박하였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9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0년 이후에는 재정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는 5개 항목의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하면 2001년까지는 여전히 적자재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적정 수준의 국가채무 관리와 이를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정책의 중장기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경정예산이 거의 매년 편성되었으며, 2003년 상반기부터 내수침체로 인하여 그 규모가 점차로 커지고 있다. 이로부터, 재정적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회복이 재정운용의 제약으로 작용하고는 있으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대응으로, 금융정책과 더불어 감세 혹은 정부지출

확대의 적자재정(확대재정)정책을 현실화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은 가계와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킴으로써 실물경기를 부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거시경제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인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경기안정화를 위한 정책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연구와는 달리 경제이론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실제 경제환경에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수의 내생 변수만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에서 이용된 연구방법은 시계열 분석에서 널리 이용되는 계량경제 기법인 구조적(structural)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 Regression: VAR) 모형을 기초로 하며, 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변동과의 상호반응에 의한 자동적인 조정의 변화를 제외한 순수한 재량적 재정정책을 식별함으로써, 이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다.

재정정책의 실물경제 효과를 소득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조세의 증가는 소득을 감소시키고, 정부지출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련 연구

가. 국내연구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국내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재정정책의 실물경제 효과를 소득 중심으로 분석한 김성순(2001), 이인실·김기승(2004), 최중수(2002) 등의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조세의 증가는 소득을 감소시키고, 정부지출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모수원·봉우중(1996), 박종구(1995), 조하현(1996) 등의 결과에 의하면, 소비는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 대체로 양(+)의 반응 혹은 무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음의 <표 1>은 재정정책에 관한 기존 국내연구의 방법 및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기존 국내연구

연구자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김성순 (2001)	Ahmed & Rogers(1995)의 현재가치제약접근법에서 도출된 말기조건식을 추정방정식으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에 정부지출은 양(+), 조세는 음(-)의 영향 • 투자성 지출이 소비성 지출보다 더 큰 양(+)의 효과를,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더 큰 음(-)의 효과



재정정책은 경제 안정화라는 목적 이외에도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실시되며 시차 문제로 효과가 대체로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나게 된다.

〈표 1〉의 계속

연구자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김성순 (2003)	더미변수를 포함한 단기 SVAR 모형을 이용 (식별방법: Cholesky Decompos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출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위기 전후에 상이하여 위기 이전에는 음(-), 이후에는 양(+) • 소비성 지출은 소득에 음(-), 소비에는 위기 이전에는 음(-)에서 이후에는 양(+), 투자성 지출은 소득에 위기 이전에는 음(-) 이후에는 양(+), 소비에는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음(-)
모수원 봉우종 (1996)	Modigliani & Sterling(1986) 모형에 근거하여 공적분기법과 Geweke & Porter-Hudak(1987)의 2단계 추정법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미약
박종구 (1995)	Feldstein(1982), Kormendi(1983)의 방법 및 VAR 모형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양(+)의 영향
박하섭 최종수 (1997)	VAR 모형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자 및 국채의 충격이 소비, 이자율, 환율 및 경상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미미하며, 정부지출의 경우도 유사
이인실 김기승 (2004)	케인즈 단순모형하에 승수를 도출 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에는 정부지출 정책이, 실업률을 줄이는 데는 감세(소득세 인하)정책이 적절
조하현 (1996)	Aschauer(1985)의 동태적 최적화 모형에서의 오일러 방정식에 유효소비 개념과 합리적 기대를 적용한 교차방정식 제약을 유도하여 완전정보최우추정법(FIML)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카디안불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와 합리적 기대의 결합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
조하현 박광우 (1997)	영구소득-소비 모형과 Kalman Filter를 사용한 Time-Varying Parameter 모형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적자 재정정책 및 공채발행이 소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종수 (2002)	자산수요함수와 VAR 모형하에서 인과관계 분석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조달에 대한 실질소득, 명목소득 및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가 미흡

재정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국내연구는, 금융정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추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금융정책의 운영은 실물경제 안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도 즉각

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정정책은 경제 안정화라는 목적 이외에도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실시되며 시차 문제로 효과가 대체로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나게 된다. 둘째, 재정정책 연구는 금융정책의 경우와는 달리, 경기변동과정 중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stabilization effects)라는 재정정책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정책과 관련된 자료는 금융과 관련된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집에 어려움이 많고,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자료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외하더라도,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 국내연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인 계량분석 방법에서 주로 이용한 Feldstein(1982), Kormendi(1983) 등의 단순방정식(single equation) 접근법의 경우, 시계열 변수들 사이의 내생성(endogeneity), 동시성(simultaneity) 및 동행성(comovement) 등을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에서는 주로 축약형(reduced-form) VAR모형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해왔다. 하지만, 축약형 VAR 모형에서 도출된 예측오차(unexpected errors)는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의 근본적인 외생적 충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일 수 있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사항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정책은 금융정책과 달리 무시할 수 없는 시차 문제가 발생하고, 재정이 경기순환 과정에서 자동안정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착안하여 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 중 하나로 널리 쓰이고 있는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구조적 VAR 모형기법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두 가지 주요 수단에 해당하는 감세와 지출확대가 갖는 거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 최근 연구 방법

최근의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구조적 VAR 모형을 기초로 한 방법이 주류를 이룬다. 이 방법론은 선형적인 경제적 직관이나 주어진 경제이론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실제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소수의 변수와 단순화된 통계학적 모형만을 이용하여, 조세 및 재정지출의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다음의 <표 2>는 외생적인 충격의 식별(identification) 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소개되었던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최근의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구조적 VAR 모형을 기초로 한 방법이 주류를 이룬다. 이 방법론은 조세 및 재정지출의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지출 혹은 조세를 변화하게
만드는 정부의 순수한
정책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만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정책에서 외생적 충격을
식별하던 방법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표 2〉 최근 재정정책 연구방법 분류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Ramey and Shapiro(1998), Edelberg and Eichenbaum, Fisher(1999),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과 관련된 큰 변화가 일어난 특정시 점을 더미변수로 고려한 에피소드(episode) 분석
Mountford and Uhlig(2002)	부호제약(the sign restriction)을 이용하여 재정정책 충격을 조세충격과 적자재정 하의 정부지출 충격, 균형재정 하의 정부지출 충격으로 구분하여 분석
Fatas and Mihov(2000), Favero(2002)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콜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이용한 식별제약으로 분석
Blanchard and Perotti(2002), Perotti(2002), Hoppner(2002)	재정정책의 제도적 정보(institutional information) 즉, 시차 및 분기 의존성 등을 고려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으로 분석
Becker(1997), Krusec(2003)	시계열 변수사이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 즉, 공적분 관계를 고려한 공통확률추세모형과 구조적 벡터오차수정(Vector Error Correction)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II.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Blanchard and Perotti(2002)

Blanchard and Perotti(2002)는, 축약형 방정식(reduced-form VAR)을 추정한 후 일정한 갯수의 식별조건을 부여하여 구조방정식을 도출하는 고전적인 SVAR 방법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방법으로 구조적 충격을 식별한다. Blanchard and Perotti(2002) 모형(이하 B&P 모형이라 함)은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금융정책과는 다른 재정정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이미 언급되었던 것처럼, 지출 혹은 조세를 변화하게 만드는 정부의 순수한 정책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만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정책에서 외생적 충격을 식별하던 방법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재정정책의 경우, 결정시차(decision lag)¹⁾와 실행시차(implementation lag)²⁾ 등의 시차 문제와 자동안정화 장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생적 충격을 식별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황기에는 세입이 증가하고 실업급여가 감소하여 호황을 완화시키고, 불황기에는 세입은 감소하고 실업급여는 증가하여 자동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는 순수한 재량적 재정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재량적 재정정책의 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외해야만 한다.

이제 본 연구에서 이용된 B&P 모형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모

1) 재정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한 시기부터 정책당국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2) 정책당국이 재정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채택, 실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형의 구조는 전통적인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과 동일하다. 다만, 기존모형에 분기의존성(quarterly dependence)을 추가하였으며, 그 축약형 방정식(VAR)의 형태는 다음의 식 (1)과 같다.

$$\text{식 (1)} \quad X_t = \beta(L, q)X_{t-1} + u_t$$

여기서 $X_t = [T_t, G_t, Y_t]$ 는 로그를 취한 분기의 1인당 실질 세입, 세출, 소득으로 이루어진 3×1 벡터이고, $\beta(L, q)$ 은 분기의존성을 고려한 4분기로 배분된 3×3 차원의 행렬다항식(lag polynomial)이며, $u_t \equiv [t_t, g_t, y_t]$ 는 축약형 방정식의 예측오차 벡터로 계열 상관이 없으며 공분산 행렬이 Σ^E 이다. 식 (1)의 축약형 방정식에서 계수행렬인 $\beta(L, q)$ 는 최소자승법(OLS)을 적용하면 일치적(consistent)이고 효율적(efficient)인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계수행렬에 분기의존성을 고려하는 이유는, 경기 변동에 따라 특정한 세입의 반응이 계절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조세는 1년 동안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매년 마지막 분기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조세는 마지막 분기의 소득뿐만 아니라 그 이전 3분기의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조세가 부과되지 않는 나머지 3분기의 경우에는 세입은 0이며, 소득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특정조세의 성격을 감안하기 위해 분기의존성을 모형에 포함시킨 것이다.

각 내생변수의 과거치에 의해 설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축약형 방정식의 예측오차 벡터 u_t 에는 세입과 세출의 경기 변동에 따른 자동적인 변화와 외생적인 충격(ϵ_t)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의 외생적인 변화 또는 충격에 대한 소득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축약형 방정식의 예측오차로부터 구조적 충격을 분리해야 한다. B&P 모형은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먼저 다음의 관계식을 가정한다.

$$\text{식 (2)} \quad t_t = a_1 y_t + a_2 \epsilon_t^g + \epsilon_t^t$$

$$\text{식 (3)} \quad g_t = b_1 y_t + b_2 \epsilon_t^t + \epsilon_t^g$$

$$\text{식 (4)} \quad y_t = c_1 t_t + c_2 g_t + \epsilon_t^y$$

식 (2)의 동일한 분기에 예상하지 못한 세입(축약형 방정식의 예측오차)의 움직임은 예상하지 못한 소득에 대한 반응(자동안정화 장치)과 세출 및 세입의 구조적 충격에 의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며, 식 (3)과 식 (4)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식 (2)~식 (4)의 모

계수행렬에 분기의존성을 고려하는 이유는, 경기 변동에 따라 특정한 세입의 반응이 계절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세입과 세출의 움직임은 자동안정화 장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동 분기에 예상하지 못한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수(parameter)들을 식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a_1 과 b_1 의 파라미터는 세입과 세출의 제도적인 정보(institutional information)에 의존한다. 예상하지 못한 세입과 세출의 움직임은 자동안정화 장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동 분기에 예상하지 못한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먼저 소득이 세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자동안정화적 효과는 매우 작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b_1 = 0$ 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소득이 세입에 미치는 자동안정화 효과인 a_1 은 세수탄력성으로 측정하며 다음의 식 (6)에 의해 표현된다.

$$\text{식 (6)} \quad a_1 = \sum \eta_{T, B} \eta_{B, X} \frac{T_i}{T}$$

여기서 T 는 총세입을, T_i 는 개별세입을 의미하고, $\eta_{T, B}$ 은 과세베이스에 대한 개별 조세의 탄력성을, $\eta_{B, X}$ 은 국민소득에 대한 과세베이스의 탄력성을 의미한다.

둘째, c_1 과 c_2 파라미터³⁾는 경기조정된(cyclically-adjusted) 축약형 방정식의 예상하지 못한 세입과 세출의 예측오차를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로 이용하여 추정한다. 경기조정된 예측오차를 각각 $t'_i \equiv t_i - a_1 y_i$ 와 $g'_i \equiv g_i - b_1 y_i$ 라고 정의하면, 이러한 오차는 각각 세입과 세출과는 상관관계는 있으나 자동안정화 장치의 영향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구조적 충격과는 무상관⁴⁾이므로 도구변수로 이용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조세와 정부지출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 어느 변수가 먼저 반응하는가에 따라 a_2 와 b_2 둘 중 하나의 파라미터를 0으로 가정하고 다른 파라미터를 구한다. 세입 내 세출 원칙에 따라 정부가 조세를 정부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저 결정한다고 하면, 정부지출의 구조적 충격이 예상하지 못한 세입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a_2 = 0$ 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b_2 는 g'_i 을 t'_i 에 회귀분석하여 추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의 순수한 외생적 충격이 식별되면, 이 구조적 충격(재량적 재정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동학적 경로는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충격반응함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소득이 세입에 미치는 자동안정화 효과인 a_1 은 시간에 의존하므로 평균적인 탄력성을 이용한다. 또한 분기의존성 때문에 충격이 어떤 분기에 발생했는가에 따라 재량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분기의존성을 고려한 축약형 방정식으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추정 한 후, 분기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은 축약형 VAR 모형을 추정하여, 벡터이동평균모형(VMA)으로 가역(invert)함으로써, 재량적 재정충격에 대한 평균적인 동태적 반응을 조사한다. 충격반응함수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은 몬테카를로(Monte Carlo

3) 예상하지 못한 세입 및 세출의 움직임은 예상하지 못한 경기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세입 및 세출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로를 동시효과(contemporaneous effect)라고 부르기로 한다(Blanchard & Perotti (2002) 참조).

Simulation Method) 방법을 이용한다.

III. 실증분석

1. 자료

기존 재정정책의 실물경제 효과에 대한 관련 국내연구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연간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시계열이 짧은 단점이 있으며, 분기자료는 1994년부터 발표되고 있어 이 또한 표본이 작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조사통계월보(통계청에서 발표하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Government Finance Statement)의 세입⁴⁾과 세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GDP⁵⁾를 이용한다. 조사통계월보는 한국은행 국고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월별자료까지 집계되었으며, 2000년 11월까지 조사된 후 통합재정수지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통합재정수지의 작성 목적은 재정수지차를 정확히 계산하고,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시켜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일정기준에 따라 통합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재정정책의 실물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계열이 짧은 문제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통계월보의 재정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각각의 자료에 대한 특성 비교는 다음의 <표 3>을 참고한다.

<표 3> 자료 비교

구분	조사통계월보	통합재정수지
조사 기관	한국은행	기획예산처(예산기준) 재정경제부 국고국(결산기준)
조사 기간	월	1955년 1월 ~ 2000년 1월
	분기	1955년 분기 ~ 2000년 3분기
	년	1955년 ~ 1999년
조사 대상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의 (세계잉여금, 전대차관 등) 을 포함하고, 지방 정부는 불포함	1999년 10월 ~ 현재
특징	• 국고를 기준으로 작성 • 월 및 분기자료는 재정차관 및 등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간, 자료와는 일치하지 않음	1994년 1분기 ~ 현재
		1970년 ~ 현재
		• 현금주의 작성(IMF에서는 2001년부터 발생주의로 전환을 권고) • 세입은 국고에서 수납단계에서, 세출은 현금지급단계에서 작성

재정정책의 실물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시계열이 짧은 문제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통계월보의 재정자료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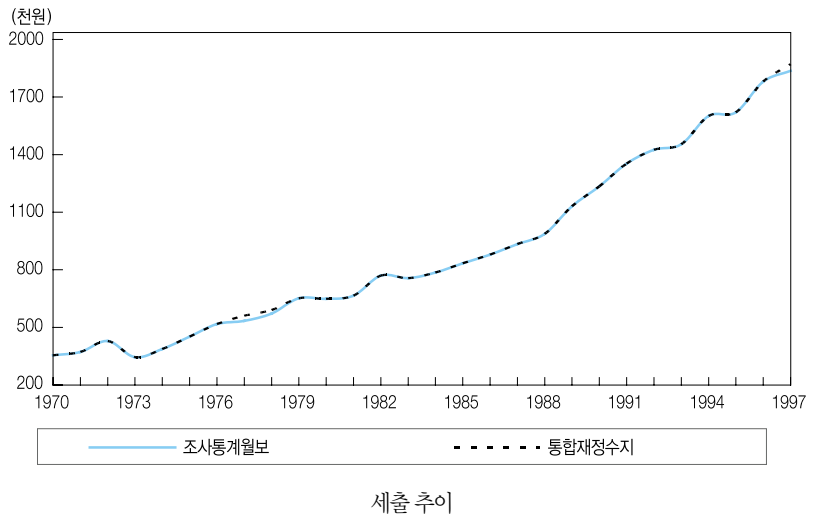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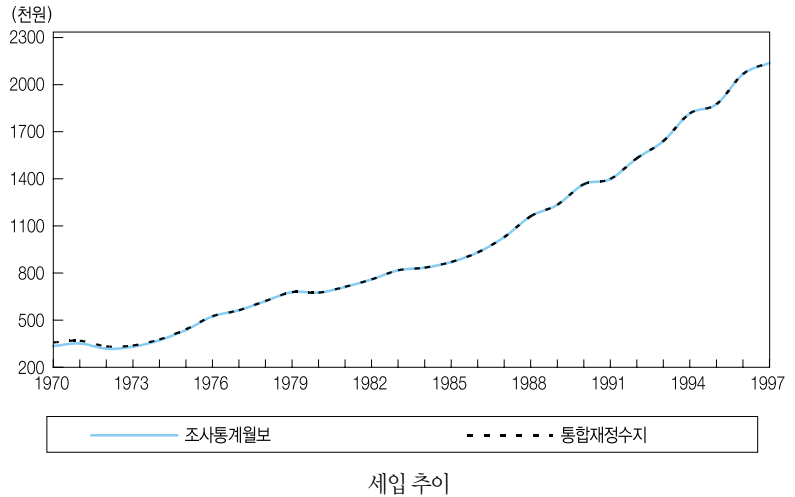
4) 본 연구에서의 세입이란, 개별 조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5)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GDP 관련 통계가 2000년 가격기준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95년 가격 기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조사통계월보의 분기자료는 재정차관 및 상환액의 이중계산을 조절하지 않은 원시자료(raw data)이므로, 통합재정수지와는 다소 다른 성격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조사통계월보와 통합재정수지의 1970년부터 1997년까지 1인당 연간 자료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준다. 세목항목별로는 자료 집계시점 및 계정 분류 체계, 특별회계 처리, 공공기금의 포함 여부 등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림 1]을 살펴보면 세입 및 세출 자료의 시계열 추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이용된 조사통계월보의 분기자료는 재정차관 및 상환액의 이중계산을 조절하지 않은 원시자료(raw data)이므로, 통합재정수지와는 다소 다른 성격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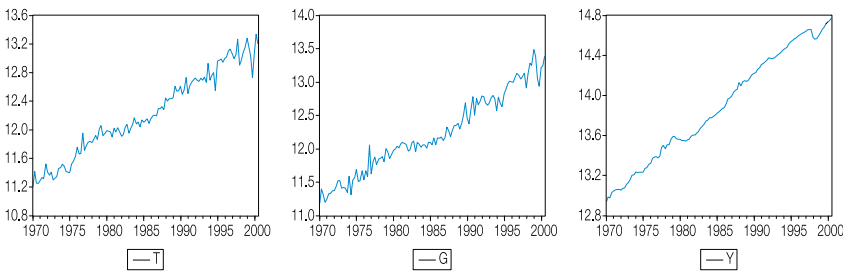
[그림 1] 시계열 변수 추이: 연간자료 비교



순수한 의미에 있어, 정부의 재정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과 이전지출을 제외한 순(net) 조세수입 및 정부지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조사통계월보의 분기자료는 이자지급과 이전지출 자료에 대한 집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세입과 세출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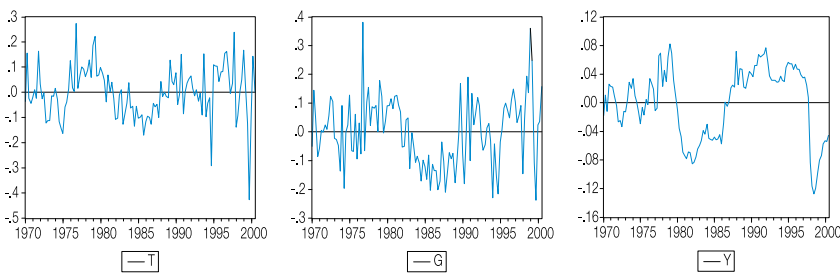
소득의 경우 1980년대 초 제 2차 오일쇼크(oil shock) 이후와 외환위기시 경기악화가 절정에 달한 1998년에 크게 감소하는 구조적 전환점이 있었고, 세입과 세출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변동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시계열 변수 추이(계절 조정 후)



[그림 2]은 분석기간(1970년 1분기부터 2000년 3분기까지)동안의 로그를 취한 계절 조정된 일인당 변수의 추이를 보여준다(·세입, ·세출, ·소득). [그림 2]에서 보듯이, 세 변수 공히 선형의 시간추세(linear time trend)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의 경우 1980년대 초 제 2차 오일쇼크(oil shock) 이후와 외환위기시 경기악화가 절정에 달한 1998년에 크게 감소하는 구조적 전환점(structural break)이 있었고, 세입과 세출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변동성(volatility)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1인당 세입, 세출, 소득을 로그로 전환한 후, 선형추세를 제거(linear detrending)한 자료를 사용한다[그림 3].

[그림 3] 선형추세를 제거한 자료



[그림 3]을 보면, 세입보다 세출의 변화가 대체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외환

6) 소득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계절 조정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은 Eviews 4.0의 X-12 방법으로 계절조정하였다.



정부지출의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동시적인 효과는 조세의 경우는 음(-), 그리고 정부지출은 양(+)으로 도출되었다.

위기 이후에는 두 재정변수의 변동성이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다.

2. 실증분석 결과

분기의존성을 고려한 축약형 VAR 모형(이하에서 Q-VAR 모형이라 함)의 시차는 4로 설정하였고, 추정방법은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한다. Q-VAR 모형의 예측오차로부터 자동안정화 장치를 제외한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세수탄력성 a_1 을 계산해야 한다.

Blanchard and Perotti(2002)는 세목별로 탄력성을 계산한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세수탄력성을 계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연구에서 계산한 탄력성을 이용한다. 박기백·박형수(2002)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합재정수지를 이용하여 세입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GDP 대비 세목별 비중과 탄력성을 계산함으로써, 총조세수입의 탄력성을 <표 4>에서와 같이 구했다. 이를 이용하여, 예상하지 못한 소득 변화에 대한 조세의 자동적인 반응의 크기를 $a_1 = 1.09$ 로 한다. 다음으로 b_1 의 값, 즉, 예상하지 못한 소득변화에 대한 정부지출의 자동적인 반응의 정도는 B&P 모형의 식별 방법과 동일하게 0으로 한다.

<표 4> 세입의 소득 탄력성 추정결과

구분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사회보장기여금	총조세수입
가중치	0.22	0.14	0.52	0.12	-
탄력성	1.38	1.36	0.80	0.71	1.09

주: 박기백·박형수(2002) 참고

가. 동시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계수추정치(Contemporaneous Coefficient)

예상하지 못한 조세와 정부지출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c_1 과 c_2 를 추정하기 위해서, 경기조정된 조세 충격($t'_i = t_i - a_1 y_i$)과 정부지출 충격($g'_i = g_i - b_1 y_i = g_i$)을 도구변수로 이용한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조세가 소득에 미치는 동시효과는 $c_1 = -0.093$ 이고 정부지출이 소득에 주는 동시효과는 $c_2 = 0.074$ 로 나타났다. 즉, 조세와 정부지출의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동시적인 효과(contemporaneous effect)는 조세의 경우는 음(-), 그리고 정부지출은 양(+)으로 도출되었다. 여기서 동시적 관계를 의미하는 계수추정치는 조세 혹은 정부지출이 1% 변화

할 때 소득이 몇%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탄력성의 의미이다.

파라미터 a_2 와 b_2 의 추정을 위해서, 정부가 조세를 정부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저 결정하는 경우(즉, $a_2=0$ 을 가정)부터 고려한다. 이 경우에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제외한 조세충격($t'_t = t_t - a_1 y_t$)이 경제의 구조적 조세충격에 해당한다. 구조적 조세충격이 예상하지 못한 정부지출 움직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최소자승법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b_2=0.489$ 을 얻었다. 이와는 달리, $b_2=0$ 을 가정하는 경우, 구조적 정부지출 충격이 예상하지 못한 세입 움직임에 미치는 효과는 $a_2=0.410$ 으로 나타났다.

감세와 지출확대 모두, 동시 효과가 재량적 재정정책의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5〉 동시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추정치(탄력성)

	c_1	c_2	b_2	a_2
계수추정치	-0.093	0.074	0.489	0.410
t -값	-3.586	3.310	5.445	5.445
p -유의확률	0.005	0.001	0.000	0.000

나. 동태적 효과(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

모형의 식별과정으로부터 도출된 구조적 충격이 각 변수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충격반응함수를 조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분기의존성을 고려한 Q-VAR 모형으로부터는 예측오차의 공분산 행렬만을 구하고, 실제의 평균적인 충격반응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기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적인 VAR 모형을 VMA 모형으로 가역한 후 추정된 계수값을 이용한다. 〈표 6〉은 재정변수의 충격이 발생한 시점(분기)에 나타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동시적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감세와 지출확대 모두, 동시 효과가 재량적 재정정책의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b_2=0$ 인 경우에는 재량적 감세정책의 동시적 효과가 정부지출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a_2=0$ 인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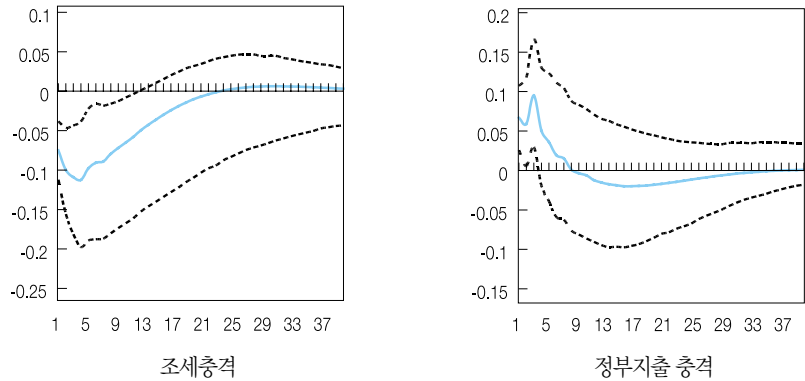
〈표 6〉 동시 효과(동분기)

		동시 효과	재량적 재정정책
$a_2=0$	감세	0.093	0.051
	지출확대	0.074	0.068
$b_2=0$	감세	0.093	0.085
	지출확대	0.074	0.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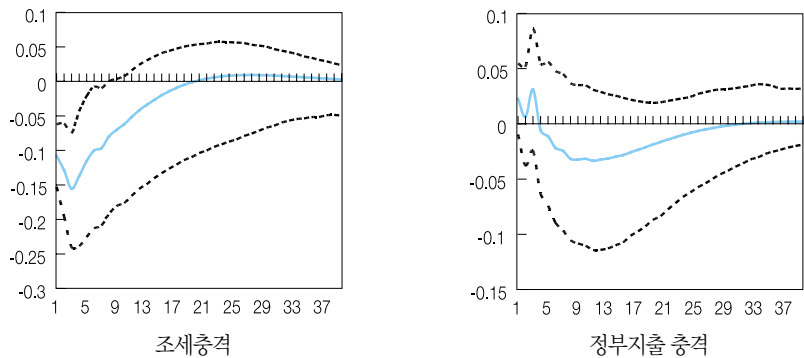
구조적 조세충격은 소득에 음(-)의 효과를, 정부지출 충격은 소득에 양(+)
의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그림 4]와 [그림 5]은 순수한 재량적 재정충격이 각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a_2=0$ 과 $b_2=0$ 의 두 가지 가정 하에서 도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4] 소득의 동태적 반응($a_2=0$ 인 경우)



[그림 5] 소득의 동태적 반응($b_2=0$ 인 경우)



그림에서 보이는 실선은 구조적 충격에 대한 각 변수의 반응을 나타내고, 점선은 정규분포를 이용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5,000번하여 계산된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재량적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4]와 [그림 5]를 보면, 구조적 조세충격은 소득에 음(-)의 효과를, 정부지출 충격은 소득에 양(+)
의 영향을 미친다. $a_2=0$ 인 경우, 조세충격의 효과는 20분기 이후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데 반하여, 정부지출 충격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b_2=0$ 일 때는, 조세충격에 대한 소득의 반응이 $a_2=0$ 인 경우보다 대체로 크며 여전히 20분기 이후까지 지속적이나, 정

부지출 충격에 대한 소득의 반응은 $a_2=0$ 인 경우보다 훨씬 작으며, 1년이 지나면 양(+)의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음(-)의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 구축효과가 매우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재정충격에 대한 소득의 반응을, 해석의 편의를 위해 평균적인 조세부담율과 정부지출 비중의 역수를 이용하여 원화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a_2=0$ 인 경우에는, 1원 증가하는 구조적 조세충격이 발생하면, 소득은 4분기 후에 효과가 최고에 도달하며 그 크기는 0.58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원 증가하는 구조적 정부지출 충격에 대해서는 소득이 3분기 후에 0.482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_2=0$ 인 경우에는, 1원 증가하는 구조적 조세충격이 발생하면 소득의 변화는 3분기 후에 최고에 도달하여 0.802원 감소하고, 1원 증가하는 구조적 정부지출 충격에 대해서는 소득이 3분기 후에 0.158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케인즈 경제모형에서의 승수(multiplier)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케인즈 모형에서는 정부지출 승수가 조세 승수보다 크지만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오히려 조세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케인즈 모형에서는 정부지출 승수가 조세 승수보다 크지만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오히려 조세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충격에 대한 소득의 반응

구 분		1	2	3	4	5	10	15	20
조 세	$a_2=0$	-0.387	-0.515	-0.562	-0.580*	-0.504	-0.335	-0.154	-0.035
총 격	$b_2=0$	-0.555	-0.664	-0.802*	-0.707	-0.595	-0.319	-0.103	0.008
정부지출	$a_2=0$	0.339	0.300	0.482*	0.256	0.183	-0.032	-0.102	-0.084
총 격	$b_2=0$	0.115	0.032	0.158*	-0.030	-0.058	-0.161	-0.143	-0.083

*: 반응이 가장 큰 분기

주: 1원 조세,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다음으로 〈표 8〉의 동태적 효과는 재량적 재정정책의 단기적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1년간의 소득의 반응을 평균한 것으로, $a_2=0$ 인 경우에는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대략 1.16배, $b_2=0$ 인 경우에는 대략 4.81배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량적 재정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는 감세가 정부지출 확대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제성장 측면에서 $a_2=0$ 인 경우에는 대략 1.20배, $b_2=0$ 인 경우에는 대략 2.89배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감세가 지출확대보다 장기적인 소득증대 측면에서 약 1.2~2.9배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장효과

		재정정책 단기효과년 (t)	지속기간	총효과	연평균 성장효과
감세	$a_2=0$	0.335	5년	1,226	0.245
	$b_2=0$	0.477	5년	1,344	0.269
지출	$a_2=0$	0.288	5년	0.409	0.205
확대	$b_2=0$	0.093	1년	0.093	0.093

IV. 결론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재정은, 적정 수준의 국가채무 관리와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중장기적 과제와 더불어 경기를 안정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확대 재정정책의 두 가지 주요 수단인 감세와 정부지출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경기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국민소득과 조사통계월보의 세입-세출에 관한 분기 자료이며, 이들을 Blanchard and Perotti(2002)가 제안한 분기의존성을 고려한 구조적 VAR 모형에 이용하였다.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분석방법은 재정의 제도적 특징 등을 모형 내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정책의 변화를 식별하는 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증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출의 증가와 감세 모두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의 경제적 직관과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 역할 중 동시효과가 재량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한 피드백이 고려된 세입과 세출의 동시효과는 순수한 재량적 정책의 효과보다 대략 1.1~2배 정도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감세정책이 정부지출 확대보다 더욱 지속적이며 보다 큰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감세가 지출확대보다 장기적인 소득증대 측면에서 약 1.2~2.9배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수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의 실증 결과를 단순히 감세정책의 지지로 해석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정의 경기안정화 역할은 최근에 강조되었으며, 과거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 재정의 역할에 집중되어 균형재정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즉,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균형재정을 강조하여 정부지출을 적극적인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감세는 상대가격 변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정부지출의 변화는 경기조절 효과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기조절을 위한 순수한 의미의 재량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우리나라의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도 감세가 경기조절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용된 VAR 모형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지닌 통계적인 시계열 계량모형으로, 경기변동의 복잡다기한 양상을 세입과 세출의 변화만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기 부양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이전지출과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 등을 제외한 순조세수입과 순정부지출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문제도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총지출 대신에 특별한 지출항목 예를 들어, 정부투자지출을 중심으로 경기변동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KIPF**

경기조절을 위한 순수한 의미의 재량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우리나라의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도 감세가 경기조절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순, 「재정적자의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 『재정논집』, 제15집 제2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1. 6.
- 김성순,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분석』, 제9권 제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 IV.
- 모수원·봉우중, 「리카르도 등가가설 : 정수차분과 분수차분」, 『경제학연구』, 제47집 제2호, 한국경제학회, 1996. 6.
- 박기백·박형수,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 박종구, 「재정지출과 민간소비」, 『재정논집』, 제9집, 한국재정학회, 1995. 3.
- 박하섭·최종수, 「한국에 있어서 리카도 중립성 가설의 실증적 검증」, 『재정논집』, 제12집, 한국재정학회, 1997. 12.
- 이인실·김기승, 「예산운용과 건전재정」, 한국재정학회 2004 추계정기학술대회, 2004
- 조하현, 「리카르도 불변정리에 대한 실증분석 : 한국의 경우(1971-1995)」, 『경제학연구』, 제44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1996. 12.



조하현·박광우, 「리카르도 불변정리와 재정정책의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3권 제2호, 한국금융연구원, 1997.12.

최종수, 「배로-리카르도 동등성 가설에 대한 실증 분석」, 『공공경제』, 제7권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2. 5.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Becker, T., “An Investigation of Ricardian Equivalence in A Common Trends Model,”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97, pp. 405~431.

Blanchard, Oliver J. and Perotti, Roberto, “An 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The Dynamic Effects of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on Outpu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02, pp. 1329~1368.

Edelberg, W. and M. Eichenbaum, and J. Fisher,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Shocks to Government Purchase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999, pp. 166~206.

Fatas, Antonia and Mihov, Ilian,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on Consumption and Employment: Theory and Evidence,” INSEAD, mimeo, 2000.

Favero, Chrlo A., “How do European Monetary and Fiscal Authorities Behave?,” Centre for Economic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426, 2002,

Feldstein, Martin S., “Government Deficits and Aggregate Demand”,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82, pp. 1~20.

Hoppner, Florian, “Fiscal Policy and Automatic Stabilisers: A SVAR Perspectiv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of Bonn, 2002.

Kormendi, Roger C., “Government Debt, Government Spending and Private Sector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1983, pp. 994~1010.

Krusec, Dejan,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on Output in a Structural VEC Model Framework: The Case of Four EMU and Four Non-EMU OECD,”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Florence, Italy, 2003.

Mountford, Andrew and Uhlig, Harald, “What ar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Shocks,” Centre for Economic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338, 2002.

Perotti, Robert, "Estimating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 OECD Countrie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68, 2002.

Ramey, Valerie A. and Shapiro, Matthew D., "Costly Capital Reallocation and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NBER Working Paper 6283, 1998.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이기영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kylee@kyonggi.ac.kr)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문제이다.

I. 서론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선진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1999년 가입대상이 도시지역 거주자에게까 지 확대되면서 국민연금제도는 사실상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이 되었다. 2005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는 1,712만명, 수급자는 141만명¹⁾에 이르고 기금운용규모는 156조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노인부양의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문제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고 나아가 연금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급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투자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금 운용의 의사결정에 관한 지배구조(governance)는 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운용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를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우선 중요하다²⁾. 왜냐하면 연금기금의 지배구조에 따라 기금의 투자전략이 달라져 운용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 노령연금 기준

2) Iglesias and Palacios(2000), Useem and Mitchell(2000), Useem and Hess(2001), Mitchell and Hsin(1997) 등은 공적연금제도의 지배구조가 투자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GDP 및 자본시장의 규모에 비해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커서 기금운용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성장률이 연 15%를 넘어서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연 7%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면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 기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는 연금기금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 및 거시경제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성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는 일반기업의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최대 투자자로서 투자기업의 평균지분율이 약 3%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적립금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그 지분율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특정 이익집단이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정부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한 기업지배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소위 연금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가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에 관한 여러가지 개편안을 평가해보고 나름대로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성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II.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과 효율성

1.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조직에서는 조직의 지배권을 가진 대리인이 소유자(주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사적 이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배권의 행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자와 대리인 간의 이익 충돌 문제, 소위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바로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지배구조(governance)는 대리인이 소유자의 이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소유와 지배에 따른 대리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공적연금의 지배구조도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소유와 지배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는 일반 회사 기업뿐만 아니라 펀드 및 연금관계에서도 발생한다. 공적연금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지배구조도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확정급여형(defined-benefit, 이하 DB형)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기여한 연금보험료로 연금기금(pension fund)을 조성하고, 연금기금의 운용을 수탁자(board of trustees, governing body)에게 위탁한다³⁾. 수탁자는 연금기금의 실제 운용이 연금가입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자(fund manager)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운용자는 수탁자에 의하여 결정된 자산배분 기준에 의거하여 연금기금을 운용한다. 공적연금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기금사업 및 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집행한다. 따라서 DB형 공적연금의 지배구조는 공적연금의 소유자⁴⁾라고 할 수 있는 연금가입자와 사용자가 조성한 연금기금을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탁자, 기금운용자 및 정부로 하여금 오로지 소유자의 이익에 입각하여 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DB형 공적연금에서의 수탁자 및 기금운용자는 각각 일반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와 경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DB형 공적연금에서 수탁자 및 기금운용자의 대리인 문제는 일반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와 매우 유사하며 대리인 문제도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탁자나 기금운용자가 사적 이익이나 소유자가 아닌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함으로써 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리인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Fama and Jensen(1983)은 의사결정 과정상의 기능을 분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들은 조직의 지배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발의(initiation) - 승인(ratification) - 실행(implementation) - 감시(monitors)의 4단계로 구분하고⁵⁾, 발의와 실행을 의사결정 관리(decision management) 기능으로, 승인과 감시는 의사결정 통제(decision control)기능으로 분류한 바 있다.

대리인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관리(발의 및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대리인과 의사결정 통제(승인 및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대리인을 분리하고, 의사결정 통제를 담당하는 대리인은 소유자의 이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 관리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다.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의사결정 관리기능은 CEO를 포함한 경영자가 담당하고, 의사결정 통제기능은 이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이러한 의사결정 기능 분리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관리기능은 기금운용자가 담당하고, 의사결정 통제기능은 수탁자가 담당하도록 함으로

3)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기금이 설립되지만 그 안에서 개별 가입자의 계정은 가입자별로 구별하여 관리된다. 또한 DC형 공적연금의 경우 개별 연금가입자가 자신의 계정 운용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따르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DB형이기 때문에 이하의 논의에서는 DB형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4) 공적연금의 소유자는 관련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소유자는 그 조직의 잔여 위험(residual risk)을 부담하는 주체라고 정의될 수 있다(Fama and Jensen(1983)). DB형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일차적인 잔여 위험 부담자가 된다. 왜냐하면 연금기금 운용에 따른 잔여위험은 정해진 급여 수준을 위한 기여 즉, 연금보험료 수준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DC형 공적연금에서는 연금기금의 운용성과가 급여 수준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금의 수령자가 일차적인 잔여위험 부담자가 된다. 연금가입자 이외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DB형 공적연금의 경우 사용

써 대리인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지배구조는 일반 회사기업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는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일반 회사기업과는 달리 외부 통제 메커니즘(external control mechanism)이 존재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통제 메커니즘(internal control mechanism)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 하나의 사업주체만 존재하는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 또한 공적연금의 소유권은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자본시장 및 기업지배권 시장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자본시장 및 기업지배권 시장 등 외부통제 메커니즘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에서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수탁자의 역할이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공적연금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가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는 달리 정부 관련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정부는 자신의 특정 정책적·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금기금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정부의 목표는 연금소유자의 이익 극대화와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유권 보호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조차 공적연금기금을 이용한 정부의 정책목표 추구행위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⁵⁾. 따라서 공적연금의 지배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정부가 오로지 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요소로서 수탁자의 유인구조

다양한 외부 및 내부 통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일반 회사기업과는 달리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유일한 통제 메커니즘이 된다. 따라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탁자를 가지는 것이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수탁자가 기금의 효과적인 감시자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유인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가. 수탁자의 구성과 임면

수탁자가 오로지 공적연금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공적연금의 수탁자(governing body)는 연금가입자, 사용자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일반

공적연금의 지배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정부가 오로지 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역시 잔여위험을 부담한다. 한편 법령에 의거하여 연금기금 고갈 시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경우 일반 납세자(tax payers) 역시 잔여위험을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는 달리 범으로써 연금기금의 고갈로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 재정에 의한 충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납세자는 잔여위험의 부담자라고 할 수 없다. 공적연금의 소유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조성훈·고광수·박창욱(2004) 및 Hess and Impavido(2003)를 참조.

- 5) 발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승인은 발의된 안건 중에서 실제로 실행될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실행은 승인된 결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하고, 감사는 실행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 점에 대해서는 Fama and Jensen(1983)을 참조.
- 6) 정부가 공적연금을 연금소유자의 이익극대화가 아닌 정책적·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용한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Hess and Impavido(2003)를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공공부문(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시장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당연직 정부관리 혹은 정부에 의해 지명된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중요하다.

회사의 이사회는 경우 해당 회사의 경영자이기도 한 사내이사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당연직 정부관리 혹은 정부에 의해 지명된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들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연금 자산을 사용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특유의 정부관련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정부관리와 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임명되는 인사들이 자치하는 비중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Mitchell and Hsin(1997)은 미국의 공적연금들이 사적연금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두 종류의 연금이 각각 다른 원칙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민간연금이 명확한 경제적 동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에 공적연금의 경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수탁자의 구성이 연금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유능한 인사들이 수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임명되고 해임되는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탁자 임명 절차를 가진 공적연금의 좋은 예는 캐나다의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의 경우이다. CPPIB의 경우 연방 재무부장관과 9개의 주정부 재무부장관들이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한다. 각 정부는 각 1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고 연방 재무부장관은 민간의 CEO를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는 캐나다 전역에서 자격이 있는 인사를 선발하여 연방정부의 재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연방정부의 재무부장관은 주정부의 재무부장관과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이들을 수탁자로 선임한다. 이사들의 임기는 3년이고, 3번 연임할 수 있으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나. 수탁자의 역할

수탁자는 기금운용 관련 정책과 전략을 검토·승인하고, 기금운용자를 감시하며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탁자는 기금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수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허용 한도의 위험 내에서 기금운용수익을 극대화하고 급여를 주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탁자는 자산배분을 결정하고 자산운용 책임자를 선정한다. 자산운용은

민간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하기도 하고 자체 운용조직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아웃소싱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수탁자는 매일(continuously) 기금운용 관련 업무에 전념할 필요는 없으나 정기적으로(regularly) 기금관련 업무를 볼 수 있으면 된다. 일상적인 기금운용업무는 수탁자에게 책임을 지며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는 기금운용자에게 위임하면 된다. 즉, 지배(governing)기능과 운영(managing)기능이 분명하게 구분되게 하고, 각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금운용자는 승인된 정책 및 예산 하에서 부여된 모든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즉, 이들은 정책·전략 및 연간 사업계획을 수탁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고 동시에 실행을 담당한다.

또한 기금운용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목표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수탁자의 역할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탁자는 투자위원회·보상위원회 등의 하부위원회(sub-committee)를 구성하기도 하며, 이 하부위원회에는 수탁자 멤버들이 참여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공적연금기금운용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을 두 개의 시스템 - 즉, the Canada Pension Plan(CPP)과 CPP Investment Board(CPIB) - 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CPP는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급여의 지급과 보험료의 징수 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반면 CPIB는 CPP의 기금을 투자하는 업무를 책임지며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별도의 이사회와 전문 경영자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CPP의 목적을 두 가지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첫째는 수탁자가 연금 기여자와 수혜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수탁자가 적절한 위험한도 내에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운용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목표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수탁자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정보공개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책임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수탁자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일반 회사 이사회의 경우 그 책임성의 대상이 주주임이 분명하나,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책임성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의 경우 수탁자의 책임성의 대상이 연금 가입자, 연금수혜자, 납세자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심지어 수탁자 구성원 개개인은 자신이 임명된 경로에 따라 정부 혹은 자신을 추천한 특정 집단을 일차적인 책임성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CPIB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연금기여자와 연금수혜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수탁자의 책임성의 대상이 이들



공적연금의 경우 수탁자의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정보공개 중요성은 민간연금 및 일반 회사의 경우보다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연금가입자와 연금수혜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수탁자의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민간연금 및 일반 회사의 경우보다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국회를 수탁자의 책임성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촉진하기도 한다. 국회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기금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auditing)와 보관(custody)기능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책임성의 대상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및 내부통제에 있어서도 매우 선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투자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은 실제적·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CPPIB와 연금가입자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적연금 및 임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회계 기업을 선정하여 CPPIB의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엄정한 과정을 통해 외부의 보관인(custodian)을 선정하는 등의 장치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CPPIB는 정보공개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매우 광범위한 대상에게 배포하는데 보고서에는 기금운영과 관련된 매우 상세한 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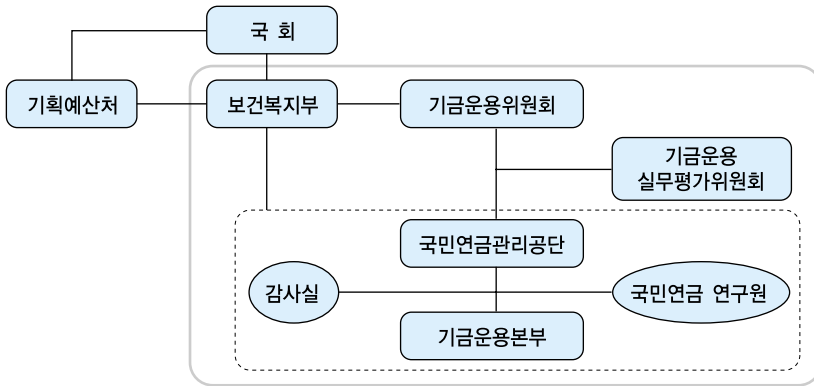
III.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평가

1. 현행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가. 국민연금기금 운용 지배구조의 현황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보건복지부이며,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국민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연금기금 운용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조직기구와 체계의 개관은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1] 현행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 및 계획,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등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수탁자에 해당하는 기구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어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 및 계획,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등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수탁자에 해당하는 기구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7인과 위촉 위원 14인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부부처 공무원(6인)⁷⁾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위촉위원은 사용자 대표 3인⁸⁾, 근로자대표 3인⁹⁾, 지역자입자 대표 6인¹⁰⁾, 관계전문가 2인¹¹⁾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기금운용위원회 내에 설치되어 있다.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자산의 구성 및 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운용 성과의 측정,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평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다.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역시 당연직 위원 7인과 위촉위원 14인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위촉 위원은 이해관계자 대표로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소속된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과 관계전문가 2인¹²⁾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설치되어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연금기금의 실제 운용을 담당하므로 기금운용자(fund manager)에 해

7)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농림부 차관, 산업자원부 차관, 노동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8) 경총 부회장, 중기협 부회장, 전경련 부회장
 9) 한국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사무총장, 금융노련 위원장
 10) 농협 대표이사, 수협 부회장,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음식업 중앙회 회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 참여연대 시민대표
 11) 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12) 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실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면 현행의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된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당연직 이사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금이사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후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 장관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한편 국회는 매년 연간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운용실적에 대한 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한다¹³⁾. 또한 감사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국민연금 사업 및 기금 운용에 관여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살펴보자. 기획예산처가 그 해의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의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기준에 의거하여 연간 기금운용지침을 만들어 이 지침을 기금운용위원회에 회부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회부된 지침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다시 보건복지부는 의결된 지침에 따라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금운용본부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월간 및 일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기금을 운용한다. 연간 기금운용 성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구센터 및 외부평가기관에 의하여 1차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된다.

나. 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 지배구조의 평가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는 선진국 연기금들이 대부분 택하고 있는 것과 의견상은 유사하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허부 운용조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기금운용본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면 현행의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국민연금 운용 관련 기구간의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Fama and Jensen(1983)의 기준에 입각하여 지배구조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관리기능(발의 및 실행)은 자산운용자(fund manager)에게, 의사결정 통제기능(승인 및 감시)은 수탁자(board of trustee)에게 구분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분해하여 보면 발의(initiation)는 보건복지부, 승인(ratification)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 실행(implementation)은 기금운용본부, 감시(monitoring)는 국회,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즉, 의사결정 관리기능(발의 및 실행)은 보건복지부(발의)와 기금운용본부(실행)로 분리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통제기능(승인 및 감시)은 기금운용위원회, 국회, 감사원, 보건복지부로 혼재되어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

13)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최고·최종 심의의결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니라 국회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은 원종욱·석재은·문승주(2002)를 참조

조로 되어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사결정 관리(발의) 기능과 의사결정 통제(감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업무의 제안자 스스로 업무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매우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발의 단계에서부터 보건복지부가 관장함으로써 기금운용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결정하고 있는 구조이다.

〈표 1〉 Fama and Jensen(1983)의 기준에 의한 업무과정 분해

	현행 제도
발의(initiation)	보건복지부
승인(ratification)	기금운용위원회·국회
실행(implementation)	기금운용본부
감시(monitring)	국회, 감사원, 보건복지부

하부 운용집행기구인 기금운용본부를 보자. 원래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운용조직이 있어야 하며, 운용조직의 대표를 위원회가 임명하고 위원회가 정해준 자산배분의 틀 안에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나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의 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이사장의 추천으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기금운용본부장은 공단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기금운용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간에 역할 분담과 임무가 모호하여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결정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 연구센터 등이 보건복지부를 지원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에는 세 가지 서로 연관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조직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 기금운용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¹⁴⁾. 결국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금운용위원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에 바쁘다 보니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에서 상정한 안건을 통과해주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4) 매번 회의때마다 참석자가 겨우 과반을 넘는 수준이며 참석했다 하더라도 바쁜 일정으로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기금운용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은 주로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신설에 관한 것이다.

셋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인 근로자, 자영업자, 사용자, 정부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대표성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반면에, 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보완하지는 못한 채 중층적인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성만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이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 확보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2.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 평가

가.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기금운용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은 주로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신설에 관한 것이다. 우선, 기금운용회의의 위원 수를 현재의 21명에서 9명으로 대폭 줄이고 그 중 1명은 상근위원으로 한다. 또한 위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하고 정부위원 수는 줄여 3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민간위원은 경제·금융 또는 복지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둘째, 기금운용위원회와는 별도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총리실 산하에 두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정책 방향을 협의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위원 후보를 최종 심의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셋째,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그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는 내용이다.

이 개편안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수의 감소, 정부 위원 수의 제한, 민간 위원장의 선임, 상근위원 선임 등 바람직한 요소도 담고 있으나¹⁵⁾ 근본적인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총리실 산하에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신설하는 문제이다. 동 협의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관의 비율이 4대 6이고, 4명의 민간위원들도 모두 관에서 지명하거나 추천된다. 구체적인 구성을 보면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그 밖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경제·금융 및 복지관계전문가 각 1인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관해서 정책협의권과 기금운용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위원장 포함)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권과 정부를 대변하는 연금정책협의회가 정책

15) 그러나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권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수립하는 투자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서 정치권 및 정부로부터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위원 6명(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 포함)에 대한 후보 심의 및 최종추천권을 연금정책협의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의 경우 먼저 민·관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일정 배수로 후보자들이 추천되지만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은 연금정책협의회이다. 민·관동수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지역가입단체·시민단체 대표가 포함된다. 다른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결국 정부위원 3인과 연금정책협의회가 추천한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서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여 형식상으로는 민간주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및 정권의 대리인인 연금정책협의회가 결정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¹⁶⁾.

둘째, 국민연금정책협의회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라고는 하지만 그 구성 및 소관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 본연의 목적인 가입자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경제정책적 측면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운용 체계가 국민연금정책협의회-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심의위원회-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전문위원회-사무국-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되어 지나치게 다층적 구조를 가짐으로써 기금정책 및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다¹⁷⁾.

셋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신설하는 문제이다. 이는 자칫 국민연금기금의 조직을 옥상옥의 구조로 만들어 그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관료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정부안에 의하면 전문위원회를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구로 상정하고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할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전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옥상옥의 비효율적 구조를 유지하는 셈이다.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보더라도 이사회 밑에 투자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각종 하부 위원회가 있지만 모두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사무국에 관련 정부부처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는 투자정책의 수립,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업무 등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조직을 옥상옥의 구조로 만들어 그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관료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16) 이러한 선임절차를 민간기업에서 등기임원을 선임하는 절차와 비교하면 그 부적절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대형 상장 또는 등 록법인인 등기임원을 선임할 때 최소 50%가 사외이사인 이사회(사 내이사 선임의 경우) 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의 경우)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의해 선임된다.

17) 이 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2004)에도 지적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투자정책의 수립,
기금운용의 성과 평가 및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업무
등은 기금운용위원들이
모두 직접 할 필요가 없다.

다. 우선 투자정책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되므로 스스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는 보관기관(custodian)으로부터 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내부 또는 외부 평가기관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든지 재검토를 요구하면 된다. 감사는 기금운용본부에 설치된 내부 감사부서와 준법감시인이 수행토록 하고 이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책임을 지도록 설계하면 된다. 결국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투자정책의 수립, 기금운용의 성과 평가 및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업무 등은 기금운용위원들이 모두 직접 할 필요가 없으며 기금 운용의 집행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주도하에 안이 상정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면 된다.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보더라도 기금운용본부가 이사회와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비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에게 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관료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넷째, 정부안의 국민연금 운용관련 개편안에 의한 업무를 Fama and Jensen(1983)의 기준으로 분해해 보면 발의는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 실행은 기금운용본부, 감사는 기금운용위원회 및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의사결정 관리기능이 기금운용위원회(발의)와 기금운용본부(실행)로 분리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통과기능을 자산운용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의사결정 관리기능인 발의 기능을 실행 주체인 기금운용본부에 이전하고, 의사결정 통제기능은 자산운용위원회 및 국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하부 운용집행기구에 대한 개선방안이 들어 있지 않고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없어 문제점이 많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건복지상임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개정안에는 기금운용위원회와 하부 집행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기금운용위원수를 정부안보다는 4명 많은 12명으로 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정부 대표와 민간 대표가 반반씩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부 운용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공단 내에 그대로 두되 부이사장 1명, 기금이사 3명으로 임원진을 대폭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유시민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사실상의 정부 대표와 민간 대표를 6명씩 동일 수로

구성하고 기금운용본부 임원진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의견상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 대표가 여전히 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점하고 있어 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하부 운용집행기구를 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관리공단내에 기금운용본부를 그대로 두고 임원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서 사실상 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운용의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고 있어 정부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유시민안의 국민연금 운용관련 개편안에 의한 업무를 Fama and Jensen(1983)의 기준으로 분해해 보면 발의는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 실행은 기금운용본부, 감시는 기금운용위원회 및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의사결정 관리기능이 기금운용위원회(발의)와 기금운용본부(실행)로 분리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통제기능을 자산운용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의사결정 관리기능인 발의 기능을 실행 주체인 기금운용본부에 이전하고, 의사결정 통제기능은 자산운용위원회 및 국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시민안은
하부 운용집행기구를
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용의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현애자안은 국민연금법에서 기금운용의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특별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보험료 징수, 급여지급, 복지부문 투자, 대여사업 등에 국한시키고 여유자금의 운용은 별도로 설립되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투자전문회사에 전담시키자는 것이다. 즉,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은 행정위원회로 하여 독립성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산하 집행기구로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민간 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위원회 밑에 투자정책국, 성과평가국, 준법감시국, 사무국을 두며, 운용공사의 사장과 임원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기금운용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현애자안은 여러 안들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지배구조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구성도 민간 대표를 다수로 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산하의 독립된 집행기구를 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 밑에 투자정책국, 사무국 등 상당 규모의 상시



현애자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정책의 수립뿐 아니라
 중요한 운용집행기능까지
 간여하는 반면, 산하의
 운용공사는 단순한
 집행기구로 전락하여
 그기능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조직을 돕으로써 위원회가 운용정책의 수립뿐 아니라 중요한 운용집행기능까지 간여하는 반면, 산하의 운용공사는 단순한 집행기구로 전락하여 그 기능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애자안 대로 할 경우 권한과 조직이 비대해진 기금운용위원회를 또다시 감시, 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현애자안을 Fama and Jensen(1983)의 기준으로 분해해보면 국민연금운용관련 개편안에 의한 업무를 발의(initiation)는 자산운용위원회, 승인(ratification)은 자산운용위원회 및 국회, 실행(implementation)은 기금운용공사의 집행기구, 감시(monitoring)는 자산운용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의사결정 관리기능이 자산운용위원회(발의)와 집행기구(실행)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통제기능 또한 자산운용위원회가 대부분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자산운용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의사결정 관리기능인 발의 기능을 실행 주체인 집행기관에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한나라당안

한나라당안은 현애자안과 유사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보험료 징수, 급여 지급, 복지부문 투자, 대여사업 등에 국한시키고 여유자금의 운용은 별도로 설립되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투자전문회사에 전담시키자는 것이다. 즉, 민간위원의 비중이 4분의 3을 넘도록 최고 의결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추천하며, 위원회 산하에 집행기구로 무자본특수법인 형태의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은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안은 현애자안과 매우 유사하여 문제점도 유사하다. 한나라당안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자칫 상위 기관인 자산운용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한편 한나라당안은 투자전문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자산운용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투자전문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다. 투자전문회사의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위원회 운용위원들이 투자전문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¹⁸⁾.

한나라당안을 Fama and Jensen(1983)의 기준으로 분해해 보면 국민연금운용 관련 개편안에 의한 업무를 발의(initiation)는 자산운용위원회, 승인(ratification)은 자산운용위원회 및 국회, 실행(implementation)은 투자전문회사의 집행기구, 감시(monitoring)는 자산운용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의사결정 관리기능이 자산운용위원회(발의)와 집행기구(실행)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통제기능 또

18) 예컨대 투자전문회사와 대규모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은 투자전문회사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자산운용위원회가 대부분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자산운용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의사결정 관리기능인 발의 기능을 실행 주체인 집행기관에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자칫
상위 기관인 자산운용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표 2〉 현행 제도 및 각 법안의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유시민안	현애지안	한나라당
기금운용위원회의 소속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독립 행정위원회	독립 행정위원회
기금운용공사의 소속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기금운용분부를 둠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기금운용분부를 둠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기금운용분부를 둠	기금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주요 정책의 기안 및 품의	복지부	위원회 산하 사무국	위원회 산하 사무국	위원회 산하	투자전문회사
위원장 상근 여부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사무국 등	
위원장 외 상임위원 수	0명	1명	1명	상근 3명	2명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추천/임명권자	복지부장관이 겸임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추천 대통령이 임명	기금운용위원추천위 추천 대통령이 임명	기금운용위원추천위 추천 대통령이 임명	추천소위원회 추천 대통령이 임명
공사 사장의 추천/임명권자	(공단내 기금운용본부장) 공단 이사장이 추천 복지부장관이 임명	(공단내 기금운용본부장) 공단 이사장이 추천 복지부 장관이 임명	(공단내 기금운용본부장) 기금이사추천위원회 추천 복지부 장관이 임명	기금운용위원추천위 추천 기금운용위원장이 임명	추천소위원회 복수 추천 →의장의 재청 대통령이 임명
공사 사장 외 공사 임원의 추천/임명권자	공단이사장 추천 복지부장관 임명	기금운용본부장 외 임원 없음	(공단내 기금이사 3인) 상동	상동	
비고		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국이 핵심 역할	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국이 핵심 역할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 등 4개국이 핵심 역할	



지배구조 개편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이다. 우선 정부부처 및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IV. 바람직한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모색

1. 지배구조 개편의 원칙과 방향

제Ⅱ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공적연금기금운용의 선진적인 지배구조가 갖추어야 할 요소가 독립성, 효율성, 투명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Ⅲ장에서 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및 여러 개편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지만 모두 독립성, 효율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효율성 및 투명성이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가. 독립성

지배구조 개편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이다. 우선 정부부처 및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거나 연금가입자들의 이익과 무관한 정책목표의 달성 수단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이 정부 부처 및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및 정권은 경기부양을 포함하여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금 적립금을 동원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사용한 예도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가 비록 선의에 의한 것이라도 연금가입자의 목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치가 또는 관료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기금운용은 연금가입자의 목표인 운용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탈하여 정부 및 정권의 정치적·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운용성과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의 재정이 어렵게 되고 기금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면 이러한 유인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 연금가입자의 이익과 운용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은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 이익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단체,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기금 운용에 영향을 미치려 할 유인이 존재한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해 가입자 전체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배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

운용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일반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이다. 국민

연금기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최대 투자자로서,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기금 적립금의 누적에 따라 지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이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그 의결권 행사는 기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이 정부 및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면 의결권 행사가 기금가치 극대화가 아니라 정부 및 이익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정부 혹은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기금가치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⁹⁾.

독립성의 관점에서 볼 때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 및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운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성과 제고와는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적·정치적 영향력 행사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가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일부인 이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금의 운용성과의 제고와 배치되는 특정 이익집단만의 이익 추구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효율성

지배구조 설계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은 효율성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성이 명료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성과 평가 및 보상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기금운용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목적은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연금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급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투자수익을 내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이 연금의 안정성(benefit security)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목적은 기금 수익성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1차 목적이 연금의 안정성 확보라면 2차적 목적은 기금수익성의 극대화여야 한다.

기금운용관련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성이 명료하게 부여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Fama and Jensen(1983)의 제안에 따르면 의사결정 관리기능(발의 및 실행)은 기금운용자(fund manager)에게, 의사결정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성이 명료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성과 평가 및 보상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19)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이외에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별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상한의 설정, 의결권 행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이 그것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
이 사전적으로 명문화되고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자산구성 및 투자내역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도 정기적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통제기능(승인 및 감시)은 수탁자에게 구분하여 부여하고, 수탁자가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익에 입각하여 기금운용자를 감시·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 즉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수탁자인 기금운용위원회에게 의사결정 통제기능(발의 및 실행)을, 하부의 집행기구인 운용조직(기금운용자)에게 의사결정 관리기능(발의 및 실행)을 분리하여 부여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집행기구인 운용조직을 감시·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명문화된 역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운용위험을 통제하되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구가 각 분야별로 유능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도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3) 투명성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설계시 세 번째 고려해야 할 원칙은 투명성이다.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와는 달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특성상 외부통제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고 내부통제 메커니즘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는 일반기업에서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 이 사전적으로 명문화되고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자산구성 및 투자내역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도 정기적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대안의 모색

가.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조직의 소속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특정 정부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제도와 기금운용의 감독기관이 이원화됨을 의미한다. 즉 '기금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고, 기금운용 이외 연금보험료의 징수,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 사업 수행 관련 여타 기능은 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담당하는 것이다.

기금운용을 분리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기금자산의 운용과 연금부채 업무의 효율적

20)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 및 개편안에 제시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안은 모두 이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연계의 약화 가능성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행정위원회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현행의 이중적 위계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집행조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법인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이 독립법인은 완전 민영법인보다는 무자본 특수법인의 공사 형태(가칭 기금운용공사)가 바람직할 것이다.

나.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독립성,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위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이 최소한 과반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은 가입자 대표가 최소한 50%이상 차지하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에서 단일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용집행조직인 기금운용공사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예컨대 기금운용공사와 대규모 자산운용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관계자는 기금운용공사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 운용위원 개개인들은 기금운용공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위원회 운용위원들의 독립성 요건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²¹⁾.

기금운용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운용위원수를 현재의 21명에서 그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고,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운용위원들이 모두 운용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연기금 운용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경제 및 금융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헌신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사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면 현행의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여러 개편안에서 제안하듯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조직을 신설하면 국민연금 운용조직을 옥상옥의 구조로 만들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운용위원회를 관료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투자정책, 평가보상, 위험관리, 의결권 행사 등) 기금운용위원들로 구성된 하부 소위원회가 기금운용위원회와 위원장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다²²⁾. 전문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독립성,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위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이 최소한 과반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1)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상에 나오는 일반 기업들의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22) 물론 이와 같이 되기 위한 전제는 전문성을 갖추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에 상당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인사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할 위원들로 구성한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사무적인 업무는 산하 기금운용공사에서 수행하면 되므로 구태여 비전문가인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즉, 기금운용위원회는 운용조직 관계사안에 대한 의결은 운용조직을 배재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의안과 기초자료는 전혀 스스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몇몇 개편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에 대하여 살펴보자. 기금운용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입자, 수급자,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고 상호 이해충돌을 조정하여 최적의 투자정책을 도출해 낸 후, 이것을 하부의 운용 집행기구가 실행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일매일(continuously)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운용위원들이 반드시 상근일 필요는 없으며 정기·부정기 회의를 통해(regularly)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따라서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와 같이 2명 정도의 집행기구 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조직과 기금운용위원회 양 조직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는 기금운용위원장이 집행기구인 운용공사의 사장을 겸임할지의 여부이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위원장은 정책결정이 주업무이므로 일상적인 업무는 많지 않고, 위원장과 사장을 분리할 경우 위원회와 집행기구간 상호갈등의 소지가 크므로 위원장이 공사 사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²³⁾.

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기금운용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 성과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다. 즉, 기금운용위원회는 운용목표와 정책, 기금운용에 관련된 각 주체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운용목표에 근거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결정한다. 또한 하부 운용조직인 기금운용공사를 관리·감독하게 되는데, 이에는 기금운용 공사의 대표를 선발하고 운용계획의 승인,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수립, 정기적으로 운용성과를 보고받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최종적인 운용책임자로서 매년의 운용성과를 이해당사자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우선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유자인 연금가입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가져야 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23) 이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이다. 위원장과 공사 사장을 굳이 따로 둔다면 위원장을 비상근으로 하고 상임위원중 1명이 공사사장을 겸임하는 형태가 양 조직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fiduciary)로서의 수탁의무(fiduciary duty)를 지고 있다는 점 역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즉,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오직 연금가입자의 최선의 이익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충성 의무),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마땅히 기울어야 할 주의의 정도를 법규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감시 및 평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감시 및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외에도 외부의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활동(자산배분, 위험관리, 성과평가, 회계, 공시, 운용비용 집행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PF**

참고문헌

- 김연명,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금포럼』 여름호, 2002.
- 김우찬, 「연기금의 의결권행사는 지배구조 개선이 전제되어야」, cgcg 연구자료, 2004.
- 우재룡·임웅기·박종학,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개선방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중장기 투자정책』, 국민연금 중장기 투자정책 위원회, 2002.
- 원종욱·석재은·문승주,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체계의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 중장기 투자정책』, 국민연금 중장기 투자정책 위원회, 2002.
- 조성훈·고광수·박창욱,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04-04, 2004.
- 한성윤·임웅기·김용하·김연명,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2000.
- Fama, Eugene F. and Michael C. Jense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1983, pp. 301~325.
- Hess, David and Gregorio Impavido, "Governance of Public Pension Funds: Lessons from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Evide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110, 2003.



- Iglesias, Augusto and Robert J. Palacios, "Managing Public Pension Reverses Part I : Evidence from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3, Washington D.C World Bank, 2000.
- Impavido, Gregorio, "On the Governance of Public Pension Fund Management," World Bank Working Paper 2878, 2002.
- MacNaughton, John, "Principles and Practices of Governance for Public Pension Funds," Paper presented at the 2001 World Bank Public Pension Fund Management Conference, 2001.
- Mitchell, Olivia S. and Pring-Lung Hsin, "Public Sector Pension Governance and Performance," *The Economist of Pensions: Principles, Policie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edited) by Salvador Valdes-Prie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Palacios, Robert, "Managing Public Pension Reserves Part II : Lessons from Five Recent OECD Initiative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219, World Bank, 2002.
- Romano, Roberta, "Public Pension Fund Activism in Corporate Governance Reconsidered," *Columbia Law Review* 93, pp. 795~853, 1993.
- Useem, Michael and David Hess, "Governance and Investments of Public Pensions," *Pensions in Public Sector*, (edited) by Olivia S. Mitchell and Edwin C. Hustead,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1.
- Useem, Michael and Olivia S. Mitchell, "Holders of the Purse Strings: Governance and Performance of Public Retirement Systems," *Social Science Quarterly* 81, 2000, pp. 489~506.
- Yermaeak, David, "Higher Market Valuation of Companies with a Small Board of Directo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0, pp. 185~211.
- Yang, Tongxuan and Olivia S. Mitchell, "Public Pension Governance, Funding, and Performance: A Longitudinal Appraisal," unpublished manuscript, 2004.

특 집



2006 세계개편안

■ 세계개편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중점
김낙회 / 재경부 조세정책과장

■ 세계개편안의 평가

-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
박정수 /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세원투명성 제고의 계기로 삼아야
전병목 /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2006년 세계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금년도 세계개편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는 기획 특집을 마련하였다. 『정책흐름』란에는 2006년도 세계개편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다. <편집자 주>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중점



김낙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정부는 지난 8월 22일 2006년도 세계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세계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세계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I. 세계개편 배경

우리 경제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하에서도 전반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세수여건도 직전 3년 평균 진도비에 비하여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2006년 세입예산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수감소가 큰 세법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번 세계개편안은 2006년도 하반기 거시경제정책 지원 및 세계선진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금년도 세계개편(안)은 2대 목표, 5대 분야로 구성

첫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은 i)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ii)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2대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둘째 목표인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세제의 경쟁력 제고는 i)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ii)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iii) 조세체계의 합리화·선진화의 3대분야로 추진하고자 한다.

II. 주요 내용

1.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정부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R&D 투자와 외국인투자,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소

비세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하였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세제를 정비하였으며, 이밖에 기업활동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세제개편도 이러한 차원에서 설비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일몰연장,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연구개발 설비투자금액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 연장,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중산·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이번 세제개편은 중산·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미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영유아교육비 공제한도 및 6세 이하 자녀공제 확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첫째,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저소득근로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구이면서, 18세 미만 아동을 2인 이상 부양을 하고,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도입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1인가구 100만원, 2인가구 50만원)를 폐지하고

대신에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00만원씩 추가 공제함으로써 가족친화적(family friendly)인 세제가 되도록 보완하였다.

셋째,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현재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유치원, 음악, 미술학원 등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던 것을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넷째, 고령화시대에 대응 노인복지 지원 강화

정부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맞추어 근로자가 부담한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역모기지 대출금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금년도 세제개편안에서는 공평과세와 세제·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첫째,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우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를 확대하여 범칙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조세탈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조세탈루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고 의료비 공제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병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을 추진키로 하였다.

둘째, 사후관리 및 사회적 감시 기능 강화

모든 세목에 대하여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한 신고 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40%)하였고,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탈세제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제보 대상 탈세 금액 : 5억원 → 1억원)하는 내용이 금번 세계개편안에 포함되었다.

셋째,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 완화 장치 마련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를 확대하는 등 영세자영업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병행 추진하였다.

4.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 정비

현재 비과세 · 감면제도는 총 226개, 19.9조원(총국세 대비 14.5%)으로 근로소득 특별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2003년 이후 총국세 대비 감면세액 비중이 14%대로 상승하였다.

(단위 : 조원,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 비과세 · 감면	13.7	14.7	17.5	18.3	19.9
• 관련국세	88.6	96.4	107.5	110.2	118.1
• 국세대비 비중	13.4	13.3	14.0	14.0	14.5

비과세 · 감면제도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정비

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도 또는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는 축소 · 폐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R&D · 설비투자 촉진제도 및 근로자 · 농어민 ·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제도는 연장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62개 비과세 · 감면제도를 정비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중 3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였다. 특히, 20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 중 28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27개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하였으며, 일몰이 없는 7개 제도를 2006년에 폐지 또는 축소하였다.

5. 조세체계의 합리화 · 선진화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톤세제도 도입, 기업구조조정세제, 정비,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의 조세회피방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과세 및 국제조세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였다. 또한 유류간 상대가격비를 친환경 구조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전산화하여 보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금년도 세계개편안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납세협력비용제고와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업경비관련 규정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기타소득금액을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등 기타소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밖에 복잡한 소득구분을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Ⅲ. 맺음말

금년 세제개편안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세수중립적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정도 이미 거쳤다. 앞으로 세제개편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9월말 국회에 제출하여 12월초 국회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이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선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확정시점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KIPF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올해도 예년과 같이 부분적인 세계개편이 이루어질 모양이다. 지난 8월 21일 세계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편안이 발표되자 언론에서는 “윗돌 빼 아랫돌 괴자는 세계개편, 맞벌이 늘고 다자녀 가구 줄어든다, 애 없는 고통에 세금고통까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뽑았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올해 세계개편안의 핵심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꼽는다. 본고에서는 2006 세계개편안의 내용을 점검해보고 현안 이슈에 대해 평가해보기로 한다.

I. 2006 세계개편안의 특징

먼저 세계개편안 중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내년부터 독신이나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부양가족 수가 본인을 포함해 1~2명인 경우 1인당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50만~100만원을 추가공제하여 세금혜택을 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이 독신가구는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 2인가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에서 650만원, 4명인 가구는 6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 대부분이 소수공제자 대상이어서 이 제도의 폐지로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많은 수의 맞벌이가구와 자녀가 없는 홑벌이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둘째,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일정액의 현금을 보조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되어 2008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80만원까지의 근로장

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EITC를 내년부터 도입,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면서 무주택이고 일반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2008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기로 했다. EITC의 1단계 지원대상은 31만 가구, 소요 예산은 연간 1,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셋째, 의사·변호사·회계사·룸싸롱업주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과약을 위해 개인계좌와 분리된 사업용계좌가 도입되고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교정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과약 강화를 위해서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수입과약을 위해 12월부터 2년간 미용, 건강 증진 목적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입건수 및 수입료 등 수입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넷째, FTA협정 확대, DDA협상 등 국제무역 환경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본관세율 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해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탄, 동광 등을 무세화하는 등 기초원자재 310개 품목의 세부담을 낮추고 영화용 필름과 설탕 등의 관세율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개편에 따른 근로자 세부담과 관련,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로 5,500억원, 스톡옵션 과세특례 폐지로 300억원이 증가하나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신설로 2,700억원이 가량 감소하고 취학전 자녀 교육비, 혼인·장례비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확대, 의료 공제범위 확대 등으로 2,500억원, EITC 도입으로 1,500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900억원이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EITC의 혜택의 상당수가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 근로

자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I. 평가

1. 전반적 평가

2006년 세계개편은 참여정부 들어 세번째 마련된 개편안이다. 지난 2003년 개편안이 마련될 때 중장기조세 정책방향도 함께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중장기 청사진과 2006년 세계개편안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 2003년에 발표된 청사진이 향후 우리나라 세제가 단계적으로 변모하는 로드맵이라고 할 때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전략이 2006 세계개편안에 녹아 있어야 하나 경기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 물론 비교세감면의 지속 정비, 자영업자 소득과약을 위한 과세인프라의 구축,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세원관리 혁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목적세의 정비 등 분권화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의 구현을 위한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몰연장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몰에 따른 폐지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야 하지만 이 역시 이번 세계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매년 세계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개편이 정부의 살림살이에 충당하기 위한 세금을 걷는 틀을 바꾸고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경제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고는 하지만 납세자의 순응비용을 생각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감안하면 지금 같은 매년의 세계개편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올해 세계개편안은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

세·법인세 감면제도 신설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신설 등을 통한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지원 그리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세계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국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EITC의 단계적 도입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화에 보다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분배를 강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어 형평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감면 및 비과세제도 혁파나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세제와 세정은 동전의 양면 또는 수레의 양바퀴라는 점을 인식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과표양성화를 꾸준히 추진하려는 의지도 분명히 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현금거래 노출 강화,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등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세무조사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등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조세조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동가능한 세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세경쟁도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세율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장기 세계개편 청사진에서 소득세제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과 근로소득공제제도 개편에 그치고 있는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인하나 자본소득양도차익과세 등

도 미뤄 소득세제의 포괄화 방향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직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의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면서 학계에서 먼저 EITC 도입을 주장해왔다. 경제학자는 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정부안은 현행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ITC를 통해 차상위 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안전망체제를 현행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중구조에서 EITC를 추가한 3중구조로 확충하여 복지정책을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형에서 근로연계형으로 개편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EITC는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소득과약이 중요하다. 도입 초기에는 소득과약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적용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단계에서 EITC 적용이 어려우므로 소득과약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적용대상을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채택하기로 한 점이나 차상위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아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과세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당장은 과세미달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에 그리고 정부가 사업자확대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2013년부터는 사업자과세정보수집시스템의 성과에 동 제도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을 동시에 수혜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모니터링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동 제도 도입의 성과는 노력하는 자에게 복지혜택도 차별적으로 간다는 원칙의 견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3. 세원투명성 제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는 영원한 세정당국의 미션이다. 이번 세계개편에서는 첫째,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를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현금대체 결제수단을 확대하고 둘째,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며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 근거과세 확대를 위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적용시 기장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넷째,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섯째, 거래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세원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수의무 면제가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거래상대방의 세금탈루 빌미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탈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별 간이과세 여부 판단 및 적용배제업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현재 사업장단위 과세체계운영이 납세협력비용 증대,

국제적 기준과의 상이, 과세형평성 등의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세원관리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결론

정부는 적자재정을 걱정하면서도 세금 감면을 줄이는 일에는 소극적으로, 올해 말로 끝나는 55개 감면제도 중 15개 제도만 폐지하기로 했다. 그나마 폐지 대상 중 자경농민 농지양도세 면제제도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굵직한 내용은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3년 기준으로 미국(18.6%)과 유사한 20.4%로, 일본의 15.9%에 비교하면 작은 정부라고 하기는 어렵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및 복지비 등의 지출수준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살림사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는 비전 2030을 발표해 2030년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선진한국을 이루겠다는 밑그림을 설정했다. 2010년까지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고치는 데 주력하여 추가적인 국민부담 없이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를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향후 GDP의 2%가 넘는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지출 중 발상의 전환을 하면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세원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세부담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조세체계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KIPF

세원투명성 제고의 계기로 삼아야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byungj@kipf.re.kr)

2006년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 제시된 방안들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문제점인 좁은 과세기반, 과도한 조세지출, 그리고 조세제도의 효율화 및 단순화 등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I. 서론

정부의 200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세제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로 17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주된 내용은 4대 개편과제라 할 수 있는 기본관세율 개편, 근로장려세제 도입,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 제시된 방안들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인 좁은 과세기반, 과도한 조세지출, 그리고 조세제도의 효율화 및 단순화 등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좁은 과세기반의 문제는 특정 부문에 조세부담을 집중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세부담의 형평성 및 그로

인한 조세저항 궁극적으로 세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외국에 비해 그리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 및 소득재분배효과가 낮은 이유이다. 이런 현실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세율수준을 높일 경우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노동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게 된다. 따라서 과세기반의 충실화가 세율 변경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좁은 과세기반의 원인은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낮은 소득과약을,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원 투명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 축소의 정도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조세지출 문제는 재정수요 조달이라는 기본목적에서 벗어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이용한 결과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과세기반의 축소로 나

타지만 동시에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조세지출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혹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 조세부과로 인해 나타나는 형평성문제, 납세순응비용 등 납세자 편리성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2006년 세제개편안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해 본다.

II. 200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1. 총괄 평가

우선 2006년 세제개편안은 세원투명성 제고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큰 제도적 진전을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원투명성 제고는 소득세의 좁은 과세기반문제를 해결하고 재분배기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파악이 어려웠던 부문, 즉 현금유통이 많은 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파악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간접적인 소득감시망 형성을 제안하고 있어 향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거래파악을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무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간접적인 소득감시망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용계좌제도 도입,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확대,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자료제공범위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기능은 조세제도의 주 목적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복지제도가 근로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제도와 연계한 제도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조세행정에서 제외되어 온 저소득층의 소득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조세 및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대부분 납세자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며, 정부부문 즉, 조세행정부문의 개혁이 없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 납세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다양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자료의 공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세부문의 경우, 과세기반의 축소와 세부담의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편적 공제제도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실질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점은 아쉽다.

높은 조세지출로 인한 비효율성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6년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 중 15개 폐지, 12개 감면축소 및 일몰연장, 28개는 단순연장하였다. 또한 일몰이 없는 32개 감면 항목은 일몰을 신설하고 5개 감면 폭 축소, 2개는 폐지하였다. 이러한 정비기준은 성장잠재력과 관련있는 R&D, 설비투자, 구조조정 촉진제도와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존속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분야와 경제적 약자 지원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몰연장의 기준이 제도의 효율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

원제도가 일몰연장의 기준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제도의 이용대상 및 지원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조세감면 통제구도에서 벗어나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제어 제도가 불분명하다. 2006년 부처감면건의(85개)와 2006년 7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과세·감면 확대와 관련한 의원입법안(96개)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다면 세수감소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어방안이 필요하다.

2. 세부 주제별 평가

우선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나 제도의 실효성, 납세자의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기대효과가 높으나 사업용계좌제도의 의무화는 실행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자료제공범위 확대,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등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납세순응비용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동 방안들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과 상충될 수 있으나 과세 형평성이라는 공익과의 상호조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낮은 소득과약률을 감안할 때 과세형평성이라는 공익의 추구가 우선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업용계좌제도 도입목적은 과세당국의 필요시 금융거래 내역확인을 위한 것이나 여전한 차명거래의 존재 등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무화 여부 및 실시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명거래가 많은 상태

에서 사업용계좌제도를 강제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에 비해 과세당국의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일괄조회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동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금융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금거래노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은 매우 바람직하나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은 시장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은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나 소득공제율 차등에 따른 시장왜곡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책목표로 설정한 학생,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의 직불(체크)카드 발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의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이용실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서비스 차이를 고려한 대체 가능성, 현금영수증과의 차별화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부담에 민감한 기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계층의 직불카드로의 대체로 추가적 세원파악보다 세수감소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납세자 부담증대 및 과세기관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의 세정 투명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국민신뢰도 향상 측면의 조치는 미흡하다. 조세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과정 그리고 사후처리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방안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납세자부담 증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를 위해서는 납세관련 자료의 공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납세관련 자료의 상세한 공개를 통해 각종 제도의 효과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증가되는 납세자 부담의 당위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연구 활성화를 통해 조세행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과약 강화 방안은 과세형평성 및 국민들의 조세제도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수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확대는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비보험진료에 대한 소득과약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는 소득의 3% 이상, 500만원 한도(부양가족) 등으로 인해 형평성 훼손문제는 크지 않는 대신 소득과약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와의 담합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는 금융정보, 소비자자료 등을 이용한 세무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방안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여전히 공제제도 중심의 제도변경은 단순하고 효율적인 소득세제라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급가능한 세액공제형식을 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관련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과는 연계되지 않아 향후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특화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체 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 중 어느 제도를 주된 수단으로 이용할 것인지 우선순위 설정이 요구된다.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를 억제하는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운용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전면확대시까지는 급여수준 증가 등의 제도확대를 지양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성과평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반면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와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확대는 복잡한 공제제도의 단순화 및 지원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는 세부담 축소를 통한 서민층 지원이라는 측면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히려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증대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높은 면세점으로 인해 서민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세부담만 낮추어 주게 된다. 한편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는 그 타당성 및 실효성이 약하므로 확대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에는 실질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과세구간 물가연동제 등을 통한 체계적 조정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공제제도의 유지는 제도의 복잡성, 계층별 세부담구조의 왜곡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과약을 제고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자와 동일한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과세기반을 더욱 축소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의 고려는 각종 공제제도의 축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폐지와 다자녀 추가공제로의 전환은 소득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나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세제의 면세점이 기초생계비수준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외라는 목적임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제도는 과도하게 소규모가구를 우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여 공제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소득세제는 뚜렷한 근거 없이 소규모가구를 우대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개인들의 가구규모 결정유인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표〉 가구규모별 소득세 면세점 수준의 변화

(단위: 만원, 배)

	1인 가구(A)	4인 가구(B)	A/B
2006년	1,207	1,582	0.763
세제개편안	1,107	1,632	0.678
최저생계비(2006)	502	1,405	0.357

한편 세무조사대상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무작위 추출되어야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시적인 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세무조사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고려는 조사확률, 조사방법 등의 조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정보 수집과 함께 합리적인 조사대상자 선정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감면제도의 변화 중 각종 준비금제도를 정비한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단순화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한 비용도 추가한 것은 성장잠재력 및 상생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나 항구화되고 있는 임신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제도적 종료장치가 강구되지 못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농수협예탁금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폐지하지 못한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저축관련 세금우대가 저축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농어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많은 상

태이기 때문이다.

Ⅲ. 맺음말

정부가 제시한 2006년 세제개편안은 조세정책의 오랜 목표인 세원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세제 구축을 위한 비과세·감면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환급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저소득층 지원제도로 근로유인 및 행정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세원투명성 제고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큰 제도적 진전을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비과세·감면축소도 지원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대부분 납세자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며 정부부족, 조세행정부문의 개혁이 없다는 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세는 과세기반의 축소와 세부담의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편적 공제제도를 통한 세부담 조정만 이루어지고 실질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최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 등을 감안해 볼 때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연장 기준이 제도의 효율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일몰연장의 기준이 되고 있으나, 지원제도의 이용대상 및 지원 효과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P**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

세계 6대 조세피난처의 엇갈리는 명암

아일랜드와 모나코는 밝음, 케이맨군도와 라이베리아는 불명확, 키프로스나 리히텐슈타인은 암울.

24일 미국의 외교·안보분야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인터넷판에서 이들 주요 조세피난처의 향후 장래가 이처럼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피난처를 찾음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이 전 세계적으로 11조달러를 넘어서고 미국 의회가 조세피난처들 때문에 매년 400억~700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각 지역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이 상이하다는 게 포린 폴리시의 분석이다.

지역별로 아일랜드는 창작물 저작권료에 대한 비과세라는 특이한 정책 덕에, 모나코는 전통 때문에 조세피난처로서의 전망이 밝다는 평가를 얻었다.

지난 1960년대부터 음악이나 그림, 소설 등의 저작권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아일랜드는 유명 음악인이나 소설가들을 유치할 수 있었고 아일랜드가 특허권 수입에도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점은 마이크로소프트(MS)같은 다국적 대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이 되고 있다.

이전부터 대기업 소유주나 유명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조세 회피처 노릇을 해온 모나코는 35만개의 계좌를 통해 440억달러의 자산을 유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프랑스인들에게는 조세 회피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알베르 2세 왕이 프랑스나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조세피난처로서의 향후 전망을 양호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세계 최대의 조세피난처 케이맨 군도는 미국, EU로부터 심화되고 있는 금융정보 교류 강화 압력 때문에, 라이베리아는 여전히 불안한 내정 때문에 앞일을 쉽게 점칠 수 없는 경우다.

미국과의 근접성과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중시하는 법률 등을 이용해 4만여개 회사를 통해 8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자산을 끌어들이는 케이맨 군도지만 엔론과 타이코의 세금회피에 연루됐다는 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이 가중된다는 점이 조세피난처로서 약점이 되고 있다.

라이베리아는 자국에 적을 둔 선박에는 선적 수입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선박회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지난 2003년 내전이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정치적 전망은 상당수의 선주나 선박회사들의 발걸음을 떠나 마 등지로 돌리게 하고 있다.

키프로스는 300억달러의 자산을 유치하고 있지만 이 중 많은 양을 러시아 자산이 차지한다는 점이 '역효과'를 불러온 경우다.

남키프로스가 EU에 가입하면서 EU와의 금융정보 공유



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4.25%였던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이 10~15%로 오르면서 많은 러시아 자금이 키프로스를 떠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주로 범죄자나 독재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됐었다는 점 때문에 암울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9.11 테러 이후 금융시장을 정화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리히텐슈타인은 범죄 수사에 관해서는 비밀보호 법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미국과는 사법공조조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OECD의 '블랙리스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06-08-24]

인도상 “경제특구 무제한 허용”

인도는 자국 내에서 가동되는 경제특구의 숫자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카말 나스 인도 통상장관이 밝혔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연례 경제 장관 회의에 참석중인 나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경제특구의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해 개방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경제특구 입법 당시 최대한으로 설정했던 150개의 특구를 이미 모두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경제특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내년 말까지 40억~50억달러의 투자를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1년부터 경제개방에 나선 인도는 해외투자 유치와 수출증진, 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중국의 수출진흥지역을 본뜬 경제특구의 개념을 뒤늦게 도입했다.

경제특구에 입주한 업체들은 처음 5년간 세금이 완전 면제되고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누린다. 또 다음 5년간은 재투자된 이익에 관해 50%의 면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 총 8개의 경제특구에 811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 이들 기업의 수출은 1천830억루피(40억달러)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30% 증가했다. 이들 특구의 면적은 평균 200에이커 정도이며, 총 11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08-26]

美 · 日 · EU 국가전략은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앞다투어 국가 미래 전략을 내놓고 있다.

이번 ‘비전 2030’ 처럼 길지는 않지만 각국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20년 미래상을 그려놓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고 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유일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고수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위원회가 2004년에 내놓은 ‘기술혁신전략’은 혁신인재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 3대 기본전략을 담고 있다.

또 2005년에는 조세 · 연금제도 등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실현하려는 ‘대내경제정책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0년에 세계 최고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둔 신 리스본 전략을 출범시켰다. 지식과 혁신, 투자와 고용환경 조성, 고용 창출을 3대 핵심 목표로 10대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에도 대내외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국가 ·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미래기술 확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인적자본 경쟁력 향상, 고용 창출을 보장하는 건강 · 복지, 환경 · 에너지, 비즈니스 지원 등 3개 서비스산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매일경제 2006-08-30]

中 ‘8·31 부동산정책’ 한국과 닮은꼴

31일을 맞은 중국 국무원의 표정은 한국 청와대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은 3년 전 이날, 한국은 1년 전 이날 ‘부동산 때려잡기’ 정책을 공표했지만 결과가 영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때 ‘주택공급 정책 개선 등을 위한 통지’를 내놓았다. 첫 부동산 과열 진정 대책이었다. 경제실용방(서민용 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고급주택 건설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중국은 더 이상의 대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국무원 부동산 대책 8개 방안’ ‘신(新) 대책 8개안’ ‘집값 안정대책’ ‘국무원 부동산 대책 6개 방안’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부동산시장 외자진입과 관리에 관한 의견’까지 이름과 내용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 가운데는 한국 정책과 닮은 것들도 많이 포함됐다. 양도세를 강화해 ‘중국판 세금 폭탄’도 때려보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축소해보고, 부동산 개발업자의 분양 정보나 아파트 공실률도 공개하고, 고급 빌라 건설용 토지 공급도 제한했다.

그러나 결과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과열은 반짝 누그러지는 듯했으나, 결국 집값은 정책을 조롱하곤 했다. 국영 신화통신은 최근 “주요 도시 집값이 요란한 거시경제 조정에도 불구하고 점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했다.

새로 지은 아파트 판매 가격은 6.4% 올랐다. 그나마 한국처럼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는 데 위안을 삼고 있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언제 또 급등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무원은 실질 양도차익의 엄정한 환수를 다잡하는 등 결의를 새삼 다지고 있다.

[서울신문 2006-08-31]

중국, 온실가스 덕 톡톡히 봤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위인 중국이 역설적으로 온실가스 덕을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은 30일 세계은행과 일본·독일 기업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10억 달러(약 9,500억원)를 중국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이래로 배출권과 관련한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투자 컨소시엄에는 세계은행이 조직한 5개 펀드와 독일의 도이치방크와 에너지 기업 RWE, 일본의 무역회사 미쓰이(三井), 스페인의 전력회사 엔데사 등이 참여했다. 10억 달러는 앞으로 중국 장쑤(江蘇)성에 위치한 대형 화학기업 두 곳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보다 1만 1,700배나 더 독성이 강한 HFC-23란 물질을 원료로 사용해 냉각제를 생산하는 ‘창수 중하오 화학’과 ‘장쑤 메이탄 화학’이 투자대상 기업이다. 두 회사는 앞으로 HFC-23를 분해하는 소각로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받아 연간 1,9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덕분에 거액의 외국 투자를 유치한 효과를 본 셈이다. 중국 정부와 중국 사회도 부수적인 이익을 챙길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들 기업에서 들어오는 세금으로 ‘청정발전기금(CDF)’을 만들어 태양력과 풍력 등 중국의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일련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세계은행 등 투자자의 몫이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이번 거래로 세계은행 측이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국제 시세를 적용해 2주 만에 팔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은 온실가스 t당 18유로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두 화학기업이 감축하게 될 1,900만t의 가치는 3억 4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중앙일보 2006-08-31]



말聯경제성장 위해 법인세 인하

내년부터 1%P씩 2년간

말레이시아가 2007년 경제성장률 6% 목표 달성을 위해 9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4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확정된 2007년 예산안에서 기업 법인세를 내년부터 연간 1%포인트씩 2년간 인하, 2008년에 법인세율을 26%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압둘라 아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는 “세계경제 둔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내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 촉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인접국인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2002년 24.5%였던 법인세율을 꾸준히 인하, 20%로 낮췄다. 홍콩의 경우 법인세율이 현재 17.5%에 불과하다.

ING뱅크의 팀 고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법인세 인하 결정은 뜻밖의 소식이지만 인하폭이 작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나 홍콩 등 다른 국가들의 법인세율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년 재정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24% 늘어난 445억링기트로 결정하고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을 올해보다 52% 늘리기로 했다.

[헤럴드경제 2006-09-04]

브라질의 3가지 고민 실업, 세금, 성장률

브라질은 지금 선거 정국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오는 10월 1일의 선거를 앞두고 브라질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현재의 전체적인 판세는 룰라 대통령이 폭넓은 국민적 지

지를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난한 공장 근로자 출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결력을 자랑하는 노조 지도자를 거쳐 브라질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룰라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지난 1995~2002년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조 전 대통령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런 룰라 대통령에게도 고민은 있다. 브라질 사회의 오랜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실업과 높은 세금 부담, 그리고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등이 그것이다.

실업률 상승과 과도한 세금 부담 논란

룰라 대통령은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실업률 상승과 무거운 세금 부담률이라는 암초를 만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워낙 지지를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있어 실업률과 높은 조세부담이 새삼스럽게 재선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문제들은 대선뿐 아니라 재선 성공 이후에도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정부 산하 통계기관인 국립지리통계원(IBGE)은 최근 전국 6대 도시를 기준으로 한 사회지표 조사 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7월 실업률이 10.7%에 달해 2005년 4월에 10.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레시페, 벨로 오리존테, 상파울루, 리우 데 자네이루, 포르토 알레그레, 살바도르 등 6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였다.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면, 지난 7월 현재 브라질의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24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반적인 취업 환경이 지난 2004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또 근로자들의 실질 평균수입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0.7%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 근로자들이 취업난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룰라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잘 나가고 있는 재선 가도에 행여나 뜻하지 않은 뜻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노동부는 통계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루이스 마링요 노동부 장관은 “IBGE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용한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실업률 상승은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이며, 현재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고용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BGE는 브라질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통계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롤라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IBGE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당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로 예측하면서 정부 공식 발표에 앞서 연간 GDP 성장률 2.3%라는 저조한 실적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브라질 중앙은행 등이 “IBGE의 예상처럼 성장률이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쭙지 않은 방어논리를 폈지만 IBGE의 예측은 정확하게 입증됐다. 이번 실업률 발표 역시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에는 브라질 국세청이 롤라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국세청은 거의 같은 시기 “지난해 조세수입이 7천241억 1천만 헤알(약 3,448억달러)에 달해 GDP의 37.37%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4년의 35.88%보다 1.49%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3년 초 롤라 정부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롤라 정부가 내걸었던 ‘조세감면’ 공약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정부 기관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 됐다.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조세수입이 늘어난 것일 뿐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국세청의 배경 설명이 따랐지만,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시대를 건너고 있는 롤라 대통령에게 높은 실업률과 조세부담 증가라는 악재는 야권에 공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 집권 2기 정부의 과제를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장을 왜 이리 더디나.”

브라질은 유력한 신흥시장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브릭스’(BRICs)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보여준 GDP 성장률은 이 같은 전망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잠깐 4.9%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05년 2.3%, 올해 3.5~4.5%로 신흥시장다운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같은 브릭스 국가인 중국과 인도가 8~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따라서 롤라 대통령은 재선 성공을 자축하기 이전에 집권 2기에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정책의 초점도 성장을 제고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올해부터 시작해 향후 수년간 상당한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달 초 “2007년부터 향후 10년간 5%대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예측일 뿐 현실 경제에서 이 같은 목표가 얼마나 충족될지는 미지수다.

재계에서는 당연히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최근 열린 롤라 대통령과 주요 재계인사 만찬에서도 정부지출의 대폭 축소와 함께 정부 정책이 성장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브라질 최대이자 세계적인 규모의 광산개발업체인 발레도 리오 도세(CVRD) 그룹의 로제르 아기벨리 회장은 “항만, 철도, 에너지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빠른 시일 안에 성장 동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표적인 철강제품 수출업체인 게르다우(Gerdau) 그룹의 조르제 게르다우 회장도 “정부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연기금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게르다우 회장은 특히 현재의 정부지출 규모가 감소되지 않을 경우 브라질이 바라는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 각료들은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룰라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출범하는 다음 정부에서 성장률 제고에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재계의 불만을 달랬다.

룰라 대통령 자신도 2008년부터 2022년 사이 연평균 6%대의 성장률을 목표로 한 '장기 성장전략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약에 가까운 계획을 발표하며 재계의 지지를 당부했다.

재계는 그러나 연간 6%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해도

단기간에 중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더 높은 성장률 달성을 위해 분배보다는 성장을 앞세운 정책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발판으로 연임을 내다보고 있는 룰라 대통령으로서는 성장 못지않게 고용창출과 소득재분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룰라 대통령의 2기 정부는 성장 우선 정책을 요구하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KOTRA 경제무역정보 2006-09-06]

재정정책 ·

미국, 복지개혁법 제정 10년 - 정책과 인식에 변화

민주당 대통령(클린턴)과 공화당 의회의 합작으로 국가복지정책의 개혁이 이루어진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 여파는 여전히 정책 및 정치를 통해 계속 미치고 있다.

과거 60년간 지속되어 오던 현금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을 과감히 탈피했던 개혁법 제정 당시 일각에서는 빈곤계층의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했었으나 생계보조비 수급자 수는 60% 감소했고, 싱글맘의 취업 및 아동지원용 재원은 크게 늘었다.

비록 싱글맘의 취업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수가 빈곤에 허덕이는 등 법제정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기대했던 효과가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생계보조비 수급자의 근로의무 시간이나 탁아지원 금액 등 세부적인 문제에서 의견다툼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과거 시스템으로 복귀하자는 주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일일해외신문 뉴욕타임즈 2006/08/21]

日 국채잔고 증가세 둔화..재정악화 개선[日經]

일본의 국채잔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난 7월 국채발행 잔고가 전년동기보다 4.7%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1993년 11월 이후 13년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국채잔고 증가세는 지난 2005년 2월 13.4%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문은 세수증가와 세출감소로 신규 발행이 줄어들고 재무성의 매입소각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경기회복에도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신문은 국채잔고 감소의 선순환 구조가 생겼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면 재정악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인포맥스 2006-08-29]

美 실업률 하락속 고용의 질 악화...의료·연금 혜택도 줄어

미국 경제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실업률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4일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은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급상승해 2003년 6월 6.3%로 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 올해 5월에는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6%까지 떨어졌다. 지난 8월 실업률이 4.7%를 나타내는 등 안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자들 가운데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금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생산성 증가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풀타임 남성 노동자들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1.8% 하락했으며 여성 평균 임금 역시 1.3% 하락했다.

워싱턴의 경제정책연구소의 경제학자 자드 베른슈타인은 “노동자들이 과거보다 똑똑해지고 더 열심히 일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가 2001년과 2005년 남자 대출 초임을 비교한 결과 역시 지난해의 임금이 2005년에 비해 7.3%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지난해 4년 전과 같은 노동을 했더라도 시간당 19.72달러를 덜 받은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3.5%(시간당 17.08달러) 낮았다.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과 세실리아 로저 교수는 “젊은이들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 등도 덩달아 늦어져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의료와 연금 혜택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2004년 기준 의료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가 전체의 15.9%에 이르는 데다 민간 기업 근로자의 18%만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IBM 등 대기업들은 올들어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나은 편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사이의 임금 격차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대출자는 고졸자보다 74%나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세계화·정보화 등으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신문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찾는 일자리는 노동조합조차 힘을 잃었고, 노동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종 차별까지 받는 흑인들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건너가야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006-09-04]

스웨덴 복지모델 망가졌다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제발전 모델이 퇴색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회(9월 14일자)에서 ‘복지국가의 대명사’ 스웨덴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과 공공 부문 실패로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국가의 상징이었다. ‘사회복지 자본주의’를 채택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저성장과 고실업, 경쟁력 저하, 재정적자 등으로 시달리는 데 반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우수한 글로벌 경쟁력 등을 자랑하고 있다.

이들 북유럽 국가는 또 여타 유럽국과 달리 재정도 건실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특히 스웨덴은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찬양 대상이었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해 스웨덴이 역사상 알려진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회라고 칭찬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볼 때 스웨덴 경제는 이 같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5.6% 성장했고 에릭슨, SKF, 텔리아, 볼보 등 스웨덴 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사상 최고의 수출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잘 훈련된 노동력, 다수의 하이테크 기업, 수출 지향적 경제, 높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영어가 잘 통하는 등 많은 면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스웨덴의 성공을 흉내내려 한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스웨덴 경제의 전성기가 오래 전에 지나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1870년에서 1950년 사이 스웨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1970년 스웨덴은 부자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네 번째로 잘사는 나라였다.

이 순위는 서서히 하락해 1998년 16위로 밀려났다. 이후 경제가 반등하는 조짐이 있으나 이는 1990년대 침체의 골이 깊었던 탓이다.

화려한 스웨덴 경제의 뒤편에는 두 가지 커다란 약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고용 없는 성장이다. 스웨덴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6%다. 보통 10%를 웃도는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

다. 그러나 스웨덴은 실업통계 조작에서 세계 챔피언감이다. 스웨덴 실업통계는 조기퇴직자나 일할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는 등 많은 허점이 있다.

올해 초 맥킨지 등의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의 실제 실업률은 15~17%에 달하고, 청년 실업률은 유럽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즉, 이는 인구 700만명 중 7분의 1인 100만명이 실업자라는 뜻이다.

또 직업·주택을 갖지 못하거나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소외계층이 사는 소위 '배제된 지역'은 1990년 단 1개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57개로 급증했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스웨덴 도처에 널려 있다. 비록 이 나라 대기업들이 오랫동안 변성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와 세금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은 기를 못 펴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의 50대 기업 중 1970년 이후 탄생한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다.

[매일경제 2006-09-10]

정책 흐름



- 2006년 세제개편(안)
-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2006년 세계개편(안)

(정기국회 제출)

이 자료는 2006년 8월 21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2006년 세계개편(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세계개편 여건

- (경제상황) 우리 경제는 대외적 여건이 불확실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을 지속
 - * Dubai유(기간평균,\$/bbl) : 49('05년도) → 63('06.7월까지)
 - ** 원/달러(기간평균) : 1,024('05년도) → 962('06.7월까지)
- 민간소비는 지난해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는 전망대로 개선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부진
 - * 민간소비(%) : (05.2/4)3.0 → (3/4)4.0 → (4/4)4.2 → (06.1/4)4.8 → (2/4)4.4
 - * 설비투자(%) : (05.2/4)2.7 → (3/4)4.3 → (4/4)10.2 → (06.1/4)6.9 → (2/4)7.7
 - * 건설투자(%) : (05.2/4)1.6 → (3/4)0.3 → (4/4)0.9 → (06.1/4)1.2 → (2/4) △4.0
- 지표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회복이 지연되고, 소득분배의 개선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 * 지니계수: 0.316('98년) → 0.312('02) → 0.326('03) → 0.310('04) → 0.310('05)
- (세수여건) '06.6월 세수진도비는 예산대비 49.9%로서 3년 평균 진도비 48.5%에 비해 호조세
 - 하반기에 특이사항이 없는 한 '06년 세입예산(135.3조 원)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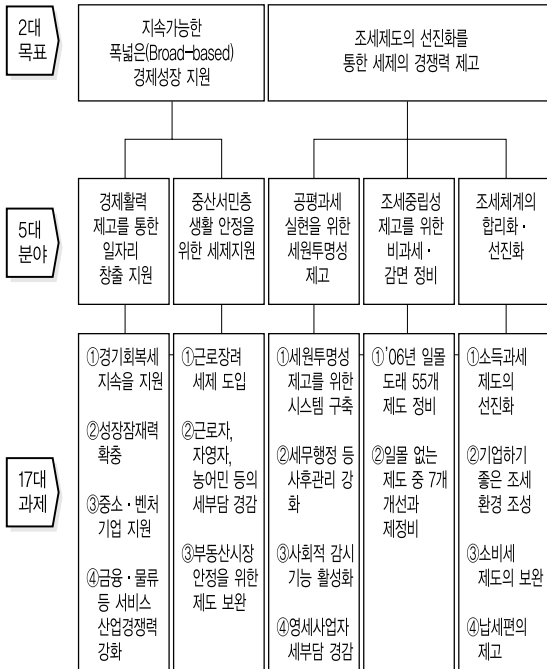
• 그러나, 사회·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인하 등 세수감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

II. 2006년 세계개편 방향

1. 고려요소

- ('06년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을 지원) 『'06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제시된 거시경제정책을 세제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
- 중소기업·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및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
- (중장기 조세개혁과제의 이행) 세제선진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중장기 조세개혁과제 중 단기과제를 세계개편에 반영
 -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
 -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2. 세계개편 방향



- 금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9개 세법 개정안 제출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관세사법, 관세 환급 특례법

Ⅲ. 2006년 세계개편(안) 주요내용

1.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참여정부 출범 이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 투자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세법 개정 추진
 - R&D·외국인투자 지원 확대
 - 소득세율 1%p, 법인세율 2%p 인하
 -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대폭 축소
 - 기업구조조정 세제 보완
 -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 도입 등
-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일몰 연장,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등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 연구개발 설비 투자금액 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 연장,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신설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서비스산업 지원

(I)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1) 기업투자 활성화

①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2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공제대상 : 환경보전시설, 산업재해 예방 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등 •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환경보전설비,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해외자원 개발투자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 (조특법§24)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자산 • 공정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 공제율: 투자금액의 3% * 중소기업은 7%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추가 • RFID*(상품정보기 입력된 전자 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출고 및 유통 단계 관리)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공제율: 투자금액의 3%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RFID를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자동화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공제율을 일원화

<적용시기> 200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사회기반시설채권 등 이자소득 분리과세(조특법§29)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이상 장기 SOC채권 이자는 14% 분리과세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SOC채권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장기채 시장육성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

④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85의3)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에 참여한 기업이 전담기업(SPC)에 기업도시구역 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처분 시점까지 법인세과세이연 • 참여기업이 전담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신주를 반환하는 경우 분양된 토지의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 •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기업도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85의4)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국법인(SPC)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의 처분시점까지 법인세과세이연 •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⑥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 공장 등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85의2)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수용·협의매수된 공장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의 지방(수도권·광역시 제외)으로 이전 및 대체취득하는 경우 •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에 대해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에 준하여 세제지원

* 현재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수도권 본사 지방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적용시기> 2007.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인 투자 활성화

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행 유지

구분	투자요건 등	세율	세액	감소액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121의2 ①1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여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사로 지정*	5년	5년	관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법인 §121의2 ①2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SOC 1천만불 이상 R&D 5백만불 이상 공동사업 3천만불 이상	100% 감면 2년 50% 감면	100% 감면 2년 50% 감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3년 면제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법인 §121의2 ①2의2	제조업 1천만불 이상 관광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121의2 ①2의3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및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3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3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관세 3년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121의2 ①2의4	1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및 총개발사업비가 1억불 이상인 경우			

구분	투자요건 등	세율	세액	감소액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투기업 §12의2 ① 2의5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3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3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관세 3년 면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외투법인 §12의2 ① 2의6	제조업 등 1천만불 관광업 등 1천만불 물류업, R&D 5백만불			
기업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 §12의2 ① 2의7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및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 외투법인 §12의2 ① 3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산업지원서비스업(149개) 및 고도기술수반사업(488개)
: 총 637개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
(소득세법§156①3·법인세법§98①3)

현행	개정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25%	• 14%로 인하

<개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채권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18①)

현행	개정안
■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 한 소득세 5년간 면제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 비영리연구기관 연구원 등 • 일몰시한 : '06.12.31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외국 선진기술 도입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3) 기본관세율 개편을 통한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893개 품목)

① 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310개 품목)

• (비경쟁 기초원자재) 산업연관 효과가 큰 품목(예: 납
사), 양허세율 0% 품목(예: 펄프), 수급애로 품목(예: 동
광) 등을 중심으로 기본관세율을 무세화

• (경쟁 기초원자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관세율
인하(예 : 3 → 1~2%)

• (에너지 및 석유제품)

- 주요 에너지(원유, LNG, LPG) 기본관세율 인하(5 →
3%),

다만,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 이들 제품에 대한 현행
탄력세율(원유 할당 1%, LNG 잠정 1%, LPG 할당
1.5%) 유지

- (예: 휘발유·경유, 기본 8%)은 현행 실행세율(할당
5%)을 기본세율화

• (석유화학제품 원료 또는 중간재)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인하(5 → 3%)

* (예) 크실렌(5 → 3%)

② 세율불균형 시정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112개 품목)

• 역관세(원료 또는 부품 세율 > 완제품 세율)는 완제품
을 수입하는 업체에 비해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가
공·생산하는 업체를 불리하게 하므로 이를 시정

* (예) : 철광석 1 → 0%(철강제품 UR양허세율 0%)

•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이 큰 품목의 세율 조정

* (예) : 디지털 캠코더 8 → 0%(디지털 카메라 양허세율 0%)

③ 기본관세율 체계 정상화(405개 품목)

• 할당관세와 잠정관세가 장기간 적용되어 실행세율로
고착화된 경우 기본세율화

* (예) 장기할당관세 품목: 면사, 요소(농업용) 등 27개 품목 잠정
관세 품목 : 밀, 유채씨 등 22개 품목

• 농약원제에 적용되는 현행 할당관세(2%)를 대부분 기
본세율화하여 농민을 상시 지원(할당 2% → 기본 2%)

• 농산품 중 실행세율(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아 현행
기본세율이 무의미한 품목에 대해 양허세율 기본세율화

* (예): 냉동 삼겹살(50 → 25%), 신선 치즈(40 → 36%) 등 293개 품목

④ 기타 정책적 지원(66개 품목)

- 국내 영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화용 필름(47개)에 대하여 관세율 인하(미촬영 필름 8 → 6.5%)
- 국내 식음료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설탕에 대한 관세율(기본 50%, 할당 40%)을 적정수준(30%)으로 조정
- 관세법시행규칙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종자(種子)·종축(種畜) 물품을 기본관세율에 반영하여 무세화(말, 토끼 등 17개)

(2)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1)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11)

현행	개정안
<p>■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설비 • 연구시험용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 사업화 설비 • 지원내용 : 설비투자 금액의 7%를 소득 · 법인세에서 공제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 <적용시기> 200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조특법§10)

현행	개정안
<p>■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40% *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 ①+② ① 자체 사용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개발비 초과분×40% ② 중소기업 · 대학 등에 지급한 외부위탁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50% • (현행 유지) • 일몰연장 : '0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Max(①, ②) ①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50% ②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15% • 일몰시한 : '06.12.31 	

<개정이유>

- 연구개발투자는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규모 및 연구성과의 축적(stock)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므로 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 대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탁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②)

현행	개정안
<p>■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대상기술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 공제율: 취득비용의 3% * 중소기업은 7%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 취득비용의 3%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 지원 및 공제율을 일원화

<적용시기> 200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④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령 §38)

현행	개정안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 비과세 한도 : 급여총액의 5% - 비과세 시한 : '06.12.31 •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자원 인력 및 초·중등 교원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비과세 시한 : 없음	■ 비과세한도 일원화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비과세 시한 : 일몰 폐지 • (현행 유지)

<개정이유>

■ 초·중등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와와의 형평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20)

현행	개정안
<신설>	■ 지원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 특구특별법(§2)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승인·지정 - 연구소기업 : 특구 내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출자총액의 20% 이상 출자하여 특구안에서 설립 - 첨단기술기업 : 특허권을 보유하고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첨단기술 매출액 30% 이상, 연구개발투자비가 매출액의 5% 이상) ■ 지원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 대덕특구를 세계 유수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상용화를 주업무로 하는 연구소기업과 첨단 기술기업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인력개발 지원

①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소득법§52, 소득령 §110의3)

현행	개정안
■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 •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 •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 공제한도 : 1인당 200만원	• 대상 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 추가 * 체육시설 설치·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육단 등 •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 • (현행 유지)

<개정이유>

■ 체육도 교과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도장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 취학전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습과정요건 완화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소득법§52)

현행	개정안
■ 근로자 본인의 수업료 등 교육비공제 • 대상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수업료 등 • 공제금액 : 전액	•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 추가 • (현행 유지)

<개정이유>

■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취득을 위한 수강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사립학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조특법§74)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추가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공공성이 큰 지방의료원 및 대한적십자병원을 추가하고, 학교법인 등의 경우 공공성이 큰 비영리법인임을 감안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특례(100%)의 일몰 연장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①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소득법§51, 51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대상 : 근로소득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1인인 경우 : 100만원 - 2인인 경우 :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 개선

*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다자녀추가공제로 전환시 인적공제(단위 : 만원)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24
현행	100	200	300	400
개정	100	200+50	300+150	400+250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조특법§85의5)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인이 보육시설을 처분하고 새로운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처분 후 1년 내 대체 취득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여성고용 확대 및 보육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유전 개발지원

①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법인세법§51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적용대상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적용배제 : 명목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08년말 까지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개발투자회사 추가 - 유전개발투자회사에 대해서도 '08년말까지 예외 인정

〈개정이유〉 선박투자회사 수준으로 유전개발투자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유전개발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91의7)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 투자회사별 액면 3억원 이하 - 비과세('08년까지) - 5% 저율과세('09~'11년) 투자회사별 액면 3억원 초과 - 14% 분리과세('07~'11년)

〈개정이유〉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전개발펀드 유입 촉진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벤처기업 지원

1) 창업단계 지원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감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 창업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 감면업종: 제조업, 광업 등 21개 업종 • 일몰시한: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09.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분부터 적용

2) 운용단계 지원

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조특법§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업종: 제조업 등 33개 • 대상자산: 사업용자산, POS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공제율: 투자금액의 3% • 일몰시한: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09.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일몰 연장(조특법§16)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5% • 일몰시한: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10%로 축소 • 일몰연장: '0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일몰을 연장하되, 제도 도입목적의 달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 축소
 <적용시기> 2007.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시 허용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자(子)조합을 통한 출자시에도 허용(조특법§13①, §14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경우 •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기관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허용 ■ 기관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허용

<개정이유>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구조조정 지원

①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조특법§33의2)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중전사업 폐지후 1년 이내 신입종 개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전환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사업전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내 총매출액 중 종전업종 매출액을 30% 이하로 축소하고, 신업종 매출액이 70% 이상 점유 * 전환전 사업 : 업종제한 없음 * 전환후 사업 : 제조, 물류 등 21개 창업지원 대상 업종 •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8)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 기증 시 • 기증자(대기업) : 손금산입 • 무상기증 : 장부상 잔존가액 • 수증자(중소기업) : 익금불산입 •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신규 설비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설비지원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적용시기> 2007.1.1 이후 무상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4) 물류·금융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 중소 물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①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물류전문기업과 합병시 분할평가차의 과세이연요건 완화(조특법§46의4)

현행	개정안
■ 분할평가차의 과세이연 제도	■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시 분할평가차의 과세이연요건 완화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과세이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되는 상각시점까지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 ②, ③ 요건은 현행과 동일 • 요건완화 적용배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또는 분할합병 신설법인이 특수관계인 경우 • 일몰시한 : '09.12.31 <p>(현행 유지)</p>

<개정이유> 제3자물류로 전환을 통한 물류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물류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조특법§46의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 승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합병평가차의 과세이연요건*을 갖출 것 * ① 1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합병대가의 95% 이상이 주식이액 ② 합병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영위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일 것 ④ 합병법인이 기존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구분경리할 것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승계요건 완화 <p>(현행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일 것 ④ (현행유지) •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물류기업의 대형화 지원

* 현재 내국법인이 벤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법인 지분요건을 10%에서 3%로 완화하는 특례 인정(조특법§47의3)

〈적용시기〉 2007.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3)

현행	개정안
<p>■ 제휴할 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제휴상대인 물류법인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인 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휴상대인 물류기업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물류기업간 M&A 및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채권 및 증권시장 활성화

① 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117의18호)

현행	개정안
<p>■ 기금*이 매입한 증권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p> <p>*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공공기금의 주식투자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91의6)

현행	개정안
〈신설〉	■ 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의

현행	개정안
〈신설〉	<p>이자·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거주자 및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 * BB+등급 이하 채권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 •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원금 1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비거주자는 한도없이 적용 • 적용시한 : '09.12.31까지

〈개정이유〉

■ 신용등급이 낮은(예 : BB+이하) 기업의 정크본드 발행을 원활히 하여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외국인 투자 촉진

〈적용시기〉 2007.1.1 이후 설정되는 펀드분부터 적용

2. 중산·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참여정부 출범 이래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 추진
 -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 영유아교육비 공제한도 및 6세 이하 자녀공제 확대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
 - 간이과세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조정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등
-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인 근로장려세제(ETIC) 도입
 -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성실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
 - 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
 -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 지원
 -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일몰 연장 등

(1) 근로장려세제(ETTC) 도입

1) 도입배경

- 일반국민 대상의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 위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 별도지원 필요
- ETTC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2) 기본방향

- 시행초기에는 소득과약 정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최소한으로 하여 안정적인 제도 도입에 중점
-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TTC 급여를 '08년부터 지급
- 소득과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과약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ETTC 단계적 확대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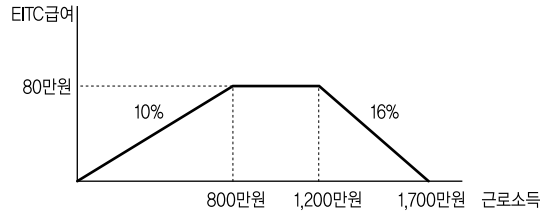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7~'09년)	2단계 ('10년~'12년)	3단계 ('13년부터)	4단계
적용대상	재녀 2인 이상주택	재녀 1인 이상	재녀 1인 이상	무재녀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약 3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간소요예산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3) 수급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당해연도 총소득이 1,700만원(최저생계비의 1.2배) 미만인 근로자 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 도입 초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

4) 급여산정

- 가구단위 적용 :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모형형태 :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층 - 평탄 - 점감형태의 미국식 ETTC 모형 채택



• 근로장려금 산정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 ~ 800만원	근로소득 × 10%
800만 ~ 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 적용례

-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인 가구(부부합산 근로소득 1,400만원)
- ETTC 급여 : (1,700만원 - 1,400만원) × 0.16 = 48만원
- 최대 급여 : 연 80만원
- 시행 초기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정도의 필요 최소한 수준으로 설정
- * 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 : 7.19%(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24, 고용보험 0.45)
- 부정수급 소지를 최소화하고 비적용자와의 불형평 문제 고려
- 예상 수혜가구 31만가구, 소요예산 연 1,500억원 추정

5) 신청·지급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자에 한하여 연 1회 지급
-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등이 상호 일치되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
-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의해 지급하고 조세지출로 처리
- ETTC는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일반조세 환급절차와 동일하게 운영

6)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시(수급요건 허위 기재, 결격사유 고의누락) 2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 위·변조 등) 5년간 지급제한
- 과다 지급액은 국세기정수법을 준용하여 추징

* 과소지급시에는 경정청구나 세법상 불복절차 적용

(2)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부담 경감

1) 근로자

①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소득법§52⑨)

현행	개정안
<p>■ 혼인·장례·이사비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 <p>*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100만원 이하이고 60세(여자 55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자 · 공제금액 : 사유당 100만원 	<p>연령제한 삭제</p>

<개정이유>

- 혼인·장례비 소득공제 요건 중 연령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조특법 §100)

현행	개정안
<p>■ 사업주가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보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 근로자*: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p>* 월급 60만원 이하 근로자, 일급 2만 4천원 이하 일용근로자 등</p>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자금 : 취득가액의 5% - 임차자금 : 임차금액의 10%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87)

현행	개정안
<p>■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 이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및 3억원 이하 1주택소유자 ·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p>■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p> <p>■ 일몰시한 : '06.12.31</p>	<p>■ 배당소득도 비과세</p> <p>■ 일몰연장 : '09.12.31</p>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④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시한 연장(조특법§88의4⑧)

현행	개정안
<p>■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보유, 소액주주 - 증권금융예 위탁 · 비과세대상 기준금액(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까지 : 5,000만원 - 2007년 이후 : 1,800만원 	<p>■ 비과세 시한을 2년 연장하되 비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대상 기준금액(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까지 : 3,000만원 - 2009년 이후 : 1,800만원

<개정이유>

- 기업과의 일체감 형성 및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제도와 기준금액 일치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자영사업자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참조]

- ①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60만원 → 100만원)
- ②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 유지
- ③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배 초과 증가시 초과 증가분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공제
- ④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⑤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기업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도록 세액계산방법을 간소화(재경위 계류중)

3) 농어민

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조특법§106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을 위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석유류 • 부가가치세, 특소세 및 교통세 면제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벽지도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②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66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면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 : 전액 면제 • 작물재배업소득(벼, 과실, 채소 등) - 농업소득 외의 소득 : 한도*내에서 면제 <p>*1,200만원×조합원수× $\frac{\text{사업연도 월수}}{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농·어작업 대행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제3호)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작업 대행구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농어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어업경쟁력 향상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세제지원 등(조특법§66, §68)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 농업소득 : 비과세 • 농업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만원 이하 : 비과세 - 초과분 : 5% 분리과세 • 일몰시한 : '06.12.31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세제지원 • 농업소득 : 비과세 • 농업외소득 : 14% 분리과세 • 일몰설정 : '0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세 감면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기업농 경영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 (조특법§7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순이익 +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세율 : 12% • 대상법인(각종 단위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중기협동조합 등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과 영세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서민 및 택시 등 운송업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조특법§89)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9% 저율분리과세 • 대상 : 20세 이상 거주자 • 저축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 4천만원 - 노인(60세, 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운동 부상자 : 6천만원 • 일몰시한 : 없음 ■ 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소득비과세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국가·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환자, 5·18 운동 부상자 • 저축 한도 : 3천만원 • 일몰시한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 설정 및 한도 축소 •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원 - 독립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 * 생계형 저축과 대상 일치 • 일몰설정 : '08.12.31까지 가입분 •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대상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 • 일몰설정 : '08.12.31까지 가입분

<개정 이유>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단순 저축지원 목적의 비과세·감면은 축소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적용, 기존 가입 저축은 만기(만기가 없는 경우 '09.12월)까지 4천만원 한도 인정

②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특법§106의4)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 일몰시한 : '06.12.31 * 경감액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일몰 연장
 - ※ 지원실적 : ('03년) 884억원 ('04년) 752억원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③ 천연가스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천연가스(CNG)버스 구입 지원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공장·광산·건설사업장·학교의 음식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①제2호)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범위 • 학교 구내에서 경영자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생에게 제 	

현행	개정안
공하는 음식용역 •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 일몰시한 : '06.12.21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학교급식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지원

①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소득법§52)

현행	개정안
■ (근로자)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 * 표준보수월액의 2.24% 부담 ** 임금총액의 0.45% 부담 •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보험료공제대상 추가 •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 ('06.2.16. 정부제출)
■ (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필요경비 대상 추가 • 사업자 본인의 노인수발보험료 • 노인수발보험법(안)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개정이유>

■ 노인의 수발보호 등을 위해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용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적용시기> 2007.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소득법 §47②)

현행	개정안
<신설> ※ 역모기지: 고평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 가입요건 ① 부부 모두 65세 이상 ② 1세대 1주택 ③ 주택 공사가격 6억원 이하	■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자 -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및 주택공사가격 3억원 이하 • 소득공제방법 -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공제 • 한도 : 연간 200만원

<개정이유>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③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법인영§2)

현행	개정안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 • 축산업·조경수 식재업 외 농업 • 연금 및 공제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정) • 유치원·학교와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교육서비스업 등	•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사업을 추가(보증보험료 수입·보증손실에 한정, 그 밖의 자산운용수입은 과세)

<개정이유>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④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법인규칙§18②)

현행	개정안
■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 범위 내 손비인정)의 범위 •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사회적기업 지원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시장안정

①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 신설 (조특법§99, §99의3)

현행	개정안
<p>■ '98.5.22~'99.12.31, '00.11.1~'03.6.30 기간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 신축주택 외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p><고가주택 판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5.22~'99.9.17: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양도기준시가 5억원 초과 ◦ '99.9.18~'02.9.30: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실가 6억원 초과 ◦ '02.10.1~'02.12.31: 전용면적 45평 이상이고 양도실가 6억원 초과 ◦ '03.1 이후: 양도실가 6억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 일몰 신설 -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

<개정이유>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제도 보완

②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조정(소득법§64)

현행	개정안
<p>■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p>• 세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합소득세율(8~35%)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주택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주택매매차익×양도세율(60%) 	<p>■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2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 추가 <p>• 세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합소득세율(8~35%)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주택·토지 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주택·토지 매매차익×양도세율(50%, 60%)

<개정이유>

■ '07년부터 양도세가 증가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세 증가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소득법§97, 소득영§163① · §169)

현행	개정안
<p>■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한 양도세 결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장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양도세 결정 • (특례 신설) 	<p>■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한 양도세 결정 방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 세무서장은 등기부기재금액이 실거래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기부 기재금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 * 세무서장은 양도세 무신고자에 게 양도세 결정내용을 사전통지하여 통지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토록 기회(기한후 신고) 부여. 다만, 양도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명절차 생략 가능

<개정이유>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에 따른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무신고자의 양도세 결정시 등기부 기재가액 활용

<적용시기> 2007.1.1 이후 양도하거나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전략” 마련('03.5월)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간이과세 비증과 면세범위 축소, 기장의무자 확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등

-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저소득·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과세관청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금년에는 공평과세와 세제·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접근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현금거래 노출 강화,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등
 - 세무행정 등 사후관리 강화
 -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세무조사 개선 등
 -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등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방안 병행 추진

(1)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1)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①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소득법 §126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소득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급여 15% 초과사용액의 15%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액의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 ■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신용카드 등은 15% 유지)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계좌 잔액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개정이유>

- 사용비중이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 제고
 - * 직불카드는 주로 학생,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 등이 소액현금 거래에 이용

<적용시기> 2006. 12. 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소득법§162의3, 법인법§117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맹점 가입 권유 - 대상 :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 *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교부 사업자(소매, 음식·숙박,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사업서비스업 등) ② 의료보건영역 제공사업자(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③ 학원업 •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세무조사) 가능 -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 현행과 같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맹점 가입 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등을 감안 • 현금영수증 : 가맹점 가입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현행 유지) -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가입의무화 •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 유지) ② 감면배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여부에 관계없이 감면 배제 ③ 가산세 신설 : 수입금액의 0.5% ④ 추계과세시 단순경비를 적용 배제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사용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적용시기> 200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기존사업자는 '07.6.30까지 가입의무화)

③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및 신고포상금 지원(소득법§162의3, 법인법§117의2, 국기법§84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조 회기 설치·사용 등 신용카드 단속에 필요한 사항 명령 가능 - 명령위반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원 이하 벌금부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요구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사업자에 한정 • 현금영수증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신설>

-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거부시 경정

현행	개정안
(신설)	(세무조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거부시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율 : 발급거부금액의 5%
(신설)	(상습거부자에 대한 추가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감면배제 * 상습거부자(예 : 연간 5회 이상)의 범위는 시행령 개정시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포상금 지급 • 신용카드 사용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시 포상금(건당 5만원)지급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 7.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④ 현금거래 신고 · 인증제도 도입 (조특법§126의5)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거래 신고 · 인증제도 •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 · 인증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인정 • 신고대상 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점 • 신고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과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확인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적용시기〉 2007. 7.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

①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 제도 도입(소득법§160의5)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상호 병기 의무화 •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농 · 어업 · 도 · 소매 : 3억원 이상 제조 · 음식 · 숙박 :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 서비스업 : 0.75억원 이상 ** 전체 개인사업자(436만명) 중 53만명(12.2%) • 거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상 재화 ·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 • 계좌 미개설시 제재방안 ('08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사유에 추가 - 가산세 부과 : 수입금액(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0.5% - 감면배제 :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 배제

〈개정이유〉

-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설치 · 운영토록 함으로써 개인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
- 과세당국이 필요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적용시기〉 2007.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제재규정은 2008.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② 신용정보사업자의 개인정보 제출근거 마련(소득법 §174)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업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용정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용거래정보 : 대출·보증·담보제공·당좌예금·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거래기간과 금액 등 ②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등

〈개정이유〉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토록 하여 소득과약능력 제고
 〈적용시기〉 2007.1.1 이후 제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본점 계좌 일괄조회 • 주체 :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 일괄조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증여세 조사 - 부동산 투기조사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 명백한 조세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관련정보·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조회 대상 확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조세범 처벌대상 범죄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용카드 변칙거래 또는 현금수입액 누락 등에 의한 조세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 탈루유형에 해당하는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이유〉
 ■ 실물거래 흐름을 뒷받침할 금융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을 강화
 〈개정시기〉 금년 이후 관련법 개정 수요 발생시 다른 개정 사항과 함께 개정 추진

④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근거 마련(소득법§174)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보험사의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료의 국세청 제출의무화 • 제출자료: 손해보험금 지급액 및 산출근거 • 제출시기: 매년 2월말(지급조서 제출시기)

〈개정이유〉
 ■ 보험수익자가 소송을 통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
 〈적용시기〉 2007.1.1 이후 손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정보의 국세청 제공범위 확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기발표)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자료의 국세청 제공 범위 •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제공범위 확대 • 외국환거래 또는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혐의거래 : 2천만원 이상으로서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 고액현금거래 : 일일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현금거래
 〈개정이유〉 국세청의 금융거래 정보 활용범위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보고된 거래분부터 적용

3) 장부기장 등 근거과세 확대

①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소득법§56의2①)

현행	개정안
■ 기장세액공제제도 •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 농·어업·도·소매 : 3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 : 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서비스업 : 0.75억원 미만 • 기장세액공제율 - 간편장부·복식부기에 의한 신고시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공제율 인상 - 간편장부 :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 -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15% (100만원 한도)

<개정이유>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소득법§81⑥, 소득영§83⑥ · §208의2, 법인영§41 · §158)

현행	개정안
■ 적격증빙 수취의무 •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5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대상 : 5만원 초과 거래 - 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부과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 수입금액 기준 농·어업·도·소매 : 3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 :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 0.75억원 이상 • 접대비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 건당 5만원 초과접대비는 적격증빙 미수취시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 대상 : 1만원 초과로 확대 - 가산세 부과대상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로 확대(추계과세자 제외) - 건당 1만원으로 인하 * 적격증빙 기준금액과 일치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점을 감안하여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적용시기> 200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소득영 §143④)

현행	개정안
■ 추계과세 적용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 7,200만원 미만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 4,8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3,600만원 미만 * 상기 기준금액 초과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에 의하고, 기타경비는 표준경비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08년 이후 귀속 6,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 ※ '08년 이후 귀속분('09년신고부터 적용)

<개정이유>

■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증빙수취를 유도하고 근거과세를 강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과약 강화

①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득영§208 ⑤)

현행	개정안
■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어업, 도·소매업 : 3억원 이상 - 제조·음식·숙박업 : 1억 5천만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예시)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현행	개정안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이상 * 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기준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방법 · 3,6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건축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전문직 사업자 추계신고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개정이유〉

- 전문직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현재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소득영§110)

현행	개정안
■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미용·성형 수술비용 등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제외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 등 • 의료비 공제 한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본인·장애인 등 : 전액 ◦ 자녀 등 : 500만원 한도	•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2년 일몰설정) - 미용·성형 수술비용 등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 ※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 * 의료기관의 종류(의료법§3)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 (현행 유지)

〈개정이유〉

-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 확보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과약 수준 제고

〈적용시기〉 2006.12.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변호사 수입자료 제출범위 확대(변호사법)

현행	개정안
■ 변호사 수입자료 제출 현황 •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할 의무 - 선임서 내역 ◦ 의뢰인 인적사항 ◦ 지방변호사회 경유일 • 미경유시 제재 -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협이 자체징계* * 변호사법상 징계의 종류 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월, 7월 수입사건 경우건수 현황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과세자료제출법시행령)	• 수입자료 제출범위 확대 - 수입건수 및 건별 수입료 - 제출시기 : 매년 1월말 - 제출처 : 지방변호사회 • 의무불이행시 제재 (현행 유지) •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3월말까지 수입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추가로 제출(과세자료제출법시행령)

〈개정이유〉

- 변호사의 경우 현재 수입사건 경우건수만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어 소득과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료제출 범위를 확대

④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부가법 §22)

현행	개정안
■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 대상(6개 업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관세사 • 미제출시 : 가산세 없음	• 대상확대: 6개 → 15개 업종 * 추가: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등 • 가산세 신설 :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개정이유〉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07.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거래흐름의 정상화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도입(조특법§126의4)

현행	개정안
■ 세금계산서제도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제도 도입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입자가 스스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확인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발행대상 매입자 : 과세사업자 • 발행대상 매출자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개정이유>

- 도매상 등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과표가 양성화되는 소매상 등의 매입세액공제가 용이하도록 지원

<적용시기>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소득법 §81⑦, 법인법§76)

현행	개정안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가산세 부과사유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 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제출시기 : 익년 1월말까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시 별도의 가산세 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신설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동일하게 부과사유·가산세율·대상을 적용

<개정이유>

- 면세사업자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자료수집의 실효성 강화
- 현재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부담이 없어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수집에 한계

<적용시기> 2007.1.1 이후 교부받은 분부터 적용

③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증가(부가법§22②·③)

현행	개정안
■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교부 : 공급가액의 1% • 가공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의 1% • 타인명의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의 1% • 명의위장사업자 : 별도의 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 없음	■ 가산세율 상향 조정 2% • 사업자 허위등록가산세 신설 - 가산세율 : 1%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정착 및 과세의 공정성 제고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④ 간이과세 배제기준 강화

현행	개정안
■ 간이과세 배제대상 기준 • 제조업·도매업 등 • 부동산임대업 (특별시·광역시·부동산임대업은 시 지역 소재하는 일정규모이상 부동산 임대)	• 부동산임대업은 시 지역 소재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까지 간이과세 적용배제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단절하는 원인이 되므로 그 적용기준을 강화

(2) 사후관리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① 가산세 제도의 개편(국세기본법)

현행	개정안
<p>■ 신고불성실 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세법에 달리 규정 • 가산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소득·상속세 : 20% ◦ 기타 세목 : 10% - 과소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소득·상속 20~30% 10% ◦ 기타세목 10% 10% 	<p>■ 신고불성실 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기본법에 통일 규정 - 무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세목 부당 40% 일반 20% - 과소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목 부당 40% 일반 10%
<p>• 부당한 신고위반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성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거래없이 비용 과다계상 ◦ 매출금액을 고의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한 금액 ◦ 기타 익금 고의누락 및 손금 허위 계상 금액 ◦ 매매거래가액·재산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증빙 제출·통모에 의한 저가 평가 - 고의성 여부 불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액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 감면배제법인이 감면적용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p>• 부당한 신고위반 유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성이 있는 경우 : 국세 기본법에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거래없이 비용 과다계상 ◦ 이중장부 ◦ 허위기록·허위증빙과 허위문서 작성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자산은닉과 소득원천의 은폐 ◦ 통상적인 기록을 피하기 위한 업무의 조작적인 처리 ◦ 통모에 의한 저가 평가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해 거래된 금액 <p>필요시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되, 고의성 요건 등을 추가</p>

현행	개정안
<p>■ 납부불성실 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세법에 달리 규정 • 가산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소득세 등* : $\text{미납세액} \times \text{경과일수} \times \text{가산세율}$ *법인·소득·부가·상증·특소·교통·중부세·증권거래세·인지세 - 교육·농특세 : 산출세액의 10% - 인지첩부대상 : 미첩부 인지세액×300% 	<p>■ 납부불성실 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기본법에 통일 규정 - 모든 세목 : $\text{미납세액} \times \text{경과일수} \times \text{가산세율}$ <p>(삭 제) (현행 유지)</p>
<p>■ 가산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신 설) - 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 판례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 가산세 감면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부심 결정기간(30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0% 감면 - 1월내 기한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 정당한 사유를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관청의 공적인 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결정한 후 재경정 고지하는 경우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단순협력의무 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소득세*는 1월내 지연협력시 가산세 50% 감면 * 지급조서·계산서·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신 설) 	<p>■ 단순협력의무 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상속세*도 1월내 지연협력시 50% 감면 * 세금계산서합계표·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고의성 없는 위반시 한도제 도입 (최고 1억원)

〈개정이유〉

- 모든 세목에 대하여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 방지
 -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
 -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를 법제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 법인세법상의 기한후 1월내 지연협력시 단순협력의무 가산세 50% 감면제도를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 적용하여 단순 과실에 의한 가산세 부담 완화
 - * 1월내 조기협력시 50% 감면될 가산세의 종류
 - 부가세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
 - 상속세 : 공업법인 출연재산 계획·진도명세서보고 불성실가산세 등
 -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를 도입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세무조사 개선(국기법\$81의5, \$81의6)

현행	개정안
■ 세무조사 대상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함의가 있는 경우 • 4과세기간중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추출 표본 선정 등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 구체적 탈세제보 •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신 설〉	■ 세무조사 대상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정기조사 수시조사 ■ 소규모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면제(정기조사시)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 완화장치 마련 참조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개시 7일 이전 〈신 설〉	■ 사전통지 기간 연장 • 10일 이전 ■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승인 여부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

〈개정이유〉

- 세무조사 유형·선정기준 등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성실 영세사업자·중소기업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준비기간을 충분히 제공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시행되는 세무조사분, 사전통지 또는 연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국기영\$65의4)

현행	개정안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대상 제보 :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 * 포상금 : 탈루세액의 2~5% (1억원 한도)	• 5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개정이유〉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함

〈적용시기〉 2007.1.1 이후 제보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완화 장치 마련

①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확대 및 지속(조특법\$122)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대상수입금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 세액공제 : ①, ② 중 선택하여 소득세액에서 공제 ①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 $\text{종합소득} \times \frac{\text{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액}}{\text{신용세액}} \times \frac{\text{당해연도 총수입금액}}{\text{당해연도 총수입금액}} \times 50\%$ ② 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text{종합소득} \times \frac{\text{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액}}{\text{신용세액}} \times \frac{\text{당해연도 총수입금액}}{\text{당해연도 총수입금액}} \times 5\%$ • 일몰시한 : '06.12.31	• 대상수입에 RFID*를 통한 수입 추가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출고 및 유통단계 관리 •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 자영업사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
- 물품의 입·출고 및 유통단계의 거래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RFID를 통한 수입금액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소득법§52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이사·장례 ·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공제 ■ 특별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정액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 100만원 · 사업자 : 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 성실사업자에 대해 표준공제를 100만원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POS시스템 도입사업자 - 사업용계좌 개설 - 장부기장 -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가 없을 것 등 ※ 성실사업자 요건은 시행령에서

〈개정이유〉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한해 소득과약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소득법 §122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자기조정사업자</th> <th>외부조정사업자</th> </tr> </thead> <tbody> <tr> <td>도소매업 6억원 미만</td> <td>6억원 이상</td> </tr> <tr> <td>제조, 음식·숙박업 3억원 미만</td> <td>3억원 이상</td> </tr> <tr> <td>부동산임대, 서비스업 15억원 미만</td> <td>15억원 이상</td> </tr> </tbody> </table> 	자기조정사업자	외부조정사업자	도소매업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자기조정사업자	외부조정사업자								
도소매업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소득금액 증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3배 초과 - 소득금액은 전년대비 1배 초과 · 성실사업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업종에 따라 6~11% 이상 증가 - 적격 증빙에 의한 경비지출 비율이 80% 이상 - 장부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1.2배 초과 - (현행 유지) - (삭제) - (삭제) - (현행 유지) - 성실사업자 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 사업용계좌 개설 ·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가 없을 것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공제방법(다음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기준신장률 3~22%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해 100%, 다음 해 50% · 소득금액 계산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경비율(추계)에 의해 계산된 소득의 60% 적용 ■ 적용대상일몰시한 : '0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해년도에 공제 · (삭제) ■ (현행 유지)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채택과 관련하여 영세 자영업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

안 마련

- 성실사업자 과세특례제도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수준 조정 등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
-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④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국기법§81의5)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면제(정기조사시) 〈면제 대상 : 예시〉 ①+② ① 매출액 기준 : 개인 1.5억~6억원, 법인 5억원 이하인 사업자 (직전 3년 평균 기준) ② 성실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 POS시스템 도입 ii) 사업용 계좌 개설 iii) 장부기장 iv) 신용카드 사용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례가 없을 것 등

〈개정이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07.1.1 이후 시행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

- ⑤ 성실납세제도 도입
- ※ '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세법소위 계류중

4.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 정비

- 현재 비과세 · 감면제도는 총 226개, 19.9조원(총국세 대비 14.5%)으로 근로소득 특별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03년 이후 총국세 대비 감면세액 비중이 14%대로 상승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비과세 · 감면(조원)	13.7	14.7	17.5	18.3	19.9
□관련국세(조원)	88.6	96.4	107.5	110.2	118.1
□국세대비비중(%)	13.4	13.3	14.0	14.2	14.5

- 비과세 · 감면제도의 정비기준은
 - (연장대상)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R&D · 설비투자 촉진제도 및 근로자 · 농어민 ·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제도
 - (축소 · 폐지대상)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

한 제도 및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

- 비과세 · 감면제도 중 62개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하여 3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
- '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 중 28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27개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
- 일몰이 없는 제도 중 7개 제도를 '06년에 폐지 또는 축소

(I) '06년 일몰도래 감면제도 중 폐지 · 축소 대상

- ①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폐지(조특법§8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벤처(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 준비금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 후 나머지는 5년 후 일시환입 	〈폐지〉
* 미사용액은 이자상당액기산액과 함께 일시환입	

〈개정이유〉

- 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②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 폐지(조특법§28)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은 • 당해 사업연도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 3년거치 3년 균등환입 	〈폐지〉
* 3년내 미사용액은 이자상당기산액과 함께 일시익금 환입	
• 일몰시한 : '06.12.31	

〈개정이유〉

- 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폐지(조특법§9)

현행	개정안
<p>■ R&D 준비금 손금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금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부품소재산업 5%) • 지원내용(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금 적립시 소득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적립후 3년 이내에 실제 R&D투자에 사용할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환입 <p>* 3년내 미사용액은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일시 익금 환입</p>	<p>〈폐지〉</p>

〈개정이유〉

- 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 외국에서도 R&D 투자지원을 위해 준비금 손금산입 같은 과세이연제도를 운용하는 사례는 없음

④ 문화사업준비금제도 폐지(조특법§104의9)

현행	개정안
<p>■ 문화사업 영위 내국인은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전 및 투자 목적으로 문화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가능 • 문화사업의 범위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공연 관련산업, 게임 소프트웨어제작업 등 • 준비금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내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 <p>* 3년내 미사용액은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일시익금 환입</p> <p>• 일몰시한 : '06.12.31</p>	<p>〈폐지〉</p>

〈개정이유〉

- 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영화제작·배급업 및 비디오·방송물 제작·배급업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직접지원제도가 존재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폐지(조특법§30의2)

현행	개정안
<p>■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제조업, 물류업 등 21개 업종 • 세액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소득·법인세의 50~100%*를 감면 * 감면율 : 50%+(고용증가율×0.5) • 결손금 이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시 또는 설립등기 이후 2사업연도간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 7년간 이월공제 * 일반법인 : 5년간 이월공제 • 일몰시한 : '04.7.1~'06.12.31 	<p>〈폐지〉</p>

〈개정이유〉

- '05년 감면실적이 6억원에 불과하는 등 낮은 실효성을 감안하여 폐지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⑥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15)

현행	개정안
<p>■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 * 행사당시 시가 - 행사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의 종업원 • 양도시 취득가액 : 행사당시 시가 <p>※ 일몰시한 : 2006.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 과세로 전환 • (현행 유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배제는 계속 존치

〈개정이유〉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주식매수 선택권 자체가 인센티브인 점을 감안, 별도 세제지원 불필요
 - 부여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비용을 손금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존치
- 〈적용시기〉 2006.12.31 이전에 부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중전 규정 적용

⑦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조특법제 4,806호 부칙§17)

현행	개정안
<p>■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p>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한도 : 월 10만~12만원 - 저축기간 : 3년 또는 5년 - 단위 농·수협에서 취급 <p>• 일몰시한 : '06.12.31</p>	<p>〈폐지〉</p> <p>※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과 연계</p> <p>*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제출, '04.6.23) 이 국회에 계류중</p>

〈개정이유〉

- 사실상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⑧ 농협조합 등이 유통자회사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폐지(조특법§84)

현행	개정안
<p>■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가</p> <p>• 유통자회사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p> <p>• 일몰시한 : '06.12.31</p>	<p>〈폐지〉</p>

〈개정이유〉

-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없고, 농협등에서 유통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계획이 없어 제도를 존치할 실익이 낮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⑨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및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조특법§55의2)

현행	개정안
<p>■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 손실 보전을 위해</p> <p>• 2006.12.31까지 투자손실준비금 손금 산입*</p>	<p>〈폐지〉</p>

현행	개정안
<p>* 손금산입 한도</p> <p>Min { ①투자금액의 50% ②(7월 투자금액잔액 - 투자손실준비금잔액)</p> <p>■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p> <p>• 일몰시한 : '06.12.31</p>	<p>〈폐지〉</p>

〈개정이유〉

- 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촉진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및 출자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⑩ 투기지역 내 토지 수용시 양도세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85)

현행	개정안
<p>■ 투기지역 내 토지 수용시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p> <p>■ 일몰시한 : '06.12.31</p>	<p>〈폐지〉</p>

〈개정이유〉

- '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므로 기준시가 과세제도가 폐지되는 점을 감안

⑪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인지세 면제제도 폐지(조특법 §116①)

현행	개정안
<p>■ 농협조합원 등*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기재금액 5천만원 이내)</p> <p>*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p> <p>■ 농협조합원 등의 예금, 적금증서</p> <p>■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발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 건축용 자재 외상구입 서류</p> <p>■ 중소기업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금용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한 서류</p>	<p>〈폐지〉</p> <p>〈폐지〉</p> <p>〈폐지〉</p>

〈개정이유〉 납세자의 실제부담을 고려시 지원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폐지(조특법 §81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 잔여재산을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추징 면제 • 일몰시한 : '06.12.31 	〈폐지〉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 특례규정*이 '06년말 일몰시점에 폐지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폐지
- *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특례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폐지(조특법 §8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을 양도하고 1년내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 * 3년내 폐관·처분시 면제세액 추징 ■ 일몰시한 : '06.12.31 	〈폐지〉

〈개정이유〉

- 박물관 등의 이전으로 양도세를 감면받은 사례가 없고, 개인소유 박물관 등은 개인이 소유한 여타 부동산 처분과 다를 바 없어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 자경농민 등에게 증여·양도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양도세 면제 폐지(조특법 제5,584호 부칙§16)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년말 현재 농지 등의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06년까지 증여·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세 면제 	〈폐지〉

〈개정이유〉 불요불급한 비교세·감면 축소

* 증여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도 운용

- ** 양도의 경우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조특법§69) 및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조특법§70) 운용

- 간접투자기구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축소(조특법 §117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기구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 일몰기한 도래 폐지 • 공모펀드 일몰기한 2년 연장 ('08.12.31)후 폐지

〈개정이유〉

- 간접투자가 정착되어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등 당초 세제지원하려는 취지가 달성
- 다만, 일반국민의 건전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간접투자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모펀드에 대하여 일몰기한 연장

* 공모펀드 : 증권회사·은행 등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적립식펀드·뮤추얼펀드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공개모집하는 펀드

사모펀드 : 금융기관·외국펀드 등의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사모펀드 등 소수의 특정인을 투자자로 하는 펀드

〈적용시기〉 200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조특법§54, §55④)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일몰시한 : '06.12.31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개정이유〉

-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실효성이 감소되어 폐지

• CRC의 경우 CRC의 정착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 이

미 달성

- CRV의 경우 설립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 한시법으로서 '06.10월 법 자체가 실효
- CRF의 경우 제도도입 이래 설립된 CRF가 모두 존속기간 만료되어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등 지원의 실효성 감소

〈적용시기〉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연장(조특법§89의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한도 : 1인당 2천만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06 : 비과세 - '07년 : 5% - '08년부터 : 9%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시한을 3년 연장하되, 비과세한도 축소 • 비과세한도 : 1인당 1천만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 비과세 ◦ 1천만~2천만원 : 5% - '10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원 : 9% 분리과세

〈개정이유〉

- 농어민·서민에 대한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일몰연장
- 당초 지원취지와 다르게 저축이 운용*되고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불형평문제 등을 감안하여 한도를 축소

* 당초 농어민·서민지원 취지와는 달리 농·수협 등의 경우 농어민인 조합원의 저축은 17.2%('05년말 기준)에 불과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조정(조특법§91)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 - 1년 이상 보유 • 기준금액(법인별 액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액 하향 조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만원 이하 : 비과세 -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 다만, 지배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 *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 현행 세제지원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금융소득중합과세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점을 감안
- 장기투자 유도라는 지원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지배주주에 대한 지원을 배제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특례 기준금액 인하 및 일몰연장(조특법§9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기타소득 분리과세 특례 * 복권당첨소득, 경마·경륜·경정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 분리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금 5억원 이하 : 20% 세율로 원천징수 - 당첨금 5억원 초과분 : 30% 세율로 원천징수 • 2단계 초과 누진과세체계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 특례 기준금액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금 3억원 이하 : 20% 세율로 원천징수 - 당첨금 3억원 초과분 : 30% 세율로 원천징수 •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 불특정 다수인 복권당첨자 등의 납세편의를 감안해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을 2년 연장
- 30% 세율 적용 당첨금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고액당첨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축소·조정(조특법§73)

현행	개정안
<p>■ 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하는 기부금 (일몰시한: '06.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 * '06까지 75%, '07 이후 50% · 사립학교 운영 병원, 국립대학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대한적십자병원에 지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독립기념관, 국립암센터 	<p>■ 일몰연장: '09.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료원 추가 및 국립암센터 용도(시설비·교육비·연구비)제한
<p>■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한도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의 8% <p>일몰시한: 06.12.31</p>	<p>〈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법인도 일반 지정기부금단체와 같이 소득금액의 5% 한도로 일원화
<p>■ 근로복지공단(재)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한 자산가액 손금산입</p> <p>· 일몰시한: '06.12.31</p>	<p>〈폐지〉</p>

〈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 병원 등과 유사한 공공 의료법인인 지방 의료원을 특례 기부금 대상에 추가
 - 다른 공공의료법인과 의 형평을 감안하여 국립암센터에 대해서도 기부금 사용을 시설비 등을 위한 용도로 제한
 -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특례(소득금액의 5%→8%)는 '04.10.4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도입
 - * 예술의 전당, (재)정동극장, (재)서울예술단 등 주로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 일반 지정기부금 한도(소득금액의 5% 한도)만 인정하더라도 한도초과 사례가 거의 없음
 -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재)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하는 경비를 손금산입하는 특례는
 - 최근 5년 동안 출연실적이 없었고, 향후 대규모 출연 계획도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비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축소(조특법§74)

현행	개정안
<p>■ 다음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p>※ 일몰시한: '06.12.31</p>	<p>■ 일몰연장하되, 손금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7)→60(08)→50(09 이후) <p>※ 일몰연장: '08.12.31</p>
<p>■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p>※ 일몰시한: '06.12.31</p>	<p>※ 일몰연장: '09.12.31</p>

〈개정이유〉

-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 및 일반 비영리법인과 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은 수준(수익사업 소득의 50%)으로 축소할 필요
 - 다만, 농협중앙회 등이 수행하고 있는 농어민 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기금의 주식투자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당분간 계속 지원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유지 및 감면한도 신설(조특법 §71 및 조특법 제5,584호 부칙§15)

현행	개정안
<p>■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p>'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p> <p>* 농지(9,000평), 초지(45,000평) 산림지(90,000평)</p> <p>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p>	<p>■ 일몰시한을 '11.12.31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 등을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한도 추가 - 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액 1억 원까지 면제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후 5년내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 * 수용, 영농자녀의 사망 등 자경농민 요건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p>(신 설)</p>	<p>(현행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경농민의 요건 :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 증여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자경농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과세

〈개정이유〉

-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되, 양도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감면한도 · 감면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자가상승이 많이 발생한 경우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 방지

〈적용시기〉 2007.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축소(조특법§118제1항제10호)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 대상물품 : 재경부령 지정 · 감면율 : 85% · 일몰시한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 50%로 축소 ·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 영상산업 육성 및 연관 IT산업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TV 방송장비 관세감면기한을 연장
- 현재 디지털 방송시설이 수도권 · 광역시까지만 보급된 상태로 시 · 군 수준으로 확대 필요

■ 다만, 감면비율은 현행 85%에서 50%로 축소
 〈적용시기〉 2007.1.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축소 · 연장 등
 - ※ 중소기업 지원분야 참조
-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유지
 - ※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분야 참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
 - ※기업투자 활성화분야 참조
-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제한 연장 및 비과세기준금액 축소
 - ※ 근로자 세부담 경감분야 참조

(2) 일몰이 없는 감면제도 중 폐지 · 축소 대상

①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범위 조정(조특법§106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해당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민투법 사업시행자 · 도시철도공사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폐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부산교통공사는 제외 ·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발주하지 않고 있음
- 노후한 선로 등에 대한 개 · 보수 수준의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수준이므로 영세율을 유지할 실익이 적음
- * 부산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지자체가 아닌 부산교통공사에서 수행

〈적용시기〉 2007.1.1 이후 계약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농협중앙회 및 축협중앙회 합병에 따라 수령한 보조금 과세이연 특례 폐지(조특법§72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 축협 · 인삼협동조합이 합병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 해산된 축협중앙회의 결손보전 총당목적으로 정부 · 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4년거치 3년분할 균등액 이상 익금 산입 	<p>(폐 지)</p>

<개정이유>

■ 축협중앙회의 결손보전 충당목적의 보조금 지급이 '00~'01년에 이미 완료되어 정책목적 달성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

※ 소비과세제도 보완분야 참조

④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률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30%로 하향 조정

※ 기업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분야 참조

⑤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조정

※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분야 참조

⑥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서민 및 택시 등 운송업 지원분야 참조

⑦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폐지에 포함

5. 조세체계의 합리화·선진화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및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세법개정 추진
- 기업과세 및 국제조세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선
 - 법인세율 인하, 톤세제도 도입, 기업구조조정세제 정비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의 조세회피방지제도 등
-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친환경적 구조로 조정하기 위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 전산화 및 우범여행자·화물에 대한 위험관리기법 향상으로 통관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 화물통관시간(5.5일 → 4.5일), 여행자통관시간(40분 → 25분)
-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전산화하여 증빙서류 없는 연말정산 환경 구축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세법 개정 추진

- 기업경비관련 규정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비
- 기타소득금액을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타소득 신고절차를 간소화
- 복잡한 소득구분을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정비

(I) 소득과세제도 선진화

① 소득세제 간소화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종류(11개) • 종합소득(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부동산임대 - 일시재산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2개) • 산림소득(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소득공제 : 연 6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종류를 통폐합(9개) • 종합소득(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 기타소득으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 사업소득으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600만원 비과세

<개정이유>

■ 유사한 성격의 소득을 통·폐합하여 소득구분을 간소화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소득법§87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 과세제도 • 사업(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 적용대상 : 민법상 조합*,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 • 과세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장을 1가주자로 보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의 범위 명확화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일부는 출자만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지분을 보유 - 사업손익을 분배 • 적용대상: 상법상 익명조합* 추가 * 익명조합원은 출자만하고 영업이익을 분배받는 약정에 의하여 설립 • 과세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현행	개정안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사업소득) - 익명조합원의 경우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 * 종합과세시 25%와 비교과세	- 출자만 하는 자(익명조합원 등)의 이익분배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 * 당연 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

〈개정이유〉

-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익명조합원의 소득 노출을 유도하고 향후 출자자와 업무집행자가 구분되는 조합제도 도입 등에 대비
-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기존 익명조합은 2007.12까지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의무화)

③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소득법 §87, 소득영 §150)

현행	개정안
■ 공동사업장의 등록·신고와 관련 가산세 없음 ■ 공동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 소득금액 결정·경정 :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감가상각 방법 신고 등 각종 자료제출 :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설 • 사유 : 허위 등록(예: 공동사업을 개인으로 등록),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 허위신고, 변동내역 허위신고 등 • 가산세율 : 허위등록시 수입금액의 0.5%, 허위신고시 0.1% ■ 공동사업장 관할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일원화

〈개정이유〉

-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관할을 일원화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사유발생분부터 적용

(기존 사업장은 2007.12.31까지 사업자등록 정정 의무화)

④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76)

현행	개정안
■ 정치자금 세액공제 • 대상자 : 개인(사업자 포함) • 대상범위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공제방법 - 10만원 이내 : 전액 세액공제 *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인할 경우 기부금을 초과(1배)하여 공제(환급)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주민세를 포함하여 기부금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환급)되도록 조정 - (현행 유지)

〈개정이유〉

-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 기부시 주민세(1만원)도 같이 환급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액(10만원)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크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 해소
- 〈적용시기〉 200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세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 익금불산입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지회사</th> <th colspan="2">지주회사</th> </tr> <tr> <th>지분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상장법인</td> <td>100%</td> <td>100%</td> </tr> <tr> <td>40%~100% 미만</td> <td>90%</td> </tr> <tr> <td>30%~40% 이하</td> <td>60%</td> </tr> <tr> <td>30% 미만(일반법인)</td> <td>30%</td> </tr> <tr> <td rowspan="4">비상장법인</td> <td>100%</td> <td>100%</td> </tr> <tr> <td>80%~100% 미만</td> <td>90%</td> </tr> <tr> <td>50%~80% 이하</td> <td>60%</td> </tr> <tr> <td>50% 미만(일반법인)</td> <td>30%</td> </tr> </tbody> </table>	지회사	지주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법인	100%	100%	40%~100% 미만	90%	30%~40% 이하	60%	30% 미만(일반법인)	30%	비상장법인	100%	100%	80%~100% 미만	90%	50%~80% 이하	60%	50% 미만(일반법인)	30%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분율</th> <th>'07</th> <th>'08</th> <th>'09</th> </tr> </thead> <tbody> <tr> <td>40%~100% 미만 (비상장 : 80%~100% 미만)</td> <td>90%</td> <td>90%</td> <td>→ 90%</td> </tr> <tr> <td>30~40% 이하 (비상장 : 50~80% 이하)</td> <td>60%→ 70%</td> <td>70%→ 80%</td> <td>→ 80%</td> </tr> </tbody> </table>	지분율	'07	'08	'09	40%~100% 미만 (비상장 : 80%~100% 미만)	90%	90%	→ 90%	30~40% 이하 (비상장 : 50~80% 이하)	60%→ 70%	70%→ 80%	→ 80%
지회사		지주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법인	100%	100%																																		
	40%~100% 미만	90%																																		
	30%~40% 이하	60%																																		
	30% 미만(일반법인)	30%																																		
비상장법인	100%	100%																																		
	80%~100% 미만	90%																																		
	50%~80% 이하	60%																																		
	50% 미만(일반법인)	30%																																		
지분율	'07	'08	'09																																	
40%~100% 미만 (비상장 : 80%~100% 미만)	90%	90%	→ 90%																																	
30~40% 이하 (비상장 : 50~80% 이하)	60%→ 70%	70%→ 80%	→ 80%																																	

<개정이유>

- 기업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익금불산입률제도 정비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②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 (법인세법§18)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 수입배당금의 90%를 익금불산입 *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10%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자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수입배당금의 30% 익금불산입)

<개정이유>

- 지분율이 10% 미만인 기관투자자에 대해 90%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익금불산입률을 높게 적용하는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문제 해소
 - * 지분율이 높은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 간 동일성이 높아 이중과세조정의 당위성도 더 커짐
-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③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법인영§4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대비의 범위 •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고객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고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비 인정

<개정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의 경우 판매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비과세제도 보완

① 교통세법 명칭·목적 변경 및 유효기간연장(교통세법 §1, 부칙)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세법 ■ 유효기간 : '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유효기간 연장 : '09.12.31

<개정이유>

- '06년말로 종료되는 교통세를 목적세로 유지하되 에너지, 환경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세법의 명칭 및 목적 변경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을 3년 연장

②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조특법§106의2 ⑤·⑥)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 등이 •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외 사용시 * 농·어민, 임업종사자 •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 이외의 자가 • 농·어민 등으로부터 양수받은 경우 감면세액 및 가산세 징수 •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 2년 이내 3회 이상 추징시 • 5년 이내 추징세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 1회 적발시

<개정이유>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적용시기> 200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③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범위조정(조특법 §108)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 고철·폐지 등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의 8/108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 취득가액의 6/106 - 판매가액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허용 * 80%(국세청 조사실적 등을 감안) • 일몰시한 : '0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업의 매입세액공제를 축소 및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부당매입세액 공제 방지
<적용시기> 200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납세편의 제고

①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절차 간소화(소득법§145, 영§130)

현행	개정안
<p>■ 강연료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 기타소득* 신고 절차</p> <p>* 복권당첨금, 경마 환급금 등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p> <p>• 납세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p> <p>•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담</p> <p>* 무신고시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시 산출세액의 10%</p> <p>■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p>	<p>■ 강연료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 기타소득 신고 절차 간소화</p> <p>• 국세청이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기타 소득금액을 홈텍스서비스(HTS)를 통해 제공</p> <p>• 납세자는 홈텍스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신고</p> <p>•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안내된 자료에 변동이 있어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p> <p>■ 기타소득이 100만원(필요경비공제시 2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생략가능</p>

<개정이유>
 ■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
 <적용시기> 2007.1.1 이후 확정신고(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부가법§4③)

현행	개정안
<p>■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p> <p>•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ERP시스템을 갖추고 과세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가능</p> <p>• 사업자 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등록,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p>	<p>■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p> <p>• (현행과 동일)</p> <p>•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일하며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등록번호로 발행</p>

<개정이유>

■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교부를 사업자의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8.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③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소득법§127①)

현행	개정안
<p>■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p> <p>•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20%) 부담</p> <p>* 뇌물, 알선·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예외</p>	<p>•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p>

<개정이유> 과도한 납세협력의무 이행 완화
 <적용시기> 2007.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④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소득법§16·17)

현행	개정안
<p>■ 투자신탁이익은 신탁에 편입된 자산 비중에 따라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p> <p>• 이자소득 : 신탁자산 중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이 50% 이상</p> <p>• 배당소득 : 신탁자산 중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이 50% 초과</p>	<p>■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p> <p>• 신탁에 편입된 자산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p>

<개정이유>
 ■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세상 차이없이 세제의 복잡성만 초래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⑤ 남북왕래자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291)

현행	개정안
<p>■ 신고생략 및 간이신고 가능</p> <p>• 대상물품 : 휴대품, 탁송품, 우편물 등</p>	<p>• (현행과 동일)</p> <p>• 남북한 정기왕래자의 반복적 휴대 직업용구 추가</p>

<개정이유>

- 남북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종사자 중 직업용구를 휴대하여 반입·반출 하는 경우 신고절차 생략 가능
<적용시기> 2007.4.1 부터 시행

⑥ 전기 등 연속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근거 신설(관세법§241의1)

현행	개정안
<신설>	■ 전기, 가스 등 배관을 통한 연속적 공급물품에 대한 월별 반출입 신고제 도입

<개정이유>

- 개성공단 등에 공급되는 전기·가스·용수 등에 대하여 월별 일괄 반출입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통관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007.4.1 부터 시행

⑦ 외국차량을 내국차량으로 자격변경할 수 있는 근거 신설(관세법§144)

현행	개정안
■ 외국무역선(기)은 세관장 승인으로 내항선(기)으로 자격 변경 가능	■ 외국 차량(철도, 도로) 추가

<개정이유>

- 남북통과열차, 국제특급열차 등 외국차량의 원활한 국내운행을 위해 자격변경절차에 대한 근거규정 필요
* 자격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국차량의 승객들은 통관역에서 하차하여 내국차량에 재탑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적용시기> 2007.4.1 부터 시행

⑧ 관세법인제도 도입(관세사법 §17)

현행	개정안
■ 관세사업(통관업)의 주체 • 개인 관세사 • 관세사법인(합명회사) • 통관취급법인	■ 관세사업(통관업)의 주체 • (현행 유지) • 관세법인(유한회사) • (현행 유지)

<개정이유>

- 관세사업의 대형화를 통해 관세 및 통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화를 유도할 필요

<적용시기> 2007.1.1 이후부터

⑨ 관세사 의무 보수교육제도 폐지(관세사법§23)

현행	개정안
■ 관세사의 보수교육 • 등록관세사는 관세사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폐지>

<개정이유> 관세사의 교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007.1.1 이후 관세사 교육 실시분부터 적용

IV. 향후 추진일정

-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 심의(8.21)
- 차관회의(9.14, 예정)
- 국무회의(9.19, 예정)
- 국회제출(9.28, 예정)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보고서-

이 자료는 2006년 8월 31일 발표된 『비전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8. 30(수) 180여명의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비전 2030 보고회'를 개최하여
 -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시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으로서
 -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처하고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수립된 것임
- 향후 정부는 '함께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여론수렴을 거쳐 비전 20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비전 2030 보고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 '06. 8. 30(수),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3층)
- 주관 :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 참석자 :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 총 180여명
- 안건 :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 비전 2030의 의미 】

① 지금 우리 사회는 선진국을 향한 중대 기로에 직면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2008년경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
 - 그러나 복지지출은 선진국 대비 1/3 수준,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또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직면
 - 집 문제·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애 낳기 겁나고, 노후도 불안
 -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집안 전체가 빈곤층으로 추락
 - 패자부활의 기회가 사라져 가난이 대물림될 가능성

② 이제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 전략 필요

- 복지 없이는 성장 없고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음
-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 미래에는 사람이 경쟁력, 복지투자는 사람을 키우는 투자
 - '물적 자본 위주 재정'에서 '사람 중심 재정'으로 전환

- 경제예산은 생산적이고 복지예산은 낭비적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할 필요

- 이대로 가면 미래는 없음, 동반성장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③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은 오랜 작업 끝에 내놓는 국가 장기종합전략

- 비전 2030은 60여명의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내놓은 결과

-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서 희망한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 중점

④ 비전 2030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

- 미래 준비는 국가의 책임, 할 일은 하는 정부, 미래를 설계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

- * 미리 준비하지 못해 지금 저출산, 연금문제 등에 직면

- 저출산 문제 : '83년 이미 출산율 2.08명 → 현재 세계 최저 1.08명

- 국민연금 : 최초설계 잘못, '90년대 후반부터 문제제기 → 논의만 무성, 해결책 담보

- 일본, 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도 10~30년의 국가 장기계획을 통해 미래 대비

- * 일본 : A New Era of Dynamism(2030년까지의 장기 계획), 중국 : 2020년 全面的小康國家 등

⑤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비전 2030 성공의 관건

- 비전 2030! 불가능한 일은 아님

-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비전 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 필요

【 주요 특징 】

①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

- 현재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종합전략

-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미래 대비 관련 논의를 포괄·종합

② 제도혁신을 전제로 투자 확대

- 제도혁신이 없는 투자 확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

- 잘못 설계된 복지제도 유지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재정을 투입해도 복지 체감도는 제자리 수준

- * 재정위험 사전 제거 : 국민연금, 직역연금 개혁 등 효율성 제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③ 복지투자는 확대되나, 2030년에 현재의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

- 복지지출*은 2020년경에 '01년 미국·일본 수준, 2030년에 '01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

- *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중앙정부·지방체 복지지출+사회보험)

- 경제분야 투자는 민간역할 강화를 통해 지속 추진

④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비전 2030 추진

- 2010년까지는 세금인상 없이 지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및 과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충당

-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 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 필요

【 비전 2030 주요내용 】

1. 추진 배경 및 경위

- (상황인식) 현재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 기로에 위치
- 인구감소가 시작되기 前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
 - * 생산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저성장과 분배악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
- 그러나 경제·사회·문화를 망라한 제도혁신의 밑거름을 설계하고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은 미흡
- (비전 수립의 필요성)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종합적 대책을 수립, 체계적인 대응 시급
- 비전 제시와 함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비전 수립 과정)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논의와 견수립 과정을 거쳐 「비전 2030」을 수립
 -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 시작
 - * 역동과 기회의 한국('03~'04), 동반성장 비전과 전략('05~'06) 등
 - '05. 6월부터 「비전 2030」 수립을 본격 추진
 - 60여명의 전문가로 민간작업단 구성('05.7)
 - 설문조사('06.1),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06.8) 등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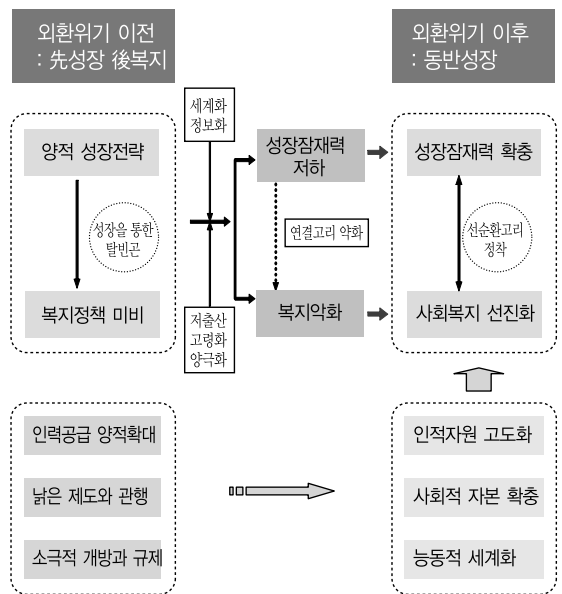
2.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패러다임 전환) '先성장 後복지' 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성장 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분배개선도 곤란

⇒ 동전의 양면관계인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 으로 전환

	기존 패러다임	동반성장 패러다임
• 추진 배경	탈빈곤, 성장과 분배의 고리 작동	양극화 심화, 성장과 분배의 고리 약화
• 정부 역할	성장에 집중	성장과 복지의 조화
• 성장 전략	양적 투입 위주·불균형 성장, 정부 주도	혁신주도형·균형 성장, 시장 주도
• 복지 전략	가족·공동체에 의존, 구조적 복지	정부의 역할 제고, 미래를 위한 투자
• 투자 중점	物的 자본	人的·社會的 자본*

* 사회적 자본 :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 개방성 및 이를 촉진하는 제도·규범·네트워크 등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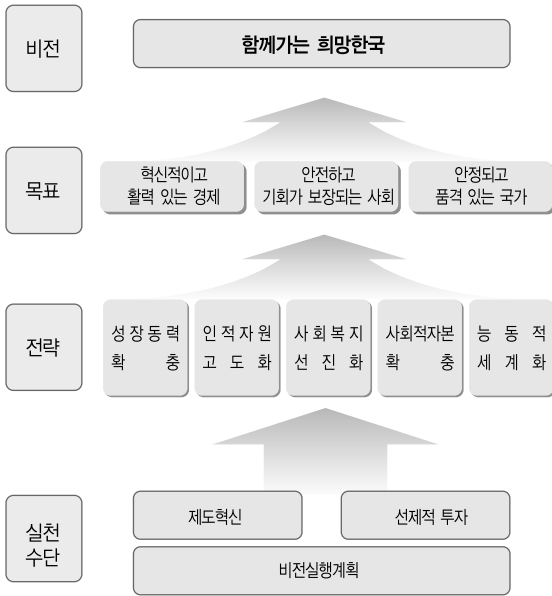


3. 2030 한국의 구상

■ (비전) 「함께가는 희망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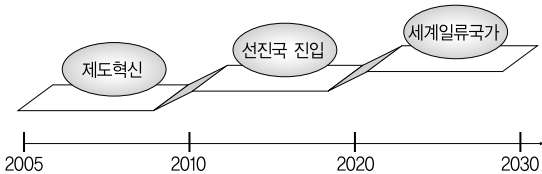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국민 누구나 '희망' 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 건설

〈 비전 2030 체계도 〉



4. 비전 실현을 통한 미래의 모습

- 비전 실현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 달성
 - (제도혁신)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경제·사회 제도의 혁신을 2010년까지 마무리
 - (선진국 진입)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
 - (세계 일류국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 1인당 GDP와 삶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
 - 1인당 GDP는 '30년 4만 9천불로서 현재의 스위스 수

준 도달

- * 잠재성장률(장기재정전망팀 추계) '06~'10년 : 4.9%, '11~'20년 : 4.3%, '21~'30년 : 2.8%
- 삶의 질 순위는 '30년 10위로서 현재의 미국 수준 추월

지표명	'05년	'10년	'20년	'30년	비 고('05 기준)
• 규모 GDP ¹⁾ (십억불)	788 (788)	1,122 (1,262)	1,824 (2,567)	2,406 (4,145)	· 미국 12,486 일본 4,571 · 영국 2,201 이태리 1,766
• 1인당 GDP ¹⁾ (천불)	16 (16)	23 (26)	37 (51)	49 (84)	· 스위스 50 미국 42 · 일본 36 프랑스 34
• 국가경쟁력(순위, MD)	29	20	15	10	· 미국 1위 싱가포르 3위 · 스위스 8위 일본 21위
• 삶의 질(순위, MD)	41	30	20	10	· 호주 1위 스위스 4위 · 미국 14위 일본 35위

1) 2005년 불변가격 기준, () 안은 경상가격 기준

5. 달라지는 미래 국민생활의 모습

■ 계층별·연령별 미래 모습

* 숫자는 ('05) → ('10) → ('20)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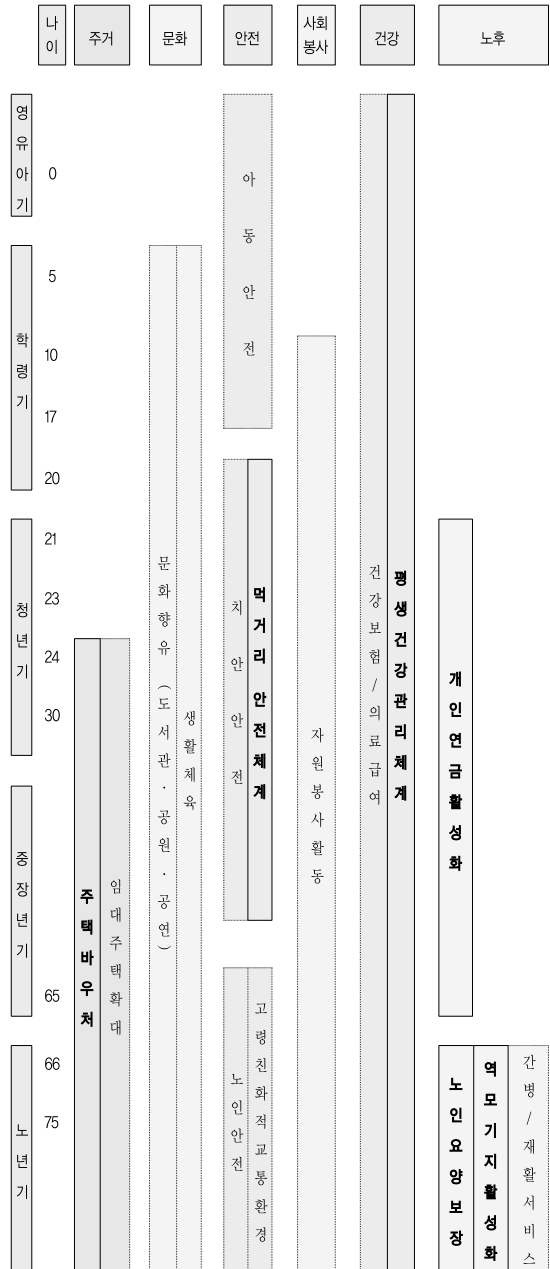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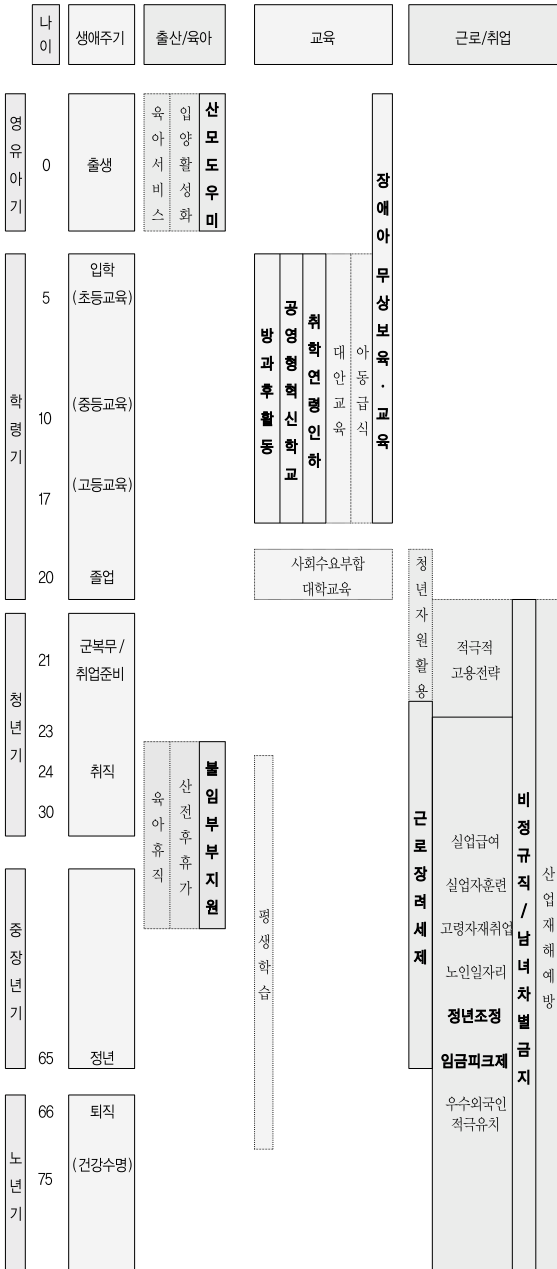
	20대	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 국 민				노인, 2/3가 연금혜택 받는다 * 연금수급률 17 → 30 → 47 → 66%
				치매·중풍노인, 사회에서 책임진다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11 → 35 → 70 → 100% * 장기요양대상수(인구천명당) 0.5 → 1.5 → 3 → 4개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			
	* 건강보험 보장률 66 → 72 → 80 → 86%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4 → 10 → 15 → 20%			
	* 삶의 질(MD, 60개국) 41 → 30 → 20 → 10위			
	* 공공임대주택 비율 5.1 → 10.1 → 16 → 16%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 국민문화향유율 (03) 62 → 70 → 90 → 96%			
	* 공공도서관 1인당 인구수 9만 → 5만 → 4.5만 → 4만			
투명하고 상부상조하는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다				
* 청렴도 지수(TI, 159개국) 40 → 25 → 10 → 5위				
* 자원봉사 참여율 15 → 20 → 30 → 50%				
* 5대 범죄 발생대비 검거율 72.6 → 73 → 75 → 77%				

	20대	30대	40~50대	60대 이상
근로자	고용,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다 * 평생학습 참여율 (04 22 → 30 → 40 → 50%) * 고용률 63.7 → 67 → 70 → 72%			
	비정규직,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63 → 70 → 80 → 85%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 0.77 → 0.58 → 0.37 → 0.24%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 * 연간살근로시간 2,366 → 2,300 → 2,166 → 2,033시간			
	실업, 재기의 기회가 확대된다 * 실업자훈련 참여자취업을 50 → 51 → 60 → 65%			
기업인	협력적 노사관계,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56 → 42 → 26 → 15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IMD, 60개국) 30 → 25 → 20 → 10위			
	공정한 시장경쟁, 대학연구성과,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 * 신학년 지식이전 정도(IMD, 60개국) 21 → 15 → 10 → 5위 우리 기술과 상품,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다 * 부품개발 기술수준(일본=100) 84 → 94 → 98 → 105 * 혁신형 중소기업 1 → 3 → 6 → 92개 * 세계 일류상품 505 → 1,000 → 1,550 → 2,000개			
학생 / 청소년	우리 아이들,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공부한다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2 → 30 → 27 → 23명 방과후 아이들, 사교육비 부담없이 안심하고 맡긴다 * 방과후 활동 수혜율 32 → 67 → 72 → 75% 우리 아이들, 사고없이 안전하게 성장한다 * 아동안전사고율(10만명당) 8.3 → 7.3 → 6.0 → 5.0명			
	학교에서 배운 지식,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다 * 대학교육 사회부합도(IMD, 60개국) 52 → 40 → 20 → 10위			
여성 / 맞벌이 부부	일하는 여성, 남녀차별 없이 능력으로 인정 받는다 * 여성권척도(UNDP, 80개국) 50 → 45 → 30 → 20위 아이, 건강하게 낳아 걱정없이 키운다 * 영아사망률(천명당) (025.3 → 45 → 40 → 3.0명) * 육아서비스 수혜율 47 → 65 → 67 → 74%			

	20대	30대	40~50대	60대 이상
장애인	장애인, 원하는 직업에서 자아를 실현한다 * 장애인 실고용률 (04 13 → 17 → 25 → 3.0%) *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상용근로자 대비) 445 → 50 → 75 → 90% 신속하고 편리하게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국공립 장애인 재활병원수 1 → 7 → 16 → 32개소 더 이상 이동과 정보이용에 불편은 없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2.7 → 82 → 95 → 100% *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36 → 50 → 95 → 100%			
	저소득층의 생활, 국가가 보장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0) 23 → 18 → 9 → 0%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3,800 → 3,320 → 2,160 → 1,000명			
야어업인	농어업인, 일하기 좋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40 → 64 → 76 → 80% 규모화·전문화로 농어업 경쟁력이 확보된다 * 쌀전업 농가생산비중 30 → 41 → 60 → 79% * 수산자원량 790 → 880 → 1,000 → 1,000만톤			

■ 비전 2030에 따른 미래둥이 가족의 모습

* 굵은 글씨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도입되었거나 도입 추진중인 지원 프로그램



6. 비전 실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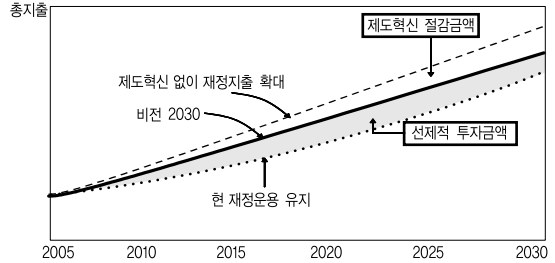
- (비전 실현수단) '함께가는 희망한국'의 비전과 전략은 제도혁신 · 선제적 투자와 비전실행계획을 통해 실현
- 제도혁신 · 선제적 투자
 - 제도혁신 : 경제 · 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
 - 제도혁신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입 불가능
 - 선제적 투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 분야,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
 - 선제적 투자 없이는 바람직한 미래의 조기실현 곤란

〈 주요 제도혁신 및 선제적 투자 과제 〉

제도혁신	선제적 투자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청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 학제 개편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 국민 · 지역연금 개혁	• 보육서비스 · 방과후 활동 확대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근로장려세제(ETC) 도입
• FTA 체결 확대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비전 실행계획 : 5대 전략별로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표, 국제비교를 포함하는 실행계획(Vision Action Plan) 수립 · 시행
- (재정투자 방향)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되, 제도혁신을 통해 지출증가를 최소화
-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R&D, 고등교육 부문 투자 강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 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圖式 〉



7. 재정전망

- 추가 재원소요 : 총 GDP의 2% 수준

· GDP 대비 연평균 추가소요	'06~'10년	'11~'30년
	0.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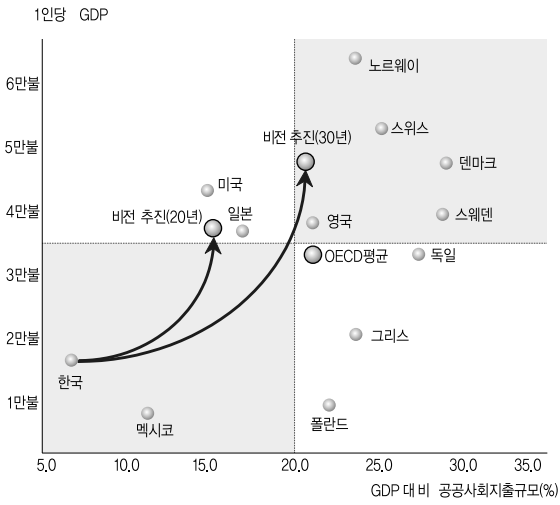
-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

- ① (2010년까지) 추가적인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 비과세 · 감면 축소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 충당
- ② (2011년 이후)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 필요
 - * 현재의 복지지출수준 유지시 빈곤의 대물림, 노후불안, 출산기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통합 저해 및 개인의 불안감 증가 우려

8. 외국수준과 비교한 2030 희망한국의 모습

- 2030년 1인당 GDP는 '05년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복지지출 규모는 '01년 OECD 평균에 도달
- (1인당 GDP)
 - '20년 37천불('05년 불변가격), '30년 49천불로 '05년 스위스 수준 도달
- (복지지출 규모)
 - '06년~'30년간 연평균 9.8%씩 증가하여 '19년 15%('01년 미국 수준), '24년 17%('01년 일본 수준)

도달
 ◦ '30년에 21%로 '01년 OECD 평균(21.2%)에 이를 전
 망



* 1인당 GDP('05년 기준 ; IMF, World Economic Outlook('06.4))
 공공사회지출규모('01년 기준 ; OECD, Social Indicators('05))

| 재정통계 |



■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0%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단위: %)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호주	21.7	-	-	-	-	22.4	12.3	-	-	-
오스트리아	29.9	-	-	-	-	30.6	-	-	-	-
벨기에	24.0	-	-	-	-	26.5	-	-	-	-
캐나다	21.4	-	-	-	-	23.8	-	-	-	-
체코	-	-	-	-	-	-	-	-	-	-
덴마크	23.4	-	-	-	-	25.4	-	-	-	-
핀란드	26.9	-	-	-	-	27.7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30.8	-	-	-	-	31.3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23.6	-	-	-	-	20.5	-	-	-	-
이탈리아	30.5	-	-	-	-	34.4	-	-	-	-
일본	17.1	-	-	-	-	18.2	-	-	-	-
한국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26.3	-	-	-	-	30.1	-	-	-	-
뉴질랜드	26.7	-	-	-	-	27.3	-	-	-	-
노르웨이	28.3	-	-	-	-	31.2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15.4	-	-	-	-	16.3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스페인	-	-	-	-	-	14.0	-	-	-	-
스웨덴	25.5	-	-	-	-	27.2	-	-	-	-
스위스	19.2	-	-	-	-	21.2	-	-	-	-
터키	11.9	-	-	-	-	11.5	-	-	-	-
영국	29.7	-	-	-	-	28.5	-	-	-	-
미국	23.6	-	-	-	-	26.5	-	-	-	-
OECD TOTAL ¹⁾	24.0	-	-	-	-	24.7	-	-	-	-
OECD AMERICA ¹⁾	22.5	-	-	-	-	25.2	-	-	-	-
OECD PACIFIC ²⁾	21.8	-	-	-	-	22.6	-	-	-	-
OECD EUROPE ³⁾	24.7	-	-	-	-	25.1	-	-	-	-
EUROPEAN UNION (15) ⁴⁾	26.0	-	-	-	-	26.0	-	-	-	-
EUROPEAN UNION (19) ⁵⁾	26.0	-	-	-	-	26.0	-	-	-	-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의 계속

(단위: %)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호주	21.7	20.8	21.4	21.4	21.7	22.2	23.0	22.4	23.5	25.8
오스트리아	33.9	34.6	34.5	34.5	35.0	33.9	34.6	35.0	35.2	36.1
벨기에	31.1	33.3	33.9	34.8	34.9	34.8	36.0	35.8	37.0	37.9
캐나다	25.6	26.7	27.7	28.5	30.8	30.8	30.3	30.8	30.3	32.7
체코	-	-	-	-	-	-	-	-	-	-
덴마크	29.9	31.8	32.3	35.1	34.7	39.2	42.2	41.6	41.1	42.9
핀란드	30.4	31.6	32.4	32.8	31.4	32.0	33.6	34.1	35.0	34.2
프랑스	34.5	34.3	34.7	34.9	35.8	33.7	33.2	33.6	33.6	34.1
독일	31.6	32.2	32.2	32.2	33.9	32.3	32.9	34.2	35.7	35.7
그리스	19.9	21.4	22.4	23.2	22.9	22.4	22.2	22.0	20.3	21.3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26.2	-	-	-	-	27.3	-	-	-	-
아일랜드	24.9	26.9	27.5	27.9	28.6	28.8	29.8	28.6	28.7	29.2
이탈리아	25.5	25.3	26.2	27.0	26.4	26.1	26.8	26.7	24.4	25.7
일본	18.2	17.7	18.1	18.4	18.7	19.6	19.9	20.6	22.3	22.9
한국	-	-	-	-	-	-	-	12.5	12.1	13.3
룩셈부르크	27.7	27.4	28.1	27.2	27.3	26.8	29.4	30.0	30.4	31.4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32.8	34.2	35.2	35.9	34.7	35.6	37.2	38.4	39.6	40.2
뉴질랜드	24.0	24.7	26.7	23.2	24.3	26.0	24.9	26.5	27.2	30.4
노르웨이	29.6	30.8	32.6	33.5	34.8	34.4	37.1	39.1	39.6	39.1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15.8	16.3	17.0	17.0	17.7	19.4	19.1	18.9	18.4	18.9
슬로바키아	-	-	-	-	-	-	-	-	-	-
스페인	14.7	13.6	16.9	16.1	16.4	15.8	16.0	16.9	17.5	16.9
스웨덴	35.0	35.8	36.7	38.8	39.8	38.5	39.3	40.7	39.8	41.0
스위스	19.6	20.3	20.4	21.4	22.4	22.2	21.9	22.2	24.4	25.4
터키	10.6	10.7	11.4	11.3	12.2	12.5	14.3	14.6	15.2	14.1
영국	30.4	31.2	33.1	34.3	36.0	37.0	35.1	33.4	31.4	34.5
미국	24.7	25.0	26.1	25.5	27.9	27.0	25.0	25.6	25.5	26.2
OECD TOTAL ¹⁾	25.8	26.4	27.3	27.6	28.2	28.3	28.9	28.5	28.7	29.6
OECD AMERICA ¹⁾	25.2	25.8	26.9	27.0	29.4	28.9	27.7	28.2	27.9	29.5
OECD PACIFIC ¹⁾	21.3	21.1	22.1	21.0	21.6	22.6	22.6	20.5	21.3	23.1
OECD EUROPE ¹⁾	26.5	27.3	28.2	28.8	29.2	29.1	30.0	30.3	30.4	31.0
EUROPEAN UNION (15) ¹⁾	27.9	28.7	29.5	30.1	30.4	30.4	31.2	31.3	31.2	32.0
EUROPEAN UNION (19) ¹⁾	27.9	28.7	29.5	30.1	30.4	30.4	31.2	31.3	31.2	32.0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의 계속

(단위: %)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호주	26.5	26.8	26.6	25.6	26.2	27.3	27.6	28.1	27.3	28.9
오스트리아	36.7	36.5	36.9	39.1	38.5	39.0	40.1	38.9	38.5	40.3
벨기에	40.6	40.8	42.8	43.4	44.2	42.4	42.7	44.0	44.7	45.5
캐나다	31.9	31.5	30.6	30.3	30.1	30.9	33.2	33.0	32.5	32.6
체코	-	-	-	-	-	-	-	-	-	-
덴마크	40.0	40.3	40.6	42.1	43.2	43.9	43.7	42.8	44.8	46.1
핀란드	36.8	40.6	40.7	37.2	35.9	36.2	38.2	37.4	37.0	38.5
프랑스	35.5	37.2	37.2	37.1	38.7	40.2	40.4	41.2	41.4	42.4
독일	35.3	36.1	37.4	37.2	37.1	37.5	37.0	36.8	36.6	36.8
그리스	21.8	23.7	24.0	24.0	24.8	24.2	24.3	27.5	27.9	28.6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29.8	-	-	-	-	29.5	30.5	30.8	28.4	29.9
아일랜드	29.1	32.2	30.7	29.1	28.7	31.4	32.5	33.9	35.3	36.1
이탈리아	26.1	27.1	27.6	27.8	26.9	30.4	31.6	33.8	35.8	34.9
일본	20.9	21.7	22.3	23.9	24.4	25.4	26.1	26.4	27.0	27.0
한국	15.1	16.3	16.3	16.8	17.1	17.2	17.0	17.3	17.7	16.8
룩셈부르크	37.5	37.7	41.7	42.5	39.8	40.8	41.9	43.3	45.6	43.9
멕시코	-	-	-	-	-	16.2	15.7	16.0	17.9	17.4
네덜란드	41.3	41.4	41.9	42.6	43.1	43.6	42.9	43.4	44.4	42.9
뉴질랜드	28.5	29.2	32.3	30.1	30.8	30.6	32.1	33.0	30.6	30.2
노르웨이	39.3	40.7	41.4	41.1	41.0	42.5	44.2	43.4	42.3	41.5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20.8	22.6	23.0	22.2	21.9	24.1	25.5	26.2	27.6	27.1
슬로바키아	-	-	-	-	-	-	-	-	-	-
스페인	18.2	18.2	20.0	21.3	21.8	22.4	23.6	23.9	25.8	27.1
스웨덴	42.0	46.1	48.3	48.7	47.4	47.3	48.6	47.6	48.2	47.8
스위스	27.4	28.9	29.2	29.2	28.7	28.5	28.5	29.2	30.0	30.0
터키	16.0	16.3	17.1	16.6	15.7	17.9	19.0	18.4	17.2	14.3
영국	35.3	35.1	34.6	33.0	32.2	35.2	36.7	39.1	37.4	37.6
미국	25.6	24.9	26.1	25.8	26.0	26.4	26.8	27.0	24.9	24.9
OECD TOTAL ¹⁾	30.3	31.3	32.1	31.9	31.8	32.0	32.7	33.2	33.3	33.4
OECD AMERICA ¹⁾	28.8	28.2	28.4	28.1	28.1	24.5	25.3	25.3	25.1	25.0
OECD PACIFIC ²⁾	22.7	23.5	24.4	24.1	24.6	25.1	25.7	26.2	25.6	25.7
OECD EUROPE ³⁾	32.1	33.4	34.2	34.1	33.9	34.6	35.4	35.9	36.3	36.4
EUROPEAN UNION (15) ⁴⁾	33.1	34.4	35.2	35.1	35.0	35.9	36.7	37.3	38.1	38.4
EUROPEAN UNION (19) ⁵⁾	33.1	34.4	35.2	35.1	35.0	35.9	36.7	37.3	38.1	38.4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의 계속

(단위: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호주	29.1	29.9	29.9	29.6	29.4	29.3	27.7	27.2	27.8	28.9
오스트리아	40.9	40.9	40.5	40.4	39.4	39.6	40.0	41.4	41.9	41.7
벨기에	45.6	45.3	46.0	44.6	42.7	43.2	43.4	43.0	44.5	44.8
캐나다	32.5	33.2	34.2	33.7	34.8	35.9	36.4	36.0	35.4	35.2
체코	-	-	-	-	-	-	-	-	40.4	38.9
덴마크	47.4	49.3	50.0	50.4	49.3	47.7	47.1	47.6	48.6	49.5
핀란드	40.2	41.7	40.0	43.2	43.0	44.3	46.0	45.5	44.9	47.0
프랑스	42.4	42.1	42.6	41.9	41.9	42.2	42.6	42.0	42.3	42.8
독일	37.2	36.8	37.0	36.8	37.2	35.7	36.0	37.0	37.0	37.2
그리스	28.6	30.0	30.5	27.6	26.7	29.3	29.4	30.4	30.9	31.2
헝가리	-	-	-	-	-	-	45.9	45.7	46.5	44.0
아이슬란드	28.7	28.7	29.1	31.8	32.7	31.8	32.1	33.0	31.9	31.5
아일랜드	35.0	35.8	36.0	37.2	33.9	33.5	34.1	34.4	34.4	35.5
이탈리아	34.4	35.9	36.1	36.7	37.8	38.9	39.3	41.7	43.4	41.4
일본	27.4	28.1	29.3	29.5	29.9	29.1	28.7	27.0	27.0	26.0
한국	16.4	16.0	16.4	16.4	17.3	18.9	18.5	18.5	19.0	19.4
룩셈부르크	45.1	42.8	43.0	41.5	40.5	40.8	39.1	39.6	41.9	42.0
멕시코	17.0	16.2	17.2	16.6	17.2	17.3	17.3	17.6	17.7	17.2
네덜란드	42.8	43.4	45.7	45.8	43.1	42.9	45.3	45.1	45.4	43.4
뉴질랜드	31.3	32.0	35.8	34.9	38.3	37.7	35.9	36.2	36.2	36.8
노르웨이	43.0	45.2	43.4	42.8	41.1	41.5	41.4	40.7	39.8	41.0
폴란드	-	-	-	-	-	-	34.8	35.7	39.7	37.8
포르투갈	26.6	28.0	26.4	28.2	29.0	29.2	30.3	32.4	30.9	31.7
슬로바키아	-	-	-	-	-	-	-	-	-	-
스페인	26.9	28.7	30.5	30.6	32.3	32.1	32.4	33.4	32.5	32.5
스웨덴	48.2	50.4	53.1	52.4	52.9	53.2	50.7	48.1	46.9	47.3
스위스	26.1	27.1	26.8	27.1	26.3	26.0	25.7	26.2	26.7	27.2
터키	15.4	17.5	18.8	17.8	18.7	20.0	21.0	22.4	22.7	22.2
영국	37.7	38.2	36.9	37.0	36.4	36.5	35.3	34.3	33.2	33.8
미국	25.6	25.5	26.5	26.3	26.6	27.3	27.1	26.9	27.1	27.5
OECD TOTAL ¹⁾	33.5	34.2	34.7	34.6	34.5	34.8	35.1	35.3	35.7	35.7
OECD AMERICA ¹⁾	25.0	25.0	26.0	25.5	26.2	26.8	26.9	26.8	26.7	26.7
OECD PACIFIC ¹⁾	26.0	26.5	27.8	27.6	28.7	28.7	27.7	27.2	27.5	27.8
OECD EUROPE ¹⁾	36.4	37.3	37.5	37.6	37.1	37.3	37.7	38.1	38.5	38.4
EUROPEAN UNION (15) ¹⁾	38.6	39.3	39.6	39.6	39.1	39.3	39.4	39.7	39.9	40.1
EUROPEAN UNION (19) ¹⁾	38.6	39.3	39.6	39.6	39.1	39.3	39.5	39.8	40.3	40.1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의 계속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호주	29.8	30.4	30.2	30.9	31.6	32.1	30.5	31.4	31.6	-
오스트리아	41.1	42.4	43.9	43.9	43.6	42.6	44.6	43.6	43.1	42.9
벨기에	44.8	45.0	45.4	46.2	45.7	45.7	45.8	46.2	45.4	45.6
캐나다	35.6	35.9	36.7	36.7	36.4	35.6	34.9	34.0	33.8	33.0
체코	37.5	36.5	36.9	35.5	36.5	36.0	36.2	37.1	37.7	37.6
덴마크	49.5	49.8	49.6	49.8	50.5	50.1	49.1	48.7	48.3	49.6
핀란드	46.0	47.3	46.5	46.4	46.8	48.0	46.0	45.8	44.8	44.3
프랑스	42.9	44.1	44.3	44.2	45.2	44.4	44.0	43.4	43.4	43.7
독일	37.2	36.5	36.2	36.4	37.1	37.2	36.1	35.4	35.5	34.6
그리스	32.4	40.2	34.0	35.9	36.9	38.2	36.6	37.1	35.7	-
헝가리	42.4	40.7	39.0	38.8	39.1	39.0	39.0	38.8	38.5	37.7
아이슬란드	32.1	33.3	33.2	36.7	39.5	39.4	37.7	38.5	39.8	41.9
아일랜드	32.8	32.9	32.2	31.7	31.9	32.2	30.0	28.7	29.7	30.2
이탈리아	41.2	42.7	44.2	42.5	43.3	43.2	43.0	42.5	43.1	42.2
일본	26.7	26.5	26.8	26.3	25.8	26.5	26.8	25.8	25.3	15.8
한국	19.4	20.0	21.0	21.1	21.5	23.6	24.1	24.4	25.3	24.6
룩셈부르크	42.3	42.6	41.7	40.3	40.7	40.6	40.8	41.3	41.3	40.6
멕시코	16.7	16.7	17.5	16.6	17.3	18.5	18.8	18.1	19.0	18.5
네덜란드	41.9	41.6	41.9	40.0	41.4	41.2	39.8	39.2	38.8	39.3
뉴질랜드	36.9	35.0	35.3	33.7	33.7	33.9	33.3	35.0	34.9	35.4
노르웨이	41.1	41.1	41.8	42.7	43.0	43.2	43.4	43.8	43.4	44.9
폴란드	37.0	36.8	36.0	35.3	33.0	32.5	34.4	34.7	34.2	-
포르투갈	33.6	34.4	34.7	34.9	36.0	36.4	35.7	36.5	37.1	-
슬로바키아	-	-	-	38.3	35.9	34.3	32.9	33.0	31.1	30.8
스페인	31.8	31.5	32.5	32.9	33.9	34.8	34.4	34.8	34.9	35.1
스웨덴	48.5	50.4	51.7	52.1	52.4	53.9	51.8	50.1	50.6	50.7
스위스	27.8	28.3	27.9	28.9	29.1	30.5	30.1	30.1	29.5	29.4
터키	22.6	25.4	27.9	28.4	31.3	32.3	35.1	31.1	32.8	31.1
영국	35.1	34.7	35.3	36.5	36.8	37.5	37.2	35.6	35.6	36.1
미국	27.9	28.3	28.7	29.3	29.4	29.9	28.8	26.3	25.6	25.4
OECD TOTAL ¹⁾	35.7	36.2	36.3	36.4	36.8	37.1	36.7	36.4	36.3	-
OECD AMERICA ¹⁾	26.7	27.0	27.6	27.5	27.7	28.0	27.5	26.1	26.1	25.6
OECD PACIFIC ²⁾	28.2	28.0	28.3	28.0	28.2	29.0	28.7	29.1	29.3	-
OECD EUROPE ³⁾	38.3	39.0	38.9	39.1	39.5	39.7	39.3	39.0	38.9	-
EUROPEAN UNION (15) ⁴⁾	40.1	41.1	40.9	40.9	41.5	41.7	41.0	40.6	40.5	-
EUROPEAN UNION (19) ⁵⁾	39.9	40.6	40.3	40.1	40.4	40.4	39.9	39.6	39.4	-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 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세제개편안 배경과 국세행정의 합리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6 세제개편안’은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의 선진화, 조세형평 제고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핵심 분야로 정했다.

참여정부는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 이번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의무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은 눈여겨볼 만하다. 뉴질랜드 등에서 적용하는 사업용 계좌제도의 도입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지속적인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조세의식 제고, 둘째 선진화된 세제 시스템, 셋째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의 정착, 넷째 효과적

이고 과학적인 제도적 장치의 도입 등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자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등으로 세부담은 5800억원 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으로 6700억원의 세부담이 감소돼 전체적으로는 900억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율 1.08명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출산율 제고가 가장 큰 정책목표이며 이는 어느 정부라 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49% 정도이다. 미국 68%, 영국 80%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70~80% 수준인 점에 비추면 우리는 너무 낮다. 결국 그만큼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들이 많은, 즉 소득공제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는 연례 행사처럼 소득공제액을

인상 또는 신설했기 때문이다. 1996년에 도입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도 이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추가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 대다수 소수 가구나 독신자들의 반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고소득자들의 탈세규모를 보면 신고대상 소득 가운데 60%를 누락시키고 나머지 40%만 신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제 국세청이 효율적인 세무행정에 나서야 한다. 효율적인 조세부과는 ‘거위의 털을 뽑으면서 거위가 소리를 내지 않게 하는 기술’에 비유된다. 그만큼 조세부과가 정교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빗댄 말이다.

국세청의 세무행정은 합리적이고 활동적이면서 신속하고 정중하며 사려있게 집행돼야 한다. 즉, 무소불위의 행동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히 입각해야 한다. 과학화, 투명화, 합리화한 국세행정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울신문 9월 13일자 '기고')

세계개혁 균형성 높여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세계개편안을 내놓았다. 올해 세계개편은 경제성장 지원과 세계 경쟁력 제고에 기본 방향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 관세율 인하와 함께 극빈층의 차상위 계층을 지원할 근로장려세제 도입, 출산 장려를 유인하기 위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를 도입한 점이다.

이 밖에도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고소득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용 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불성실·부당 세금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40%로 높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세계개편안은 의욕적이고 포괄적인 데다 적자재정 여건을 풀어내려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2006년 세계개편 효과는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경제적 파장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매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세계개편안이 중장기 세계개혁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개편안 시계(視界)를 넓혀야 한다. 예컨대 올해 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28개를 연장한 것은 세계개혁의 후퇴다. 중장기적인 세계

개혁 방향성에 맞게 세계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계층간 소득세 과세기준과 법인세율 조정도 깊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치권 역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중장기 세계개혁 차원에서 올해 세계개편안을 심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다.

둘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세에 균형성을 높여야 한다. 납세자인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기본적인 요소는 조세 균형성에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균형성, 소득계층간 균형성 그리고 납세자 가구간 균형성을 세계 개편시 심각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

아직도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취약한 현실에서 인플레이션과 소득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자 조세부담 과중으로 조세 저항이 높아지는 반면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유인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를 신설하는 접근은 납세자 가구간 조세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출산 문제는 자녀 수가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출산기반을 넓히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세제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소해 가는 데 있어서 다면적인 평가와 분석 위에서 구축될 때 사회적 통합과 함께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소득계층간 조세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간 과세소득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 세계개편안에 극빈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으로써 앞으로 저소득층 과세소득 기준점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시대에 경제흐름을 흡수할 수 있는 세계 틀을 보강해야 한다.

인적·물적 교류와 더불어 금융거래를 비롯한 서비스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글로벌 기초의 세계운영 폭이 넓어져야 한다.

예컨대 국제간 기업 또는 금융 합병, 제휴, 인수 그리고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개발과 거래에 따른 조세흐름을 빠짐없이 커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세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론스타 문제 등에서 추적할 수 있듯이 앞으로 조세기반은 국제적인 자본이동과 금융거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넓힐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세제를 조세의 근간이 되는 나무에 비유한다면, 2006년 세계개편은 나무의 잔가지를 다듬고 정비하는 데 많은 내용을 할애했으나 중장기 조세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선진화를 위해서 중장기 세계개혁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

2006년 세계개편안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에 걸쳐 정치적인 과정이 수반될 것이다. 올해는 이들 정치적 과정이 정치적 이해득

실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경기회복과 납세자 조세균형을 한 단계 높이는 진정한 세계개혁의 장이 되어주길 바란다.

김준영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매일경제 9월 7일자 '테마진단')

정비 시급한 비과세 · 감면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40여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감면제도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세목별로 조세감면의 종류가 많고 그 결과 조세제도가 복잡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세제(稅制)를 '누더기 세제'로 부를 정도라고까지 혹평하기도 한다.

조세감면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로는 성장산업의 육성, 설비투자의 확충, 중소기업의 육성, 산업구조 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들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세액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준비금제나 특별감가상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현재 비과세 · 감면제도는 약 226개에 이르며 2005년 기준으로 그 규모는 약 19조 9,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조세감면의 종류가 많고 그 규모가 방대하다.

이처럼 다양하고 숫자도 많은 조세감면은 애초 정부 정책목표가 추구해온 경

제적 효율성 제고, 사회적 형평 달성, 민간의 자율성 확충이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세입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조세의 중립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룬 세계개편에서 대대적인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해집단이 조세감면을 기득권화 혹은 항구화함에 따라 감면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그 증가속도 역시 전체 세수증가를 앞지름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비과세 · 감면제도는 세법 지식이 부족하고 장부 기장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세(避稅)나 탈세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조세감면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매년 늘어만 가는 각 부처의 조세감면 신설 건의와 의원입법안 때문에 이 같은 통제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각 부처는 기존 감면제도의 목적달성 여부, 실효성 등에 대한 분석 · 평가 없이 정책사업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추가감면을 산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한 해 동안 각 부처가 건의한 감면 건수만도 85개에 이르고 있다.

의원입법의 경우도 기본원칙이나 방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목적으

로 무분별하게 제출된 감면제도 신설 또는 확대 법안이 많아 합리적 감면제도 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법안은 96개에 달하며 이들 법안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법 등을 통한 조세감면의 총량적 관리 강화 장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감면 규모의 대폭적 축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세율인하 등에 사용하게 되면 '넓은 세율 낮은 세율'이란 조세제도 선진화는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일몰(日沒)이 도래하는 55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뿐만 아니라 226개 비과세 감면제도 전체에 대한 중장기적 정비계획과 과감한 추진계획이 요망된다.

구체적 정비방안으로는 일몰이 없는 122개의 감면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몰을 신설하고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하여 비과세 감면의 총량적 관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 ·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타당성이 낮아진 제도나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감면율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책으로는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를 내실화하는 방안과 함께 조세감면 통제구도에서 벗어나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다양한 제어제도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제의 선진화는 이해집단으로부터 초연하게 여하히 정치적 동기를 배제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는 경각심이 입법부나 행정 당국자에게 공히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李萬雨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 8월 23일자 '다산칼럼'〉

저출산의 근본 해법은 경제살리기다

기혼가정의 출산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데, 둘째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 첫째 아이는 2000년 29만 9,617명에서 2005년 22만 4,863명으로 7만 4,754명이 줄었으나 둘째는 26만 9,022명에서 16만 7,867명으로 무려 10만 1,155명이나 감소했다. 결혼 후 아이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얘기가. 아이를 낳는 시기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결혼 후 2년 내에 아이를 낳는 비율이 2000년 77.5%에서 2005년엔 71.4%로 푹 떨어졌다. 결혼해도 아이를 가급적 늦게 낳고, 그 후엔 아이를 더 갖지 않는 현상이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

다. 문제는 저출산의 원인이 경기상황의 악화와 교육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과 출산율은 뚜렷한 반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부진하고 일자리가 줄면 아이 낳기를 기피한다는 상식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거꾸로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가. 일본에서 올해 상반기 중 신생아 수가 6년 만에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경기회복과 함께 결혼과 출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육아 지원대책도 필요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 아닌가.

〈중앙일보 9월 4일자 '사설'〉

지방세법개정안엔 '지방'이 없다

지금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다.

현재 논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上限)을 인하고, 부동산거래세의 감면비율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주거안정은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보유세의 강화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거래세의 인하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자들도 부동산보유세를 늘리고 부동산거래세를 줄이자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주택거래에 있어 법인과의 거래시 4%의 현행 세율을 2%로 인하하고, 개인간의 거래세율도 현행 2.5%에서 2%로 인하(引下)하게 된다면 연간 약 1조 4000억원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광역자치체의 세수감소는 지자체 서비스의 질적·양적 감소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이상은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거래세의 세수감소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따라서 광역자치체의 세수감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전되어야 한다.

현재 여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表明)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등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국세이긴 하지만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는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분에 대해 보전하고, 그 잉여자금은 주로 재정여건을 반영해 기초지자체에 교부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비단 부동산교부세제도를 수정해 기초지자체의 재산세 감소분 및 광역지자체의 부동산거래세 감소분에 대해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재원의 규모가 부동산관련세 감소분에 미치지 못해 결국 지방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중앙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지방분권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8 대 2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세의 세율 및 세목에 대한 결정권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의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지자체들이 스스로의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세입의 규모가 달라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을 하기 어렵음을 겪게 된다.

따라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이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어느덧 1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긴 하였지만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 강화에 대해서 게을리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여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세위주의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근년에는 약 6 대 4의 국세·지방세 배분체제로 전환되었고, 머지않은 장래에 5 대 5의 배분체계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일본과 같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개혁의 방향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裴仁明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경제 8월 28일자 '시론')

‘세대 간 고통분담’ 서둘러 논의해야

왜곡된 세대 간 분배구조를 서둘러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물론 국가 공동체의 존속마저 위협받는다. 경기가 종합적으로 제기됐다(한국일보 9월 4일자). 4, 5년 내에 성장잠재력을 키우지 못하면 중국의 변방이나 필리핀 같은 빈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이상으로 섬뜩한 얘기다.

중·단기 경기침방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후유증과 기득권 이기주의의 폐해 등 예견되는 미래 재앙을 지금부터 모든 세대가 자기 일처럼 성찰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행 복지나 연금제도가 2030년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지금 20, 30대는 65세 이상 노인층을 부양하느라 등골이 휘고 자신들의 앞날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잘못된 연금설계,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심화, 복지욕구 분출 등이 초래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연금이나 건보료 등 사회보장성 지출과 세금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게 아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강성노조로 인해 젊은 세대는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당하고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령화에 따른 자산(부동산 증권 등)시장 쇼크로 부의 불평등도 감내해야 한다.

문제는 40대 이상 기성세대가 ‘저부담 고혜택’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다가오는 재앙을 ‘남의 불행’으로만 여기는 점이다.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세대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세대간 갈등과 반목이 폭

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어떻게든 갈등을 봉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세대에 만성적 저성장과 빈곤을 선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후손들에게 잿빛 미래를 안겨주는 고통분담 구조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비전 2030' 같은 공허한 청사진만 내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권이 밉다 해도,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세금과 연금, 인구와 노동시장 등의 개혁을 미룰 수 없다. 민간차원에서부터 '세대충돌' 악몽을 막는 고통분담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당부한다.

〈한국일보 9월 5일자 '사설'〉

내년 예산 성장동력 회복에 집중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올해보다 6~7% 늘어난 2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했다. 복지 지출이 61조 원, 국방 지출이 24조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자주 국방의 기틀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전체적인 예산 증가율이나 부문별 예산 증가 방향에서는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연구개발(R&D) 예산증가율이 올해의 14.2%에서 8~9%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성장동력을 견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도 4.6%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리라는 전제 아래 예산안을 짰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내년 경제 상황을 훨씬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기를 주도하는 미국의 내년 경기도 둔화되리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더구나 우리 경제는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에 정부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부추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건설 등 경제사업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치겠지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경기 전망에 선제 대응하는 형태로 사업 부문간 증가율 및 계수 조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은 지금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에 착수하기를 당부한다. 지난해처럼 사학법 처리문제로 예산 심의가 발목잡히는 구태가 되풀이돼선 안된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단순한 시혜가 아닌 '생산적 복지'로 귀결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9월 9일자 '사설'〉

한·미 FTA 3차 협상 이후의 과제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 FTA 3차 협상을 평가하자면 일부 진전된 분야

도 있었지만 양국이 서로의 개방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또 새로운 이슈들이 수면위로 부상(浮上)하는 등 향후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협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0월과 12월로 예정돼 있는 4차, 5차 협상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번 3차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측이 제시했던 상품·섬유 양허안에 대해 대폭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미국은 한국의 개방안에 실망했으며 농업 분야의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한·미 양국 모두 상대방의 취약 분야인 상품·섬유와 농산물 분야의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고 요구한 셈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양국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 점이다. 우리 측은 옥수수, 밀, 사료용 콩 등 국내 민감성이 덜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낼 계획이고, 미국 또한 향후 상품 시장의 개방을 확대한 수정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FTA협상을 보면 이런 식의 양허안 수정은 협상 내내 계속되는 과정이다. 결국 이를 통해 주고받기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또한 이번 3차협상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들이 쏟아져 앞으로 치밀한 논리싸움도 예고하고 있다. 국경간 금융거래의 제한적 허용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하지만 미국의 요구가 이 선에 그칠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은 또 케이블TV,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확대를 요구했고, 법률·회계 서비스에 대한 한국측의 개방계획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이 모두 간단치 않은 것들이다.

그외에도 대기업 규제, 공기업과 국책금융기관 문제 등 미국이 제기한 요구들을 보면 뭐든지 일단 걸고 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반면 개성공단 제품 문제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반덤핑제도 개선도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難題)들이 한둘이 아닌 셈이다.

때문에 향후 비공식 협상, 그리고 4차, 5차 협상이 더욱 중요해진 국면이다. 협상성사를 위해 한·미 양국이 본격적으로 유연성(柔軟性)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도. 여차피 협상의 큰 그림을 가지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따져야 하는 만큼 협상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9월 11일자 '사설')

부동산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8·31부동산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다. 특히 주택 건설업과 부동산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붕괴 직전이라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더욱 크다.

이렇게 보면 정책 효과는 단단히 본

셈이다. 하지만 무차별적 정책으로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곤란하다. 부동산시장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다. 시장을 살리면서 정책의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절실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정책이 발표·변경되면서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8·31대책의 후속인 3·30대책이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고 이에 따라 집값 상승률이 무뎠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의 체계화다. 최근 일부 지역의 실거래가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시장이 잠시 혼란을 겪는 듯 보이지만 이는 거래 침체기 현상이지, 실거래가 공개 탓이 아니다. 앞으로 실거래가 공개 범위를 최대한 늘려 시장을 유리알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시장동향 파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셋째, 주택정책 기초의 전환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자가소유촉진'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 정책은 '주택은 소유가 최선'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선 주택을 '소유'가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끌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대형 등 임대 주택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재원 조달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투자상품의 다양화다. 부동산증권화나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부동산자금을 건전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또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임대주택 사업자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임대주택사업이 건전한 부동산투자의 하나로 자리잡고, 사적 임대주택시장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행정구역 단위별 주택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건교부가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만들어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매분기·매년 단위의 구체적인 주택통계의 작성이 절실하다. 여기에는 인구의 변동·기존 재고·신규 공급·멸실 규모·증가축 현황, 장래 주택수요의 단계별 예측 등을 담도록 한다. 이는 지역내 인·허가 조절, 주거의 양적·질적 관리는 물론,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주택가격 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른 부동산정책을 수립, 대응해야 한다. 지방 시장은 마비 상태다. 일부 지방 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기업도시, 각종 법률에 의한 특구지정 등 여파로 지가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내 수요의 절대적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한 주택수요 억제로 주택 미분양의 속출과 지역경제의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 서울·수도권과 다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부세·개발부담금 강화, 실거래가 공개 등의 정책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듯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추진과 보완이

따라줘야 '집값은 못 잡고 시장만 잡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신문 9월 6일자 '시론')

4대 보험 통합, 정책 목표 분명히 해야

'매출액'을 보면 한국의 4대 사회보험은 거의 재벌급이다. 2005년 건강보험의 총지출액이 20조원을 넘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각각 3조원을 넘어섰다. 약 4조원에 못미치는 국민연금도 공수입조원의 지출을 기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4대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공단 직원도 2만명이 넘는다. 이처럼 수십조원을 관리하는 4대 사회보험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사회보험 행정은 일대 변혁을 겪게 된다. 하지만 왜 이것이 필요한지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령 종업원 한 명을 데리고 일하는 식당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각각의 공단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각각 보험료를 징수한다.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소득은 하나이지만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소득은 제각각이며 그나마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도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4대 보험료의 기준소득을 정하고 한꺼번에 보험료를 징수하면 보험료의 정확성도 높아지고 유사 업무의 중복을 막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측이지만 효율성을 기대하는 이런 논리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한국 사회보험의 가장 큰 취약점은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수백만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기피하는 많은 사람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자영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수백만개에 이르는 소규모 사업장을 사회보험 공단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하여 소득을 파악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지금보다 공단 인력을 2배 이상 늘린다 해도 각 공단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부과징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방대한 개개인의 소득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국세청이 이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보험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리고 하나의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면 다른 사회보험에 거의 자동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험 공단들은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업무는 매우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혹은 병의원에 지급되는 진료비의 효율적 집행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상승 억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산재보험도 부과징수 인력을 산재환자와 병원관리로 전환하면 가입자 서비스와 의료비 누수 억제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역시 수백만에 이르는 미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의 장점을 설득하는 데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즉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은 한국의 사회보험과 관련 공단들이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공단'으로 거듭나는데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은 사회보험 공단의 구조조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목적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중장기적인 사회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공단 '기능의 재조정'에 두어야 한다. 국세청 이관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해야 고용문제로 불안해하는 공단 직원들과 노동조합도 한국 사회보험의 환골탈태라는 역사적 대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겨레 8월 30일자 '객원논설위원칼럼')

'비전 2030' 일회성 보고서 되지 않길

'알맹이 없는 장밋빛 청사진' '세금

폭탄 선언서' '공허한 청사진' '소설 같은 2030' '제금청구서' ...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 장기발전 계획인 '비전 2030'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반응들이다. 1년 넘게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해온 기획예산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쏟아질 비판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빗발치는 여론의 '뭇매'에 난감해하고 있다.

여당의 반발로 발표 시기가 1주일 미뤄지면서 여당 고위 당직자의 '참고용 보고서' 일 뿐이라는 발언 이후 내부적으로는 이미 '참고용'으로 각인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발표 직전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실무자가 평가가 극단적일 경우 이같은 국가장기비전을 세우는 작업

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며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비전 2030' 보고서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미까지 폄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주위의 우려처럼 이 보고서가 일회성 참고용 보고서로 '전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은 여론을 담아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와의 토론회 등 나름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심지어 여당인 열린우리당과도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 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끼리 모여 만든 보고서라는 비난과 함께 수명이 얼마 되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정부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수없이 내용을 첨삭·보

완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 규모와 조달 방안처럼 민감한 대목들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과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처럼 증세 논란에 휩싸일까봐 몸을 사리기보다 증세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뒤바뀔 그런 자신없는 논리가 아니라면 소신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규모가 늘어나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된다. 또 '비전 2030'을 놓고 외부에 소모적으로 비치는 부처간 주도권 다툼은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김균미 (서울신문 경제부 차장)
(서울신문 9월 1일 '오늘의 눈')